연구보고서 98-04, 인쇄부수: 1,000부, 인쇄매수: 215쪽 행정간행물등록번호 A0045-65220-57-9822 ISBN 89-8187-160-4 93330

# 韓國 家庭暴力의 概念定立과 實態에 관한 研究

金勝權曹愛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리말

家族은 사회의 가장 基本的 單位로 개인은 가족 속에서 다른 가족 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다. 가족은 결혼, 혈연 및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구성원간의 이해와 사랑이 충만한 調和와 化合의 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가족원 상호간의 이해부족, 가족스트레스, 고립화된 핵가족의 만연 등은 家族葛藤을 야기하고 가족생활의 부정적인 측면이 표출될 수도 있는 場이다. 이는 家族의 兩面性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현대사회에서부부 및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을 요구하는 핵가족의 이념은 가족스트레스 및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거의 家族主義的 價值觀은 약화되고 家族의 機能과 役割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원간의 葛藤을 惹起하고, 家族扶養機能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원간의 폭력이 발생되기도 하는 등 우리 家族은 總體的인 危機를 맞고 있다.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자녀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또한 방치할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과 「노부모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의 가족이 「暴力의 場」으로 변화하는 느낌마저버릴 수 없다.

따라서 本 研究는 우리 사회에서 家庭暴力의 槪念을 정확히 糾明하고 그 實態를 把握하여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및

폭력을 예방하며, 被害者의 效率的인 保護 및 治療와 加害者의 制裁에 의하여 가정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부디 본 연구가 모든 가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전하게 유지발전하고, 전체 가족원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관련 연구와 행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本 研究는 본 연구원 金勝權 博士의 책임 하에 曺愛姐 責任研究員과함께 이루어졌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화조사 및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회조사팀과 보건복지부, 일선 시·도 및 시·군·구 관계관에게도 감사드린다.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면접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調査員과 조사를 위해 도움을주신 '남성의 전화」의 李玉 所長, '한국이웃사랑회」의 李好均 部長 및 職員, 그리고 여성 및 노인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표한다. 아울러 조속한 자료처리를 하여주신 정보통계실의 李蓮喜 主任研究員, 朴大順 主任研究助員, 그리고 보고서의 원고정리와 편집을성실하게 도와준 孫淑子 研究助員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주신 李必道, 鄭京姫 責任研究員에게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에 收錄된 內容은 硏究者들의 개인적인 意見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8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鄭 敬 培

# 目 次

要	約	
第	1章 序	論
	第1節	研究背景 및 目的29
	第2節	研究內容31
	第3節	研究方法 및 資料處理 34
	第4節	實態調査 應答者의 特性 37
	第5節	研究의 制限點 및 統計表 判讀時 留意事項40
第	2章 家	庭暴力의 理論的 背景 42
	第1節	精神病理學的 理論 42
	第2節	社會心理學的 理論 44
	第3節	社會文化的 理論 56
	第4節	女權論的 理論
	第5節	家庭暴力關聯 諸 理論의 示唆點63
第	3章 韓	國에서의 家庭暴力 關聯 先行硏究 68
第	4章 韓	國 家庭暴力의 概念定立 76
	第1節	家庭暴力의 定義77
	第2節	家庭暴力의 法的 概念 79
	第3節	家庭暴力 關聯 實態調査 및 被害者調査에 基礎한
		家庭暴力의 概念 82
	第4節	韓國 家庭暴力의 概念定立이 そ는 示唆點 103

第 5章 韓國 家庭暴力의 實態 10	)5
第 1 節 全般的 家庭暴力實態	)5
第 2 節 夫婦虐待 및 暴力	Э7
第 3 節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 12	29
第 4 節 兒童虐待 및 暴力	34
第 5 節 老人虐待 및 暴力	
第6節 韓國 家庭暴力實態의 示唆點	58
第6章 家庭暴力 關聯 法・制度의 認知 및 態度	50
第1節 家庭暴力 關聯 法·制度의 認知 ························16	50
第 2 節 家庭暴力 申告에 대한 態度16	53
第3節 家庭暴力 關聯 法·制度의 認知 및 態度의 示唆點 17	71
第 7章 家庭暴力 豫防 및 治療方案	73
第 1 節 家庭暴力의 豫防對策	73
第2節 家庭暴力 被害者 保護 및 加害者 對處方案 17	76
第3節 家庭暴力 關聯 法・行政節次에 대한 擔當者 教育 17	79
第 8 章 結論	31
參考文獻18	34
附錄	93
1. 家庭暴力實態調査票	95
2. 家庭暴力被害者調査票	98
3. 家庭暴力의 類型21	13

# 表目次

〈表 1- 1〉	家庭暴力實態調査의 應答者 特性 37
〈表 1- 2〉	家庭暴力被害者調查의 成人應答者 特性 39
〈表 1- 3〉	家庭暴力被害者調查의 兒童應答者 特性 39
〈表 3- 1〉	우리 나라 家庭暴力 關聯 主要 先行研究70
〈表 3- 2〉	主要 先行研究의 夫婦暴力發生率 74
〈表 4- 1〉	應答者 特性別 特定行爲에 대한 家庭暴力 認定比率(1) … 86
〈表 4- 2〉	應答者 特性別 特定行爲에 대한 家庭暴力 認定比率(2) … 87
〈表 4- 3〉	家庭暴力被害者의「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89
〈表 4- 4〉	家庭暴力被害者의「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91
〈表 4- 5〉	家庭暴力被害者의 身體的「兒童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93
〈表 4- 6〉	家庭暴力被害者의 情緒的「兒童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95
〈表 4- 7〉	子女에 대한 特徵的 行爲의 家庭暴力 認定比率 96
〈表 4- 8〉	家庭暴力被害者의 放任에 의한「兒童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97
〈表 4- 9〉	家庭暴力被害者의 性的 兒童虐待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99
〈表 4-10〉	老人 및 子女에 대한 特徴的 行爲의 家庭暴力 認定比率 … 101
〈表 4-11〉	家庭暴力被害者調査에 基礎한「老人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表 5- 1〉	本 調査結果에 의한 韓國의 家庭暴力發生率 107
〈表 5- 2〉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特性: 年齡, 教育水準 109
〈表 5- 3〉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教育水準110
〈表 5- 4〉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分布 111
〈表 5- 5〉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113
〈表 5- 6〉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理由 114
〈表 5- 7〉	男便에 의해 虐待받는 婦人의 對應方法 115
〈表 5-8〉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當時 婦人이
	참는 理由116
〈表 5- 9〉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當時 避하는 場所 … 116
〈表 5-10〉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身體的 症狀 117
〈表 5-11〉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精神的 症狀 118
〈表 5-12〉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特性: 年齡, 教育水準
〈表 5-13〉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教育水準
〈表 5-14〉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分布 122
〈表 5-15〉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123
〈表 5-16〉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의 理由 125
〈表 5-17〉	婦人에 의해 虐待받는 男便의 對應方法 126
〈表 5-18〉	婦人에 의해 虐待받는 男便이 참는 理由126
〈表 5-19〉	婦人에 의해 虐待받는 男便이 暴力當時 避하는 場所 "127
〈表 5-20〉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의 身體的 症狀 128
〈表 5-21〉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의 精神的 症狀 129

〈表 5-22〉	其他 家族員間의 暴力類型 分布
〈表 5-23〉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131
〈表 5-24〉	其他 家族員間의 暴力理由
〈表 5-25〉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에 의한 身體的 症狀 … 133
〈表 5-26〉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에 의한 精神的 症狀… 134
〈表 5-27〉	兒童虐待의 加害者別 分布
〈表 5-28〉	「兒童虐待 및 暴力」加害者의 特性
〈表 5-29〉	被害兒童의「身體的 虐待 및 暴力」經驗率 139
〈表 5-30〉	被害兒童의「情緒的 虐待 및 暴力」經驗率 141
〈表 5-31〉	調査對象 兒童의「放任에 의한 虐待 및 暴力」經驗率 … 142
〈表 5-32〉	調査對象 兒童의「性的 虐待 및 暴力」經驗率 143
〈表 5-33〉	「兒童 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別 暴力類型 分布 144
〈表 5-34〉	「兒童 虐待 및 暴力」의 理由
〈表 5-35〉	「兒童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表 5-36〉	「兒童虐待 및 暴力」發生時 被害兒童의 對應方法 149
〈表 5-37〉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 發生時 참는 理由 149
〈表 5-38〉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 發生時 피하는 곳 150
〈表 5-39〉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 發生時 申告經驗率 150
〈表 5-40〉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으로 인한 身體的 症狀 151
〈表 5-41〉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으로 인한 精神的 症狀 152
〈表 5-42〉	「兒童虐待 및 暴力」發生時 醫療處置 經驗率 153
〈表 5-43〉	兒童虐待 加害者의 性別 家庭暴力 目擊 및 經驗與否 … 154
〈表 5-44〉	老人虐待 類型別 經驗率
〈表 6- 1〉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의
	認知率161

〈表 6- 2〉	家庭暴力 被害者의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施行 認知率
〈表 6- 3〉	家庭暴力被害 對象者別「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施行 認知經路 163
〈表 6- 4〉	本人家庭의 暴力發生時 申告與否 165
〈表 6- 5〉	家庭暴力 關聯法의 認知與否別 本人家庭 暴力의
	申告與否166
〈表 6- 6〉	本人家庭의 暴力을 申告하지 않겠다는 理由 167
〈表 6- 7〉	이웃家庭의 暴力發生時 申告與否168
〈表 6- 8〉	家庭暴力 關聯法의 認知與否別 이웃家庭 暴力의
	申告與否169
〈表 6- 9〉	이웃 家庭의 暴力을 申告하지 않겠다는 理由 170

# 要約

## 1. 研究目的 및 方法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가정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며, 폭력의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임.
  - 가정폭력의 개념이 연구자에 주관적 의도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대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어 가정폭력 관련 학문적 및 정책적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의 법률 및 국민정서에 적절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음.
  - 가정폭력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간의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하여 기타 가족원간, 아동에 대한, 그리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등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 대 및 폭력유형을 포함하였음.
- 이를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국규모의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전화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조사팀에 의해이루어졌음. 조사는 1998. 5. 1~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전국의남녀 1,000명에 대하여 조사 완료되었음.
  - 「가정폭력피해자조사」는 지난 1년동안의 가정폭력피해자를 대

상으로 이루어졌음. 본 조사는 연구진과 연구진에 의해 훈련받은 전문조사원에 의하여 「직접면접조사」로 실시되었음. 조사기간은 1998. 11. 10~12. 5일 기간이었으며, 성인남성 31명, 성인여성 158명, 아동 70명, 그리고 노인 67명 등 전체 326명에 대하여 조사 완료되었음.

#### 2. 主要 研究結果

#### 가. 韓國 家庭暴力의 槪念定立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족원 및 폭력개념 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동 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가족구성원에는 현재 및 과거의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까지 포함하고 있음.
  - 동 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개념을 인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시한 폭력유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학대 및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음.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와 같이 광의 학대 및 폭력개념을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99.6%), '몽둥이·칼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99.4%), 그리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94.1%) 등은 거의 모두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77.9%)와 '욕설·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80.8%)은 다소 낮은 가정폭력인정률을 보였음.
-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으로 제시된 특징적 유형을 살펴보면, '부부공동재산을 허락없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남성 96.4%, 여성 90.0%), '자녀 앞에서 부인을 무식하다고 폭언하는 행위'(남성 93.1%, 여성 98.1%)는 남녀 모두 높은 폭력행위인정률을 보였으나, '부인의 친정 및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행위'(남성 86.7%, 여성 95.6%)는 남녀간 견해차이가 다소 있었음. 그러나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의 행위'는 남성 37.9%, 여성 90.0%가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매우 큰 의견차이를 보였음.
-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으로 제시된 특징적 유형은 여섯 가지였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집식구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하는 행위'(남성 96.6%, 여성 85.0%),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남성 96.6%, 여성 93.8%), '남편수입이 자기수입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남성 96.6%, 여성 86.3%),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하는 행위'(남성 93.1%, 여성 93.8%), '실직남편에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행위'(남성 96.6%, 여성 89.4%), 그리고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행위'(남성 96.6%, 여성 75.6%) 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남성은 폭력행위로서 인정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인정하는 경향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폭력인정률을 보였음.

- 「아동학대 및 폭력」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신체적 폭력 12개 유형, 정서적 학대 9개 유형, 방임 10개 유형, 성적 학대 7개 유형 등 전 체 38가지의 폭력유형을 제시하였음.
  - 신체적 폭력 중 11개 유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인이 가정폭력으로 인정하였으며, 아동은 성인보다 낮은 폭력인정률을 나타내었음. '손 또는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만은 성인의 59.0%, 아동은 47.1%만이 폭력으로 보고인정하였음. 또한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에 대해 아동은 단지42.9%만이 폭력으로 보았음.
  -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폭력보다 다소 낮은 폭력인정률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대체로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성인의 입장에서는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에 대해 77.5%만이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음.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부모가 아동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반복적인지 아니면 아동이 말썽을 피워 훈육차원의 벌을 가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녀에 대한 방임을 학대 및 폭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인정률을 보였음. 「가정폭력실태조사」에 기초한 분석에 의하면, '자녀의 상습적인 나쁜 행위 방관'과 '자녀의 상습적인 학교결석 방관'에 대해서는 각각 48.7%와 47.2%의 낮은 폭력인정률을 나타내었음. 「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서 활용한 10가지 폭력유형에 대해서도 성인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폭력인정률을 보 였음.

-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추행을 의미하는 성적 학대에 대한 폭력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7개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성인(약 93~96%)은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아동은 성인보다는 낮은 수준(약 63~77%)에서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음.
- 따라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 및 유기 등에 관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및 폭력의 유형에 대한 홍보·계몽의 필요성을 보여줌.
- 노인에 대한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 제시된 유형은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1가지 유형,「가정 폭력피해자조사」에서는 21가지 유형임.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된 '노부모· 자녀 등 의존적 가족원에 대한 적절한 식사 및 의복 등을 제공 하지 않는 행위'는 64.2%가 폭력행위로 인정되었음.
  - 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서 사용된 21개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행위를 폭력으로 인정하였음. 단,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79.3%)와 '노인에게서 빌린 노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83.4%)는 다소 낮은 폭력인정 수준을 보였음.

#### 나. 家庭暴力의 實態

- 조사대상가정의 8.7%가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113만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수준임. 또한 약 20만 9천 가구에서는 부인, 남편, 자녀, 기타 가족원 등에 대한 폭력이 중복발생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노인에 대한 가정폭력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은 엄청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 가구 중에서 부부폭력발생률은 6.2%였음. 따라서 우리 나라 가구 중 약 80만 6천 가구에서 폭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5.6%로 72만 8천 가구에서 부인학대 및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1.1%로 14만 3천 가구에서 이러한 폭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약 절반 수준인 0.5%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부인의 맞대응에 의한 것임. 따라서 순수한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발생은 약 7만 8천 가구인 것으로 추정됨.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의 발생률은 1.0%로 나타났는 데, 이는 우리 나라의 약 13만 가구에서 이러한 폭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약 2만 6천 가구는 다른 폭력과 중복하여 발생되는 것임.
- 「아동학대 및 폭력」 발생률은 2.6%였으며, 이 중에서 0.9%는 다른 가족원에 대한 폭력과 중복하여 발생되고 있었음. 따라서 33만 8천 가구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이 자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다른 폭력과 중복하여 발생되는 경우는 11만 7천 가구인 것으로 추정됨.

#### 다. 家庭暴力의 類型

- 가정폭력은 여러 종류의 학대 및 폭력이 복합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며, 신체적 폭력이 정신적 학대보다 많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때 욕설 및 모욕적인 말 등 정서적 학대도 동시에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에서 피해부인은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폭력유형을 평균 3.7종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신체적 폭력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는 35.3%, 재산과 관련된 폭력 등 기타 폭력은 2.6%였음. 특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이 가장 많았으며, '친정이나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행위'(5.0%),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3.9%), 그리고 '자녀 앞에서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2.4%) 등의 정서적 학대도 빈번히 발생되는 폭력유형이었음.
  -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에서 피해남편은 부인으로 부터 평균 3.3종류의 폭력을 당하고 있었음. 이 중 신체적 폭력은 52.8%, 정서적 학대는 47.3%로 나타나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경우보다 정서 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인이 남편에게 「물리적 폭력」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남편은 부인에 의해 정서적 학대 및 폭력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23.6%)을 가장 빈번히 당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18.9%),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18.9%), 그리고 '부인의 무관심으로 남편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는 행위'(12.6%)도 상당하였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남편도 10.3%였음. 이 외에도 '시집식구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 주하는 행위',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 및 자녀에게 정신 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남편수입이 자기수입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그리고 '실직남편에 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행위' 등도 다소 발생하였음.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의 피해자는 평균 11.9종류의 매우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체적 폭력이 69.4%로 매우 높았고, 정신적 폭력은 24.1%였으며, 성적 학대와 재산과 관련된 폭력도 엿볼 수 있었음.
- 「기타 가족원간의 의해 학대 및 폭력」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위'가 24.1%로 가장 많았으며,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위' 등도 비교적 빈번히 나타나는 폭력유형이었음.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는 68.0%였으며, 평균 1.2종류의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었음. 가장 많은 신체적 증상은 '가벼운 상처 및 타박상'(60.9%)이었으며, '두통'(11.8%), '골절상'(11.8%), '실명 등의 중상'(5.9%)도 빈번히 나타났음. 이 외에도 '고막이상 및 치아손상', '심장병', '위장병', 그리고 '머리, 눈, 입 등이 찢어짐'도 있어 심각한 일면을 볼 수 있음.
-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폭력」은 가벼운 구타에서부터 심한 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음. 특히 '손·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92.6%로 가장높았으며, '빗자루나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도 80.0%,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우' 72.5%, '던진 물건으로 맞은 경우' 51.4%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팔·다리가 묶인 경험'(21.4%)과 '다락방이나 장롱 등에 갇히거 나'(24.3%), '칼이나 흉기로 위협 당한 경우'(27.5%) 등의 심한 신체적 폭력도 많이 있어 아동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음.
- 정서적 학대인 '꼴도 보기 싫다, 병신, 이 원수야' 등의 욕설을 들어 본 아동은 72.9%,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는 53.7%, 그리고 '집에서 쫓겨 난 경험'이 있는 경우도 51.4%나되었음. 그 외에도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47.8%), '나가 죽어라 또는 갖다 버리겠다'(44.9%) 등도 빈번히 나타나는 학대 및 폭력유형이었음.
- 「방임」에 속하는 폭력유형으로는 아동이 '숙제를 해 가는지 관심이 없음'(63.2%)이 가장 높았으며,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 경우'(62.3%), 그리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지 않음'(61.8%)도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였음. 이 외에도 '늦은 귀가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 '몸이 아파도 그냥 둠', '더러운 옷을 입거나 추운 방에서 지냄',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음', 그리고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관심 없음'도 비교적 빈번한 발생률을 나타냄.
-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및 폭력보다는 낮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도 엿볼 수 있었음. '어른들이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14.5%였으며, '어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경우'와 '옷을 억지로 벗기고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

는 경우',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경우', 그리고 '아동의 몸을 만지려고 한 경우' 등도 약 14%를 상회하였음. 또한 '어른이 몸을 만져달라고 한 경우'와 '어른이 억지로 아동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 경우'는 각각 9.2%와 6.2%나 되어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가 다양하게 나타났음.

#### 라. 家庭暴力發生의 頻度

- 가정폭력은 월 2~3회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매일 발생하는 경우와 주 2~3회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거의 매달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보임.
  -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월 2~3회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27.9%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 도 24.8%나 되었으며, 주 2~3회 발생도 13.9%였음. 따라서 거 의 매월 남편에 의하여 학대를 받는 부인은 66.6%나 되었으며, 이에 분기 2~3회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11.5%)를 포함할 경우 피해여성의 약 70% 이상이 매월 학대받는 것으로 추정됨.
  - 피해남편의 주장에 의하면, 월 2~3회 학대 및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25.7%나 되었으며, 주 2~3회 발생은 5.7%였음. 따라서 거의 매월 부인에 의하여 학대 및 폭력을 받는 남편은 62.8%나 되었으며, 이에 분기 2~3회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14.3%)를 일부 포함할 경우 피해남편의 약 70%가 매월 부인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발생빈도와 유사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이 연 2~3회 발생하는 경우는 28.6%였으며, 월 2~3회 22.9%,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는 17.1%였음.
- 아동학대 및 폭력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월 2~3회가 29.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거의 매일 24.8%, 연 2~3회 18.6%, 주 2~3회 13.8% 등의 순이었음.

#### 마. 家庭暴力의 發生原因

- 가정폭력에 관련된 많은 이론과 같이 그 발생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났음. 가장 큰 이유는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적 결함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가족관계의 문제, 자원의부족, 사회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발생요인을 나타내었음.
  - 남편에 의해 학대받은 부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술버릇'이 29.0%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문제' (16.5%), '남편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12.0%), 그리고 '부부간 성격차이'(10.8%) 등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 외에도 남편의 오해, 의처증, 사소한 말다툼에 의한 확대, 시댁문제, 남편의 이성문제에 의한 다툼의 확대, 상호이해부족 등도 있었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학대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따라서 정신 병리학적 이론에서 설명되듯이 가해자인 남편의 개인적 이유에 의한 부인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아울러 가해자의 부족한 자원에 의한 폭력도 제법 나타나 자원이론에 근거한 가정폭력발생도 강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97.2%가 다양한 발생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약 1.2종류의 폭력이유가 있었음. 가장 큰 이유는 '부부의 성격차이'(25.6%)였으며, '경제적문제' (20.9%)와 '가해자인 부인의 이성관계'(14.0%)도 큰 이유로 나타났음. 이 외에도 '부인의 남편에 대한 오해', '부인의 술버릇', '부인자신의 잘못',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부인의자격지심 및 열등감' 등도 부인이 남편에게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였음.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이 특별한 이유없이 발생되는 경우는 18.9%였으며, 나머지 81.1%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주요 이유로는 가해자의 '술버릇'이 가장 높은 36.0%였고, '가해자의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도 11.8%로 높게 나타났음. 이 외에도 '경제적 문제', '가해자의 오해', '상호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 '성격차이', '학업성적 저하', '가해자의 이성문제' 등 다양하였음.
-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특별한 이유없이 가하는 경우는 11.4%였으며, 88.6%는 평균 4.0종류의 이유로 발생되었음. 주요 이유로는 가해자의 '술버릇'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문제'는 14.5%, '가해자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11.2%, '가해자의 오해' 6.8% 등이었음. 이 외에도 '사소한 말다툼', '상호 이해부족', '피해아동의 잘못' 등도 폭력이유로 제시되었음.

#### 바. 家庭暴力發生時 被害者의 對應

-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끝까지 참는 피해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성피해자에게서 많이 나타났음. 그 외에도 무조건 자리를 피

하거나 친구 및 친척집에 피신하는 경우도 많았음.

-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에 대해 많은 부인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거나(63.0%) 무조건 비는 경우(0.5%)도 있어 많은 부인이 폭력에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음. 집안 바으로 무조건 피하는 다소 능동적인 경우(22.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6.7%)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은 보이는 피해부인도 제법 있었음. 폭력을 가하는 남편에게 함께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우(7.3%)도 나타났음.
- 많은 부인이 남편의 학대 및 폭력에도 불구하고 참는 이유는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43.3%), '폭력이 무서워서' (19.9%),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9.9%) 등 남편의 폭력에 굴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녀 때문'(12.1%),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해서'(11.3%) 등도 다소 있었음.
- 남편에 의해 학대 및 폭력을 당한 여성이 피하는 경우 '갈곳 없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9.5%, 집안에서 다른 곳으 로 피하는 경우도 14.0%나 되었음. 이웃 및 친구를 만나는 경 우는 25.6%, 친정식구의 집으로 피하는 경우 4.7%, 시집식구의 집으로 피하는 경우 9.3%로 나타났음.
- 「부인에 의한 남편 학대 및 폭력」이 발생할 당시에 많은 남편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40.5%로 가장 높았으며, 무조건 피하는 경우는 25.5%, 부인에게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22.7%였음. 또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6.4%)도 다소 있었으나 무조건 부인에게 비는 경우는 전혀 없었음.
- 피해남편이 부인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해 참는 이유는 '대응하

면 폭력이 심해지므로'(40.0%), '자녀 때문에'(25.0%),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해서'(15.0%), '무서워서'(10.0%), 그리고'그 순간만 피하면 되므로'(10.0%) 등의 순이었음.

- 부인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당한 남편이 피하는 장소는 길거리가 91.7%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집이나 친척집으로 가는경우는 불과 8.3%에 불과하였음.
- 피해아동의 58.7%가 '끝까지 맞으면서 참았다'고 하였으며, '무 조건 피한다'는 경우는 29.7%, 그리고 '무조건 빈다'는 경우도 1.3%로 나타나 피해아동의 89.7%가 가족원의 폭력에 소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었음. 그러나 아동의 8.4%는 주위의 도움을 요 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1.3%로 나타났음.

#### 사. 家庭暴力으로 인한 被害者의 症狀

- 가정폭력피해자는 남녀에 구분없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복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당한 부인의 89.9%가 신체적 증상을 보였으며, 신체적 증상은 평균 1.8종류였음. 가장 큰 신체적 증상은 '가벼운 상처 및 타박상'으로 42.7%였으며, 심각한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는 골절상(17.2%), 고막이상 및 치아손상(7.9%), 실명(6.4%), 실어증(0.7%), 그리고 허리디스크 (0.7%) 등이 있어 가정폭력의 위험을 짐작케 함.
  - 남편에 의해 학대 및 폭력을 당한 부인의 83.3%가 다양한 정신

적 증상이 있었고, 평균 2.8종류의 증상을 보였음. '남편과의 이혼'을 원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은 23.0%나 되었으며, 남편을 죽이고 싶거나(15.1%) 본인이 죽고 싶은 경우(6.8%)도 있어 매우심각한 상태에 있기도 하였음.

- 부인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당한 남편이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80.0%였음. 구체적 증상으로는 가벼운 상처나 타박상을 당한 경우가 71.4%로 가장 많았음. 이 외에도 두통, 골절상, 고막이상 및 치아손상, 실명 등의 중상, 머리, 눈, 입 등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음.
- 부인에게 당한 학대 및 폭력으로 피해남편의 83.3%가 약 1.1종 류의 정신적 증상을 보였음. 이들의 36.4%가 무력감, 자아상실, 의욕상실 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39.4% 나 되었음. 이 외에도 자신이 죽고 싶거나, 부인을 죽이고 싶거나, 불안 및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적으나마 나타났음.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는 68.0%였으며, 평균 7.0종류의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었음. 가장 많은 신체적 증상은 '가벼운 상처 및 타박상'(60.9%)이었으며, '두통'(11.8%), '골절상'(11.8%), '실명 등의 중상'(5.9%)도 빈번히 나타났음. 이 외에도 '고막이상 및 치아손상', '심장병', '위장병', 그리고 '머리, 눈, 입 등이 찢어짐'도 있어 심각한 일면을 볼 수 있음.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으로 피해자의 81.4%가 정신적 증상을 느끼고 있었으며, 정신적 증상을 느낀 피해자는 평균 8.1종류의 증상을 보였음. 주요 증상으로는 '불안 및 우울증'이 40.7%로 가장 많았고, '무력감, 자아상실, 의욕상실'(19.5%), '가

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12.1%), '본인이 죽고 싶은 생각'(10.0%), 그리고 '대인기피증'(7.4%)도 비교적 많이 나타났음. 이 외에도 '놀람 및 수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경우도 있었음.

-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78.1%가 신체적 이상증상을 호소하였음. 주요 증상으로는 가벼운 상처・타박상이 51.5%로 가장 많았고, 두통을 느끼는 경우는 22.5%였으며, 그리고 골절상·고막이상·실명 등의 심한 증상은 16.7%였음.
-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87.0%였음. '불안·우울·신경쇠약 증세'가 24.1%로 가장 높았고, '자아상실·무력감·삶의 의욕상실'은 17.4%,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 13.8%, '자살시도, 죽을 생각'은 12.2%로 비교적 많은 증상이었음. 이 외에도 '말수가 적어지거나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증세',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자주놀라거나 공포심' 등의 증세가 있었음.

#### 아. 家庭暴力 豫防 및 治療方案

- 가정폭력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홍보·계몽의 강화
  -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되는가 하는 가정폭력의 범위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시대와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개념적 정의를 지속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적극 홍보·계몽하며, 그리고 그 위해성을 널리알려야 할 것임.
- 폭력허용적 사회문화규범의 개선을 위하여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적 환경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불식하여야 함.

- 먼저 가부장적 문화의 타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즉 남성우 위의 사고방식, 여성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의식의 미성숙, 여 성을 지배하려는 태도 등을 불식시켜 여성을 인격체로서 그리 고 동반자로서 인식케 하여야 할 것임.
-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폭력이 추방되고,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 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함.
-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일반인에게 보급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임.
  - 가정폭력은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되는 것인 만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과목의 설치를 추진함.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를 상대로 교육하는 사회프로그램이 필요함.
- 친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을 강화하여 가정폭력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 친족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빈약한 사회적 유대망도 가정폭력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 따라서 가족의 친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가족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이웃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반상회'의 활성화, '소지역 단위의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이 강구되어야 함.

-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응급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이용 및 수용시설의 무료이용, 그리고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또한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효율적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함.
- 가정폭력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추진의 효율 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가정폭력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 권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그리고 법집행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이해하도록 함.
  - 가정폭력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야 할 것임. 특히 일선에서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가정폭력 관련 과목을 필수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함.

# 第1章 序論

## 第1節 研究背景 및 目的

그 동안 우리 社會에서는 家庭은 사회의 다른 집단과 달리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해타산이나 경쟁없이 가족원을 수용하므로 暴力이 일어날 수 있는 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부부싸움 혹은 子女養育을 위한 體罰은 가족내부 문제로 간주되고 그 해결은 가족원 당사자의 몫으로 보았다. 따라서 家庭內 暴力이 사회적으로 表出되지 않았으며 문제시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많은 가족학자들은 정서적 안정을 중시여기는 가정에서 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폭력이 다른 곳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정도도 더욱 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변화순 외, 1993; 조병은, 1993). 따라서 최근에 家族學者, 社會學者, 그리고 一般人 모두 빈번하게 발생하는 家庭暴力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機能論的 見地에서는 가족내의 葛藤이나 解體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는 반면에 葛藤論的 立場에서는 그러한 葛藤을 가족역동성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副産物이라고 본다. 즉, 가족을 잠재적이고 실제적 葛藤을 내포하는 體制라고 보고 葛藤은 家族關係에서당연하고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원간에 葛藤이 있을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는가가 문제라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葛藤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기 보다는 家族關係를 강화시킬 수 있고 변화를 유도하여 좀 더 의미있는 관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家族學 硏究에서는 가족을 사랑과 조화의 場으로 보려는 機能論的 家族이데올로기가 팽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實證的硏究에서도 나타나 우리 나라에서 1987년까지는 家庭暴力, 兒童虐待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강한 家族主義(familism)로인하여 家族의 調和나 家族員의 和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正常的인 家族生活의 樣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취급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족이 행복하다는 가정이나 견해는 가족생활의 부정적인 측면을 묵과한 것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核家族의 孤立化, 情緒的인 支持를 강조하는 夫婦關係, 부모·자녀의 친밀감을 요구하는 核家族 理念은 家族이 葛藤을 일으킬 수 있는 場이 될 수 있다(조병은, 1993). 家族葛藤을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葛藤이나 暴力은 있을 수 있는 事件이며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過程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家庭暴力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족사회학자들은 가족생활의 葛藤을 이해하고 家庭暴力의 原因,實態와 나아가 豫防과 治療策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분야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비록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내 폭력이 얼마나 팽배하고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많지 않다.

家庭暴力에 관한 研究를 다루어 온 Straus & Gelles(1986)는 家庭暴力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여온 것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여러 문화에 걸쳐 팽배하다고 하였다. 또한 社會的 暴力이 증가할 경우 家庭暴力도 증가하며, 그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폭력이 늘어날 경우 가족내 폭력이 들어나는 경향이고 가족내 폭력이 증가할

수록 사회적 폭력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家庭暴力間에는 서로 聯關性이 있어 남편과 부인 사이의 폭력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도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최근에 家庭暴力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이 家庭暴力의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숨기기만 하다가 근래에 이를 보고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인지가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대부분 연구자들의 의견은 후자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어서 가해자-피해자간의 가족관계의 특성에 따른 폭력유형별 실태파악과 예방대책 강구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을 막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여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발전되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었다.

# 第2節 研究內容

本 節에서는 연구의 다양한 內容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 1. 家庭暴力實態調查

#### 가. 應答者의 一般特性

-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 응답자의 거주지역 (시 도 및 시 군 구)
- 응답자의 동거가족원수 및 동거가족원과의 관계 등

#### 나. 家庭暴力關聯 制度 및 槪念에 관한 認識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의 인지
- 가정폭력의 개념에 관한 인식 등

#### 다. 家庭暴力發生時의 申告與否

- 응답자 가정의 폭력발생시 신고여부
- 이웃가정의 폭력발생시 신고여부 등

#### 라. 家庭暴力實態에 관한 事項

- 응답자 가정의 가정폭력발생여부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 폭력의 횟수, 폭력의 이유 및 종류
- 폭력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의료적 처치여부
- 가정폭력의 대응여부, 대응종류 및 도움 요청여부

#### 2. 家庭暴力被害者調查

#### 가. 應答者의 一般特性

-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 응답자의 거주지역 (시·도 및 시·군·구)
- 응답자의 동거가족원수 및 동거가족원과의 관계
- 응답자 가정의 유형별 가족형태 등

#### 나. 家庭暴力의 槪念에 관한 認識

- 일반적인 폭력에 관한 인식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신체적 폭력, 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 성인 남성 및 여성의 폭력에 대한 인식 등

#### 다. 家庭暴力實態에 관한 事項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직종
- 폭력의 종류
- 폭력의 횟수, 폭력의 이유
- 폭력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의료적 처치 여부
- 폭력의 대응여부, 대피장소 및 도움요청 여부
- 폭력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
- 가정폭력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등

#### 라. 家庭暴力의 過去經驗에 관한 事項

- 피해자의 성장시 가정폭력 목격경험, 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
- 가해자의 성장시 가정폭력 목격경험, 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

#### 마. 兒童暴力被害者에 관한 事項

• 아동의 일반특성 (성, 연령, 학교 및 학년)

- 부모의 생존여부
- 부모의 일반특성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종교)
- 아동학대실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

#### 바. 老人被害者에 관한 事項

#### 사. 家庭暴力發生의 申告與否

- 응답자 가정의 폭력발생시 신고여부, 신고않는 이유
- 이웃가정의 폭력발생시 신고여부, 신고않는 이유

#### 아. 家庭暴力 被害者保護法에 관한 事項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의 인지 및 인지경로 등

# 第3節 研究方法 및 資料處理

#### 1. 旣存資料에 의한 先行硏究 分析

家庭暴力에 대한 概念的 模型과 특정사회의 暴力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에 의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國外文獻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비록 많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내의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문헌을 검토하였다.

특히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들 이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절히 설명되고 가정폭력의 발생을 예방할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實態調査에 의한 資料蒐集 및 分析

본 연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하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 규모의 『家庭暴力實態調査』이며, 다른 하나는 『家庭暴力被害者調査』이다. 이들 조사의 특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가. 家庭暴力實態調査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는 전국규모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 구성되어 있는 사회조사팀에 의해 전화조사로 이 루어졌다. 표본설계는 전국 전화번호부에 기초한 지역비례 계통추출 법(Systematic Sampling)을 활용하여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 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당 연구원의 사회조사팀에 의하여 1998. 5. 1~3일기간중 전화조사형태로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에 의하여 사전교 육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사요원을 지도·감독하여 조사의 철저를 기하였다.

#### 나. 家庭暴力被害者調查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대상자에 따라 분리되어 실시되었다. 즉, 남편의 폭력에 의한 부인피해자, 부인의 폭력에 의한 남편 피해자, 가족원의 폭력에 의한 아동피해자, 그리고 성인자녀의 폭력에 의한 노인피해자 등으로 분리되어 추진되었다.

두 번째 조사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연구진이 설계 한 조사표를 기초로 피해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실시되었다. 먼저 부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실태조사는 연구진에 의하여 철저히 훈련된 조사원이 피해자 보호시설 및 노인시설을 직접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直接面接調査」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1998. 11. 10~12. 5일 기간이었다. 특히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해당 시·도 및 시·군·구, 그리고 피해자보호기관 및 노인시설 관계자의협조가 있었다.

이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는 사단법인 「한국이웃사랑회」의 협조에 의하여, 본부 및 15개 지부에 의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동 기관의 상담원이 연구진의 사전교육에 의해 훈련을 받고 해당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가정폭력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진에 의하여 작성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直接面接調査」형태로 추진되었다.

남성피해자에 대한 실태는 서울 목동에 소재하는 「남성의 전화」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 남성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동 기관의 상담자료를 기초로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여 남성의 전화 관계자와 본 연구자에 의하여「直接面接調査」로 실시되었다.

#### 3. 資料處理

본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되어 당 연구원의 전산실에서 입력되었다. 이어서 연구진은 SAS 패케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이들 자료를 분석하였다.

## 第 4 節 實態調査 應答者의 特性

#### 1. 家庭暴力實態調査의 應答者 特性

전국을 단위로 한 표본조사인「家庭暴力實態調査」를 실시한 결과 남성 494명, 여성 506명이 조사완료되었으며, 그 특성은 <表 1-1>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응답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30대가 약 56.1%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40.9%,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33.2%로 나 타났다.

20~30대 연령층은 남성이 57.7%, 여성은 54.6%였으며, 대학 이상 학력자는 남성 39.6%, 여성 26.9%였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경 우는 남성 42.3%, 여성 39.6%로 나타나 여성보다는 남성의 학력수준 이 높았다.

〈表 1-1〉「家庭暴力實態調査」의 應答者 特性

(단위: %)

39.6	26.9	33.2
42.3	39.6	40.9
18.1	33.5	25.9
12.6	14.2	13.4
12.2	13.4	12.8
17.6	17.8	17.7
28.3	28.1	28.2
29.4	26.5	27.9
남성	여성	전체
	29.4 28.3 17.6 12.2 12.6	29.4 26.5 28.3 28.1 17.6 17.8 12.2 13.4 12.6 14.2 18.1 33.5 42.3 39.6

#### 2. 家庭暴力被害者調査의 應答者 特性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자에 따라 분리되어 실시되었다. 연구진은 보다 폭넓은 피해자 자료를 얻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가정 폭력에 대한 閉鎖的 國民情緒로 인하여 흡족한 조사완료수를 확보한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분석가능한 數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피해자의 특성은 다음 <表 1-2>와 같다. 우선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 대상의 43.7%가 30代이었으며, 40代는 25.3%로 69.0%가 30~40 代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40대가, 여성은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70.7%가 고등학교 이상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83.3%, 여성은 68.8%이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학력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84.7%가 유배우 상태에 있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유배우율이 높았고, 반대로 여성은 남성보다 사별·이혼·별거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및 폭력」의 피해자는 18세 이하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으로써 한국이웃사랑회의 아동학대상담센타를 통해 선정된 초등학교 학생 60명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피해자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10명으로 전체 70명이 조사완료되었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表 1-3>과 같다.

「아동학대 및 폭력」의 피해자조사를 위한 접근방식의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이었다. 이들 아동의 학년분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가 41.4%, 4~6학년이 51.4%로 전체의 92.9%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었으며, 중학생은 7.1%에 불과하였다.

〈表 1-2〉 家庭暴力被害者調査의 成人應答者 特性

(단위: %)

ㅌ 시	피해대상자		اند اح	
특성	남성	여성	전체	
연령				
29세 이하	3.2	18.4	15.8	
30~39세	29.0	46.8	43.7	
40~49세	45.2	21.5	25.3	
50~59세	19.4	4.4	6.8	
60세 이상	3.2	8.9	8.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7	31.2	29.3	
고등학교	43.3	48.4	47.3	
대학 이상	40.0	20.4	23.4	
결혼상태				
유배우	96.7	82.9	84.7	
사별·이혼·별거	3.3	13.9	12.7	
미혼	-	3.2	2.6	
계(수)	100.0(31)	100.0(158)	100.0(189)	

註: 1)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피해자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어서 본 조사에서는 먼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고 피해경험여부를 판정하는 질문에 의하여 피해자를 찾았음. 그 결과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는 단 1명밖에 파악되지 않아 본 자료에서 는 제시하지 않았음.

〈表 1-3〉 家庭暴力被害者調査의 兒童應答者 特性

(단위: %)

					\ - · · /
٨٦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刊(人)
	성	3학년 이하 <sup>1)</sup>	4~6학년	오히파	계(수)
	남아	45.5	48.5	6.0	100.0(33)
	여아	37.8	54.0	8.1	100.0(37)
-	전체	41.4	51.4	7.1	100.0(70)

註: 1) 미취학 아동 4명이 포함됨.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남아의 비율이 여아의 비율보다 높았고(남아 45.5%, 여아 37.8%),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의 고학년과 중학생은 여아의 비율이 남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아 54.5%, 여아 62.1%). 따라서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 취학전 및 저학년층의 남아와 고학년의 여아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第5節 研究의 制限點 및 統計表 判讀時 留意事項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많은 制限點이 있었음은 결코 否認할 수 없다. 그리고 報告書를 執筆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중복되는 敷衍說明을 피하고 간략한 統計表 作成을 위하여 생략된 내용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限界點을 설명하고, 보고서 내용에 나타나 있는 많은 統計表에 대한 정확한 理解를돕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할 몇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概念 定立과 實態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전국 단위의 標本抽出과 가구방문에 의한 「직접면접조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예산, 인력 등 많은 제약으로 이러한 과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물론 가정폭력과 관련한 많은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制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概念 定立과 家庭暴力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을 표본으로 한「電話調査」에 의한 實態調査와 아울러 家庭暴力被害者에 대한「直接面接調査」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화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은 직접면접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 하겠다.

둘째, 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 있어서 가정폭력의 특성상 被害者의 接近이 매우 어렵고 본 연구에서 概念化한 가정폭력 유형에 대한 일 반인의 認識이 不足하여 전체 피해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로 판정되었을지라도 본인이 調査를 拒否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시설의 관계자 외에는 접 근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시설관계자에 대한 조사교육을 통하여「피해자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셋째, 본 조사에서 老人虐待 및 暴力은 成人子女의 老父母에 대한 虐待 및 暴力으로 概念化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서 이러한 경우는 다소 있는 듯 하였으나 子息이 法的 處罰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노부모가 결코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否認하여 제 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연구자와 조사원이 조사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이 지켜진다는 점을 최대한 이해시켰으나 이들 노인을 설득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各 統計表에는 응답을 거부한 一般人 및 被害者의 數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통계표를 單純化하기 위한 것으로 각통계표의 應答者 數와 本 章의 第3節에 나타나는 응답자의 특성별 實際 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無應答이거나 해당 문항별 調査對象이 아니기 때문(非該當)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第2章 家庭暴力의 理論的 背景

學者들은 다양한 理論에 의하여 家庭暴力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社會學者, 心理學者, 精神分析學者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家族虐待 의 原因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들 理論은 家族虐待가 매우 複合的이고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暴力에 관한 理論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주로 個人的인 次元인 精神病理學的 見地에서 先天的으로 공격적이거나, 술 또는 마약에 의한 것, 둘째, 社會心理學的인 側面에서 주로 社會學習, 交換, 相互作用 등의 理論, 셋째, 社會文化的 次元으로 社會的 資源, 葛藤體系 또는 文化的 規範 등에 의해 설명된다고 한다 (Gelles and Straus, 1979).

本 研究에서는 家庭暴力에 관련된 諸般 理論 중에서 비교적 많이 논의되고 있는 理論을 소개하여 우리 사회에서 家庭暴力이 發生하는 原因을 다양한 側面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第 1 節 精神病理學的 理論(Psychopathological Theory)

精神病理學的 理論은 家庭暴力의 加害者는 個人的 行爲者로서 어떤 특성(Characteristics)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家庭暴力을 이해하려고 하는 個人內的 理論(Intraindividual Theories)의 한 유형으로 家庭暴力에 대한 접근방법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는 家庭暴力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病理的인 屬性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많은 사람들

- 이 家庭暴力의 加害者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 이 관점에서는 가정폭력이 先天的인 身體的 不具, 精神的 및 性格的 缺陷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後天的인 心身障碍나 事故 등으로 精神的 疾患을 안고 있는 사람이나 알코올 및 痲藥의 中毒 등에 의해 야기되는 加虐的 行爲로 이해된다. 즉, 개인은 그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非正常(abnormality), 內的離脫(internal aberration), 缺陷(defect), 그리고 알코올 및 마약 등에 의하여 暴力的이 된다는 것이다(Gelles and Straus, 1979).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몹시 支配的이고 차가운 어머니 밑에서 자라 난 사람이 성장하여 婦人을 虐待하거나 暴力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어릴 때 依存慾求가 충족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가 성장후 친밀한 관계인 婦人에게서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慾求가 挫折되었을 경우 攻擊的인 行動으로 表出 하게 된다는 것이다(Shultz, 1960).

이 理論은 兒童虐待(child abuse)와 婦人毆打(wife beating)에 대한 초기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概念的 模型이다(Kempe et al., 1962; Snell et al., 1964; Steele and Pollock, 1968; Wasserman, 1967). 그러나 家庭暴力에 대한 독립적 요인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Gelles, 1973; Steinmetz, 1977③; Walker, 1979).

그러나 精神病理學的 理論은 가장 오래된 家庭暴力理論임에도 불구하고 科學的인 證據가 불충분하고 非正常的인 人格的 特性이 폭력과 관련이 있으며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많은 정상적인 남성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며, 모든 加害男性이精神病者가 아니기 때문이다(강은실, 1991; 변화순 외, 1993).

家庭暴力을 이해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心理學的接近이 유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Gelles(1993)는 이 접근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첫째, 家族의 構造的要因 및 社會·文化的인 要因을 看過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가정폭력 관련 전문가들은 個人的인 要因만으로는 家庭暴力에 대한 접근에限界가 있음을 지적한다. Steele(197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순전히 加害者의 性格的 特性이나 精神疾患 때문에 발생하는 家庭暴力은 10%정도가 된다고 한다. 둘째, 단지 個人의 病理的인 性向에 의하여 家庭暴力을 설명하는 것은 家庭暴力에 대한 잘못된 偏見을 助長할 수 있다(이선이, 1995). 즉, 加害者가 情緒的 不安定과 精神疾患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家庭暴力으로 認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Gelles, 1993).

## 第2節 社會心理學的 理論(Social-Psychological Theories)

社會心理學的 理論은 社會環境, 他人, 集團, 그리고 組織과 個人과의 相互作用(Interaction)에 의하여 가정폭력을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즉, 특정개인이 對人關係에서의 挫折이나 學習過程, 다른 사람의 態度, 集團 및 組織에 반영되는 자신의 태도 등에서 家庭暴力의 原因을모색하려는 입장이다(Steinmetz, 1987).

주요 세부이론으로는 挫折-攻擊理論(frustration-aggression theory), 社會學習 및 役割模型理論(social-learning and role-modeling theory), 象徵的 相互作用理論(symbolic interaction theory), 交換 및 資源理論 (exchange and resourse theory), 그리고 葛藤理論(conflict theory) 등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理論의 具體的 說明과 實證的 例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 1. 挫折-攻擊理論(Frustration-Aggression Theory)

Dollard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Miller에 의해 수정된 挫折-攻擊理論 은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 좌절되었거나 방해를 받았을 때 공격적 인 행동인 가정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강은실, 1991).

家庭暴力에 대한 挫折-攻擊理論의 적용은 다음의 두가지 수정된 유형을 포함한다. 첫째, 개인은 어떤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感情에 대한 反應(response to the emotion)으로서 공격심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源泉的인 衝動(innate drive)으로서보다는 學習의 産物(product of learning)로서 좌절에 대한 반응인 공격적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Steinmetz, 1987). 최근 이 이론은 個人的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失職 및 貧困 등 社會經濟的 次元의 機會構造 不平等 및 그 不當性에 대한 集合的 反應까지를 설명에 포함시킴으로써 문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족내에서는 각 구성원에게 挫折을 줄 수 있는 많은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 挫折-攻擊理論은 家庭暴力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가정폭력은 가족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발생가능성이 높으며,1) 또 社會的 및 經濟的 資源이 빈약한 가족일수록 발생가능성이 높다.2) 물론 가정폭력은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지만, 階層別로 동일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所得水準이 낮은 가족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父母의 職業的 地位

<sup>1)</sup> 가정폭력의 발생가능성은 가족이 경험한 스트레스의 數가 많을수록 높아진다고 함. 조사결과, 한 해 동안 가족스트레스를 10가지 경험한 가족은 가족스트레스를 한 가지 경험한 가족과 비교할 때 가정폭력의 발생률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음(Straus et al., 1980).

<sup>2)</sup> 본격적인 家庭暴力研究가 시작되던 초기에 많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과 달리 家庭暴力은 社會經濟的 水準이 낮은 계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家庭暴力이 모든 階層에서 同一한 比率로 발생한다는 것은 아님.

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아버지가 실직자이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경우 兒童 및 婦人虐待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Straus et al., 1980).

빈곤, 저소득, 실직 등은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의 要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適應力을 弱化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왜 家庭暴力의 可能性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이선이, 1995).

- ① 전체가족의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은 다른 스트레스요인 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성원들의 불만과 좌절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 며, 따라서 葛藤發生의 可能性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 ② 개개 가족성원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失職이나 生活苦 등으로 야기된 不滿과 敵愾心이 가족성원에게로 轉移되어 폭력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의 폭력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心理的인 適應方法이 되는 셈이다.

강은실(1991)은 子女養育에 대한 不確實性, 役割分擔과 觀心, 능력보다는 다른 근거에서 온 責任感, 가족내 활동으로 부터의 葛藤 등으로인하여 가족에게 挫折을 주기 때문에 이 이론은 가족상황에 적합하며신뢰할 만하고 타당성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挫折-攻擊理論은 다음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격적이 되게 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어떤 사회에서는 挫折이 受動的이고 撤回的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身體的 暴力과 言語的 虐待 및 暴力을 구분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挫折-攻擊理論은 여성, 자녀, 노인 등과 같은 社會的 및 家族的 脆弱階層이 결코 적지 않은 좌절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攻擊的 行爲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강은실, 1991; 김문조, 1998).

# 2. 社會學習 및 役割模型 理論(Social-Learning and Role-Modeling Theory)

社會學習 및 役割模型理論은 "개인의 학습 바탕은 원래 백지상태"라는 假定에서 출발하며, 폭력행위를 하나의 學習된 現象(learned phenomenon)으로 이해한다. 즉, 개인은 타인의 폭력행위를 觀察·模倣 함으로써 공격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은 부모 또는 특정타인이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그들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暴力의 役割을 模型化한다(Steinmetz, 1987).

어린 시절에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아동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즉, 어렸을 때 暴力的이거나 虐待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成人이 되어 子女와 婦人에 대한 많은 虐待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경우, 暴力이 暴力을 낳고 世代를 넘어서 暴力은 轉移 (cycle of violence)된다고 할 수 있다(Kalmuss, 1984; Walby, 1990).

家庭暴力 加害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加害者들이 非加害者에 비해 어렸을 때 자신이 직접 虐待의 對象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虐待받는 것을 봄으로써 間接經驗하는 등 전반적으로 폭력이 빈번한 家族的 環境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Fagan et al., 1983; Kalmuss, 1984; Straus et al., 1980). 또한 어릴 때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人間關係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寬容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Owens and Straus, 1975). 이는 폭력이 反復 내지 轉移되며, 세대를 넘어서 폭력은 이어진다는 의

미이다.

물론 어릴 때 가족성원으로부터 虐待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모두 家庭暴力의 加害者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릴 때 폭력의 경험이 없다고 후에 加害者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子女虐待 및 婦人虐待의 加害者에 대한 연구의 공통된 결과들은 加害者들이 非加害者에 비해 어렸을 때 자신이 직접 虐待의 대상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虐待받는 것을 봄으로써 간접 경험하였거나, 전반적으로 폭력이 빈번한 家族環境에서 자란 경험들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Fagan et al., 1983; Straus et al., 1980).

社會學習理論의 타당성은 다양한 實驗研究(Bandura, 1973; Bandura et al., 1961; Bandura and Walters, 1963; Singer, 1971), 家族의 相互作用에 관한 調査研究(Owens and Straus, 1975; Patterson et al., 1973; Steinmetz, 1977①, ②), 그리고 臨床研究(Climent and Ervin, 1972; Steele and Pollock, 1968; Wasserman, 1967) 등에서 증명되었다. 이 이론은 다음의 세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은 폭력에의 노출을 통한 學習된 暴力, 인정된 學習規範으로서의 暴力, 그리고 役割模型으로서의 暴力 등이다(Bandura et al., 1961; Owens and Straus, 1975; Singer, 1971).

가정폭력에 이 이론을 적용하면, 가정은 폭력의 訓鍊場으로서 제공되는 것이다. 즉, 가족은 役割模型을 제공하며, 어린시절의 경험은 장래에 적절한 부모 및 부부의 役割開發에 이용된다는 의미이다. Gelles는 虐待家庭과 非虐待家庭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의 부인학대는 성장과정에서 학습된 결과로 보았으며 가정은 폭력에 대한 規範, 價值, 策略, 技術 등을 학습하는 訓鍊場이라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에의하면, 어린시절에 높은 수준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많음이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에서 社會學習 및 役割模型理論이가정폭력을 설명하는데 적합함을 알 수 있다(강은실, 1991).

이와 같이 가족은 力動的인 單位인 관계로 社會學習理論은 가족간 또는 세대간의 가정폭력에는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理論的 限界도 가진다고 한다. 즉, 일반적 가정폭력의 설명에 는 적합하지만 家父長制的 테러리즘 側面에서의 남편에 의한 부인학 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3. 象徵的 相互作用理論(Symbolic Interaction Theory)

가족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兒童虐待(Friedich and Borisking, 1976), 家族의 相互作用(Niemi, 1974), 自殺(Lester, 1968), 그리고 家庭暴力(Steinmetz, 1977①)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다. 象徵的 相互作用理論은 사회생활의 主觀的·象徵的 側面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暴力의 意味, 意味의 形成, 持續方法, 그리고 意味變化의 形態 등의 맥락에서 이들 의미의 중요성이 주된 관심영역이다.

가족과 관련하여서 이 접근은 가정폭력이 가족에서 공유되는 의미를 반영하며, 가족원 개인의 役割期待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강은실, 1991). 이러한 의미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가정폭력에 대한 공식적 이론으로 보다는 폭력의 概念的 模型으로서 이해된다.

#### 4. 交換理論(Exchange Theory)

일반적으로 交換理論은 가족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가족관련 학자들은 이 이론을 가정폭력에 적용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報償의 極大化, 費用의 極小化"에 의해지배된다. 그러므로 비용이 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分配的 公正性(distributive justice)을 되찾기 위해 폭력이 사용된다는 것이다(Steinmetz, 1987).

폭력은 金錢, 地位, 個人의 屬性과 유사한 방식에서 개인의 욕구를 얻기 위한 資源으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交換理論은 資源理論 (resource theory)과 유사하다. 강은실(1991)은 交換理論을 대인간 폭력을 조사하기 위한 分析的 道具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概念的 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부부의 일방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상을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 관계는 상호작용한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보상을 얻을 다른代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Homans의 "分配的 公正性" 概念에 의하면 夫婦 및 父母-子息關係에서 개인은 반드시 보상을 極大化하고 費用을 줄여 最小化시키는 것은 아니며 結果에 있어 分配가 公正하면된다. 즉, 자신이 投資한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자각할 때 공정성이 있다고 본다. 努力이나 技術, 地位 등을 많이 投資한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고, 적게 投資한 사람은 보상을 적게 받는다면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公平의 原則이 깨어졌을때, 즉 개인의 활동이 그가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와는 달리 벌을 받을 때 화가 나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補償의 한 형태이며, 결과적으로 公平하게 된다(Homans, 1961).

호혜성, 대안, 분배 등에 있어서 公平性의 概念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및 기대와 자녀의 정신적 및 물질적 보상 등의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兒童虐待가 적절히 보여준다. 또한 交換理論에서 볼 수 있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은 부부관계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費用을 賦課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상처입은 사람이 폭력이라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강은실, 1991).

交換關係는 配偶者間 및 父母-子女間의 關係에서 概念化되며, 暴力 은 일반적으로 家族構成員間의 交換關係가 실패했을 때 발생되는 것 이다. 따라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權威가 위협받는 다고 생각할 때 이를 回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며,3) 또 는 期待報償이 없을 때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변화순, 1993).

#### 5. 資源理論(Resourse Theory)

Goode(1971)는 가정폭력을 資源理論에 의해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이론의 기존가정은 모든 社會體制는 일정수준의 힘이나 협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 내에서 支配權을 가지려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資源(예컨대,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기술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暴力이나 威脅 등 강압적인방법에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다른 資源이 不充分하거나 不足할 때 자신을 充足시키기 위한 資源으로서 폭력이 사용됨을 의미하는데, 폭력을 資源 (resources)의 한 유형으로 본다. 사람이 資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힘을 갖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자원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社會的 및 經濟的 資源이나 個人的인 長點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큰 支配力을 가진다. 개인적 자원이 많으면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여러 가지 物質的, 精神的, 그리고 社會的 報償을 얻을 수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순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폭력이나 위협 등 强壓的인 方法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낮은데, 이는 굳이 關係斷折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sup>3)</sup> 男便의 社會的 地位와 家族內 地位가 불일치할 때 家族體系內에서 交換關係의 衡平을 回復하기 위하여 暴力이 사용될 可能性이 높다고 함(변화순, 1993).

때문이다. 家族關係를 지배하기 원하지만 敎育水準도 낮고, 職業的 地位도 낮고, 所得도 낮은 사람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다른 手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위협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社會經濟的 位置가 낮은 家族, 下流層 사람들이 中·上流層 家族 및 사람들보다 가족원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普遍的이며, 자부심이나 자기가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힘을 사용해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지향적인 남성들은 육체적인 힘을 하나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돈이나 지식, 존경심과 같은 자원이 缺如되었을 때 이를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그가 행사할 수 있는 힘도 커진다는 것이다(변화순, 1993; 전춘애, 1989).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협박은 社會體制의 組織에 있어 근본적인 것으로 보며, 이는 家族體制에서도 발견된다. Goode(1971)는 개인이 명령할 수 있는 資源이 크면 클수록 그가 모을 수 있는 힘은 크지만 실제로 드러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資源이 不充分하거나 缺乏的인 個人은 資源의 한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가족내에서 우세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낮은 敎育水準과 낮은 所得과 社會的 特權이 낮은 職業과 對人關係 技術이부족한 남편은 열세한 위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폭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편이 성취한 지위가 부인보다 낮은 가족에서는 남편이 높은 특권을 가진 직업인 자원을 갖고 있을 때보다 가족구성원에폭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보여준 연구에서 알 수 있다(O'Brien, 1971).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직한 남편이부인을 복종케 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한편 家庭暴力의 핵심을 가족성원들 사이의 세력과 지배에 관한 것

으로 본 점은 女權論的 立場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Goode (1971)는 이러한 폭력사용의 동기가 남편뿐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원이면 누구에 의해서든(예, 청소년과 노인 등)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측면에서 Gelles(1976)는 資源을 적게 가진 여성일수록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함께 머물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즉, 남편이 심한 폭력을 휘두를지라도 부인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면 할수록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폭력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 6. 葛藤理論(Conflict Theory)

폭력에 대한 葛藤理論的 接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Weber(1947)의 權威(authority)와 權力(power)의 概念이 중요하다. 가족내에서의 對立은 가끔 개인이 權威는 가지지만 어떤 행위를 요구할 힘을 갖지 못할 때 야기된다. 가족구성원간의 權威 및 權力의 不一致를 보여주는 일반적 인 예는 10대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法的 權限(legal authority)을 소유할지라도 대부분 자녀가 反抗(rebel)하여 부모의 慾求 가 수행될 정도의 힘(power)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Steinmetz, 1977①).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부모는 아동에 대한 身體的 暴力 에 호소하게 된다고 한다(Bachman, 1967; Steinmetz, 1971, 1974; Straus, 1971).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힘이 수반되지 않는 權威는 夫婦간의 葛 藤과 婦人虐待 및 暴力을 설명하는데도 많이 이용되었다(Allen and Straus, 1979; Kolb and Straus, 1974; O'Brien, 1971). Darhendorf(1968)는 葛藤模型의 葛藤, 對決, 그리고 變化에 의해 기본단계를 기술하였다. 폭력은 갈등을 수행하는 한 樣式으로서 개인 및 집단이 이익을 추구 하는 양식이 대응관계에서의 갈등을 잘못 管理함으로써 破壞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강은실, 1991).

葛藤理論은 支配와 服從, 그리고 競爭的 目的에 의해 특징되어지는 모든 集團과 組織에서 갈등은 不可避한 部分(inevitable part)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Steinmetz, 1987). 이 이론은 개인, 집단 및 조직의 합의와 평행보다는 葛藤管理에 초점을 두고 있다(강은실, 1991). 가족은 대결과 갈등적 이익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Sprey, 1969), 폭력은 모든 다른 방안이 실패했을 때 개인의 이익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적합한 結果(outcome)이며 강력한 樣式(mode)이라고 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家庭暴力은 가족구성원들간의 葛藤에서 비롯된다. Gelles & Straus(1979)는 가족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構造的 特性이 근본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葛藤과 暴力을 일으킬소지를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가족에 내재해 있는 葛藤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이선이, 1995). 가족은 대표적인 一次集團(primary group)으로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긴밀하며, 手段的 關係가 主를 이루는 二次集團에서와는 달리 相互作用의 內容이 복잡하다. 즉,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에서는 合理的, 手段的, 그리고 條件的 側面보다는 情緒的인 交流와 全人格的인만남과 無條件的인 相互間의 受容이 강조된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처지가 다른 구성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족 내에서의相互作用은 상당부분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의 성격을 가지고있다. 즉, 크고 작은 決定들이 이루어질 때,4)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빈번한 현장이 또한 가족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家族關係에서 깊은 人間的인 交流와 相互理解를 기대하

<sup>4)</sup> 예를 들면, 구입할 자동차를 선택한다든지, 시청할 텔레비전의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임.

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이해에 대한 期待 때문에 가족성원들 사이에 葛藤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葛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깊은 상처를 받기가 더욱쉬운 측면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同質性이 높고 紐帶가 강하다고 쉽게 假定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가족은 상당히 異質的인 構成員들로 이루어진 매우 특이한 集團이다. 즉, 전형적으로 가족은 남성과 여성, 또 성인과 아동과 노인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性別 또는 世代別로 價值觀과 理解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男女間 葛藤과 世代間 反目의 一次的인 現場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외부사회와 어느 정도 고립된 사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사회에서 작용하는 사회통제 기제의 효력이약하게 나타난다. 즉, 외부사회에서는 억제 또는 절제되었을 행동이가족내부에서는 쉽게 表出될 수 있다. 또 가족은 가족성원으로서의지위가 自意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변경되기가 어려운 집단이어서 일단 家族關係가 婚姻 및 出産에 의해 형성되고 나면, 緊張과 葛藤이발생했을 때 가족관계의 종식을 통하여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거의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家族은 근본적으로 葛藤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들 葛藤發生의 構造的인 要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한편으로 이들 요인이 바로 家族制度의 魅力이기도 하다. 즉, 가족의 一次 集團的 側面, 相互依存性과 親密性 등이 안식이나 인격적 성숙을 체험하게 하는 場으로서의 가족을 인식하게 한다. 여기서 家族制度의 兩面的 性格과 아이러니(irony)를 엿볼 수 있다.5)

<sup>5)</sup> 가족성원들은 서로의 과거를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 좋아하는 것

## 第3節 社會文化的 理論(Sociocultural Theories)

社會文化的 理論은 폭력을 價值, 制度, 體系運營 등과 같은 社會的構造나 秩序 등 巨視的 水準(macro level)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즉, 社會構造, 機能, 下位文化, 그리고 社會體制 등과 같은 巨視的 變因에 의해 가족내에서의 개인폭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개인의 社會心理的 側面에서 內在하는 개념 및 과정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은 體系理論(systems theory), 機能理論(functional theory), 構造的 理論(structural theory), 文化的 理論(cultural theory), 맑스 理論 (marxist theory), 그리고 女權論的 理論(feminist theory) 등이 있다 (Gelles and Straus, 1979). 그러나 이들 세부 이론 중에서 女權論的 理論은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서 대단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가족 및 사회문제화하는데 많은 貢獻을 한 女權運動家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體系理論(Systems Theory)

體系理論은 가족을 목적을 추구하고, 적응하는 사회체계로 보며,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이 발생되고 지속되는 過程(processes)에 초점을 맞춘다. Straus(1973)는 일반체계이론을 적용하여 家庭暴力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가정폭력이 개인적 병리현상이라기 보다는 가족체계의 결과 내지 産出(output)로 취급한다.

과 싫어하는 것들을 서로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유대와 지지의 기반이 되는 반면,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되어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측면도 있음(김승권, 1998①).

이 이론은 인간관계를 還流過程(feedback process)으로 본다. 즉, 가해자의 폭력에 피해자가 대항하지 않으면, 肯定的 還流(positive feedback)의 側面에서는 가해자의 폭력이 강화되며, 否定的 還流 (negative feedback)의 側面에서는 가해자의 폭력수준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항을 하면, 가해자는 支配體系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피해자에게 否定的인 還流를 보내게 되고 피해자는 복종하지 않게 되므로서 가해자는 폭력을 다시 사용하게 되어 폭력이 반복하여 발생된다는 것이다.

### 2. 機能的 理論(Functional Theory)

機能的 理論에 의하면, 家族의 適應力(adaptabil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은 중요하다고 한다. Coser(1967)는 폭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肯定的 機能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폭력은 개인을 위한 成就領域(area of achievement)을 제공하고,6 둘째, 폭력은 地域社會를 위해서는 危險信號(danger signal)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變化를위한 觸媒劑(catalyst for change)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정폭력의 기능론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이들의 한 형태는 Bakan(1971)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子女虐待, 특히 嬰兒殺害(infanticide)는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매카니즘을 제공한 다는 것이다.7) 두 번째 형태는 억압된 좌절과 적대감을 해소시키고, 그 결과 심각한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輕한 暴力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부 가족치료가에 의해 제공되는 기

<sup>6)</sup> 남미국가에서 공격적인 남성과 도시빈민가의 폭력은 성취의 다른 통로가 차단되었을 때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는 수단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함(Coser, 1967. 개인용).

<sup>7)</sup> 실제로 과거에는 영아살해가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함 (Radbill, 1968).

초적인 治療技法이다(Bach and Wyden, 1967). 마지막으로, 기능적 이론의 또 다른 형태는 社會生物學(sociobiology)的 見解이다. 人種學者 (ethnologists)에 의해 발전된 社會生物學的 觀點은 부모의 유전적 혈통을 이을 자손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부모-자녀간의 結束力의 弱化에 의하여 障碍人 및 入養된 子女에 대한 유기 및 학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기능적 이론의 중심개념을 가정폭력에 적용하 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보겠다.

#### 3. 構造的 理論(Structural Theory)

가정폭력의 構造的 接近은 스트레스, 좌절(frustration), 그리고 박탈 (deprivation)과 같은 暴力誘發要因(violence-producing factors)의 차별적 분포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다. 즉, 貧困階層, 多子女 家族, 그리고 人口密集地域에서 폭력이 보다 만연된다고 한다(Steinmetz, 1987). 결국 이 이론에 의하면, 열악한 社會經濟的 位置에 있는 개인은 상대적으로 보다 큰 좌절을 경험하며, 좌절이나 박탈에 대한 빈번한 반응은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構造的 理論은 대인간 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통합한 것으로, 좌절-공격이론, 학습이론과 스트레스 등에 대한 학자의 의견을 통합한 것이며, 또한 가정폭력관련 다양한 이론들의 통합이 가능하도록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정교한 설명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家族 및 家族關係의 主要 側面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批判도 받고 있다(강은실, 1991).

#### 4. 文化的 理論(Cultural Theory)

이 이론은 가정폭력이 社會構造 內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기본명제에서 출발한다. 폭력이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폭력에 관련된 文化的 規範 및 價値의 機能 때문이라는 점이다(Wolfgang and Ferracuti, 1967).

文化的 理論은 폭력이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거나 갈등을 해결할 資源이 부족한 가족에서 보다는 오히려 社會化 實踐 (socialization practices)이 폭력에 깊게 빠져있는 문화 또는 下位文化에 속하는 가족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南美의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우월성에 가치를 둔 과장된 男性美 (machismo)의 이미지는 폭력을 행사하는데 대한 문화적 태도의 적절한 보기이다(Steinmetz, 1987).

가족내의 폭력이 학대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부정적이지만, 體罰이나 訓育의 의미를 가질 때에 그것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8) 子女訓育에 대해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觀念이 夫婦關係에 대해서도 존재한다.9) 이러한 인식은 가정폭력의 安當性을 社會的으로 認定하고 正當化시키는 手段으로 작용한다.

경찰이나 사법부 관계자나 가족외부의 일반인들이 신체적인 상해가 심각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남이 간섭하지 말아야 할 私的인 問題 라고 간주해 버리는 경향도 가정폭력의 正當性이 인정되는 것의 바탕 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는 폭 력을 금지하는 규범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정폭력만은 끈질기게 예

<sup>8)</sup> 흔히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음.

<sup>9)</sup> 아내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부에 대한 어느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이 "말로 해서는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때렸다" 또는 "아내더러 정신차리라고 때렸다"고 하거나, 아내 스스로 "내가 맞을 만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예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 대답들 속에 폭력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 숨어 있는 것임(Gelles, 1974).

외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10)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념이 家庭暴力을 後援하는 文化的인 規範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려하기도 한다(Garbarino, 1976).

폭력에 관한 文化的 觀點은 精神病理學的 理論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限界性을 갖고 있다. 먼저, 폭력적인 葛藤解消方法이 특정계층에만 普遍化된 現象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에게 많이 露出된 現象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폭력이 특정 지역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일반의 주류문화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지 어떤 사회에서는 폭력이 감추어져 있거나 남성적인 행위로 적절히 合法化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이 이론은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의 폭력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도 지닌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연구결과에서 실제로 나타난다. 폭력 및 폭력의 위협은 사회체제에 기본적으로 편재해 있기 때문에 중·상류충보다하류층 사람이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계층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다(김광일, 1988). 다만 중·상류층은 하류층과는 달리 폭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轉換시켜 發散할수 있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을 뿐이다(강은실, 1991).

#### 5. 맑시스트 理論(Marxist Theory)

맑시스트적 접근은 폭력을 일종의 經濟的 및 政治的 現象(economic and political phenomon)으로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여성은 經濟的管理(economic control), 政治權力(political power), 그리고 地位(status)를

<sup>10)</sup> 스트라우스(Straus, 1992)는 살인사건 발생비율이 낮은 서구의 선진산업사회일수록 가족에 의한 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들어 이러한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캐나다 48%, 덴마크 67%로 매우 높음.

박탈당한 抑壓된 經濟的 階級(oppressed economic class)이며, 그들은 家父長制와 資本主義에 의하여 희생된다고 한다(Steinmetz, 1987).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남성의 매카니즘으로서 폭력은 맑스이론의 論理的 擴張으로 볼 수 있다.

## 第4節 女權論的 理論(Feminist Theory)

女權主義 理論은 맑시스트 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으나 Jaggers and Struhl(1978)은 여권주의적 측면의 강조와 함께 하나의 독립적인 가정폭력 관련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여권론적 측면에서는 家庭暴力이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女性에 대한 虐待를 의미한다. 특히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과정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을 統制하기 위한 手段으로 폭력이사용된다는 측면의 관점은 다른 家庭暴力 關聯理論과는 매우 상이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통제의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되는 현상을 말하며, 근본적으로 男女不平等에서 비롯되고, 가족 내에서 "男性支配, 女性服從"을 지속시키는 기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물론 가정폭력은 남편과 부인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아내학대와 남편학대는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 여권주의적 이론의 입장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족성원간의 葛藤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폭력은 일반적으로 社會問題로서의 家庭暴力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 본적으로 男女不平等에서 비롯되는 暴力만을 그 범주에 포함시킨다. 즉, 남성의 폭력은 여성에 대한 통제의 기본이며(Brownmiller, 1975), 남성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므로 폭력과 性性(sexuality)은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다(Gelles, 1993). 따 라서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은 비정상적 현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가족에서 볼 수 있는 一般的인 現象이라는 것이다(변화순, 1993).

여권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은 "여성에 대하여 통제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여성은 국가에 의해 강화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폭력을 피할 수 없다고 하여 전자를 강조한다. 그러나 O'Brien은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지위의 측면에서 현저히 우월하지 않다면 결혼생활에서 이러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여성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여 후자를 강조한다 (변화순, 1993).

急進主義的 女權主義는 家父長的 社會에서의 性(gender)과 社會構造의 特性에 초점을 맞추며, 폭력을 형성하는 사회적 힘과 여성억압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설명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국가가 폭력적인 남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女性의 福祉에 대한 慾求를 지원하지 않아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從屬되어 있으며, 심각한 폭력이 아닌 대부분의 폭력에 國家의 介入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폭력을 助長한다고 주장하여 폭력에 대한 國家의 消極的인 姿勢가 가정폭력을 持續시키는 要因임을 밝히고 있다(변화순, 1993). 여권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의 역사적 전통, 남·여성의 性의 현대적구성, 체계적인 폭력으로부터 도피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제약 등으로 가정폭력은 가부장제도하에서 여성에 대한 强制的 統制戰略으로 본다(Yilo and Bagrod, 1988).

여권주의와 사회구조적 관점을 비교한 변화순(1993)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에 의한 性差別 社會(Sexist Society)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규범 및 문화적 가치는 아

대학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두 관점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관점은 '性 中立的(genderneutral)'이라는 점에서 여권주의적 견해와는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권주의적 입장에서는 남편에 의한 婦人虐待와 부인에 의한 男便虐待는 모두 가정폭력이기는 하지만 내포하는 의미가 상이하다. 부인의 男便虐待에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반면 남편에 의한 婦人虐待는 부인에 대한 부당하고 일방적인 통제가 수반된다고 본다. 또한 남편에 의한 婦人虐待에는 經濟的 剝奪, 性的 虐待, 脅迫, 恐怖雰圍氣 造成, 精神的 虐待, 孤立化 등의 많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한다(Schechter, 1988).

그러나 여권주의 이론은 사회구조적 관점인 "왜 階級으로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 統制를 행사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변화순, 1993).

# 第5節 家庭暴力關聯 諸 理論의 示唆點

이상에서 家庭暴力에 관한 諸 理論을 살펴보았다. 이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考案된 것으로 우리의 가족에서 폭력이 발생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적절히 설명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社會學者, 心理學者, 精神分析學者, 女性學者 등 여러분야의 학자들이 개발한 많은 이론들이 가정폭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限界를 가지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매우 복합적이고 서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諸 理論에서 제기하고 있는 家庭暴力의 要因들은 부분적으로 중복되거나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의 원인은 특정사회의 個人的, 家族的, 그리고 社會的 環境과持續的인 社會變化에 따라 相異하게 나타나고, 아울러 폭력의 加害者

및 被害者에 따라 그 이론적 접근도 달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가정폭력의 발생에 부분적으로만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라고 하겠다. Gelles & Cornell(1985)은 이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즉, 가족내의 性不平等, 私的 空間으로서의 孤立化와 그에 따른 社會的統制의 缺如, 暴力을 寬容하는 社會的 規範 등이 가정폭력이 발생할수 있는 與件을 造成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김승권, 1998①).

Straus, Gelles 등 가정폭력 관련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家庭暴力이 만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들은 社會的 體制로서의 가족이 暴力的인 環境이 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의 矛盾點은 가족을 따뜻하고, 서로 依存할 수 있고, 그리고 친밀한 環境을 제공하는 潛在力이 될 수도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구성원은 상당한 시간을 같이 지내야 하고, ② 서로 공통된 활동과 흥미를 공유하며, ③ 서로 관여하고 애착을 갖는 강도가 강하여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려 한다. 또한 ④ 性的인 不平等과 年齡의 差異가 있다. ⑤ 家族은 私的인 性格이 강하며, 특히 핵가족화는 사적인 가족의 특성을 강화시켜 이웃 및 확대가족원과의 갈등 및 폭력을 보더라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보고하거나 학대받은 가족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으며 도움을 주려하지 않는다. ⑥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을 원하므로 생기는 相衝되는 활동이 있으며, ⑦ 가족내의 역할은 이해관계나 경쟁에 근거하기 보다는 規範에 依存한다. ⑧ 결혼은 파기하기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⑨ 가족은 끊임없이 出生, 職業, 老化 등과 관련된 일련의 變化로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어야 한다. ⑩ 부모에게 신체적 폭

력을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社會的 規範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인 규범은 종종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사용을 합법화한다.

이러한 가족특성은 가정폭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하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기능 적일 수도 있으나 또한 폭력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어 가족이 사랑의 場인 동시에 폭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제도 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조병은, 1993).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논의가 가족들이 경험하는 모든 심각한 문제 상황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근래에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고 있는 家庭暴力 또는 虐待의 경우, 가족스트레스 이론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만일家庭暴力이 어쩌다가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것은 하나의예기치 않은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가족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또는 가족성원에 의한 적절한 대처와 극복을 요하는 문제로 간주될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虐待의 경우는家族危機라 할 만큼 이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家庭暴力은 가족스트레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한다(이선이, 1995).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가족은 가부장제적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家庭暴力에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虐待가 주를 이룬다는 지적도 있다 (Schechter, 1988).

가정폭력에 관련된 제 이론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얼마나 충실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이론에 의하면, 한국 가족의 폭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인에 의 하여 주로 발생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家庭暴力 加害者 個人의 精神 疾患, 攻擊的 性向 및 기타 性格的 缺陷, 알코올이나 마약남용 등 病理的 屬性에 의한 것이다.

둘째, 家族의 構造的 特徵과 家族葛藤에 의한 발생이다. 가족은 일 차집단(primary group)으로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긴밀 하며, 복잡하다. 가족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편,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 sum)의 성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간에는 갈등의 발생소지가 많다. 또한 가족은 남성과 여성, 또 성인과 아동과 노인이라는 매우 이질적 인 성격의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남녀간 갈등과 세대간 반목이 상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家族內 勢力關係에 의한 가정폭력의 발생이 많이 있다. Goode(197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 내에서 지배권을 가지려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원(예컨대,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기술 등)이 없을 경우 가정폭력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에 의존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권론적 입장과 일치하는 측면도 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자원을 적게 가진 모든 사람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넷째, 가정폭력은 가족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또 社會的 및 經濟的 資源이 빈약한 가족일수록 발생가능성이 높다. 모든 계층에서 가정폭력은 발생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모의 직업적 지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 이 이를 뒤받침한다.

다섯째, 家庭暴力에 대한 社會的 寬容이 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 가정폭력이 체벌 또는 훈육이거나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교정의의미를 가진다면 폭력은「必要惡」이라는 관념이 많이 있다. 특히 우

리 사회에서는 자녀훈육에서 이러한 측면의 학대 및 폭력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한 수단일 수 있다.

여섯째, 가정폭력은 反復 내지 轉移(Cycle of Violence)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代를 이어 발생된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폭력이 빈법한 가족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함으로서 폭력사용방법과 폭력이 어떠한 상황에 서 정당화되는지를 학습하면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폭력을 생 활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性不平等 및 家父長制的 價值觀에 의하여 가정폭력이 발생된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학대 및 폭력」, 「아버지의 자녀에 대 한 학대 및 폭력」은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제시된 한국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은 서로 상호작용하 며 복합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다양 한 원인에 의하여 가정폭력이 발생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第3章 韓國에서의 家庭暴力 關聯 先行研究

歐美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1960년대 女權主義 運動家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승권, 1998①). 공식적으로 알려진 가정폭력의 발생률이 낮아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자마다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서구에서 실시된 많은 초기연구에 의하여 家庭暴力의 실상이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하였을 때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사실은 家庭暴力의 發生頻度와 偏在性이었다. 즉, 일부 低所得層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종전의 인식과는 달리 사회의 모든 階層과 社會的 範疇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많이 실시하게 되었는데, 外國의 주요 조사연구를 보면, 1975년 Straus & Gelles에 의해 미국의 2,143가구에 대해 실시되었고, 10년 후인 1985년에는 미국의 3,520가구에 대하여 이들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家庭暴力實態調査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382가구에 대한 夫婦暴力 中心의 調査가 Tang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많은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Straus & Gelles, 1986, 1990; Tang, 1994).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家庭暴力에 대한 實證的이고 體系的인 연구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특히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가정폭력 연구, 즉 사회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가정폭력실태조사가 週

期的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왔다. 또한 비록 가정폭력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하더라고 대부분 家庭暴力의 被 害者에 局限되어 이루어졌거나 또는 特定한 地域 및 對象에 限定되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를 一般化시킬 수는 없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비교적 대규모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가정폭력관련 조사연구는 1992 년 韓國刑事政策研究院에서 이루어진 조사와 1997년 김재엽에 의해 수행된 조사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외에도 다수의 가치있는 조사연구 가 진행되었으나 이들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調査規模, 調査對象 등에서 극히 限界點을 가지고 있어 客觀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음이 아쉽다. 최근에 실시한 가정폭력에 관련된 주요 조사연구 는 〈表 3-1〉과 같다.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진 『家庭暴力 實態 및 對策에 관한 硏究』는 이 분야에서 최초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의한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이 조사 또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가 아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1,200명의 남·여에 한하여 이루어져 사회전체의 가정폭력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보겠다.

김재엽 교수에 의하여 수행된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는 전국을 단위로 한 표본조사라는 매우 가치있는 자료이다. 이 조사는 20세 이상 기혼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폭력을 다루지 않고 부부폭력에 국한하여 다루었으며, 전화조사에 의하여 수행되어 조사내용이 다양하지 못하여 가정폭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치료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보겠다.

이외에도 허남순(1993)에 의해 이루어진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와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1993)에 의한 「가정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두가지 모두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表 3-1〉 우리 나라의 家庭暴力 關聯 主要 先行硏究

조사 연도	주 연구자 또는 기관	연구명	조사대상 및 특징
1992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기혼 남녀 1,200명(남성 560명, 여 성 640명)을 대상으로 한 부 부폭력에 관한 조사연구
1997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전국의 20세 이상 기혼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한 부부폭 력에 관한 조사연구(전화조사)
1992	허남순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전국 11개 가정법률상담소에 서 구타문제를 상담한 여성 156명을 대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구타에 관한 조사연구
1993	변화순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8개 상담기관 및 쉼터를 이용한 가정폭력피해 기혼여성 52명을 대상으로한 아내구타에 관한 조사연구
1991	연진영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의 초등학교 2곳의 3학년 과 6학년 남녀학생 978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연구
1996	한국이웃 사랑회	아동학대실태조사를 통한 개입방안 연구	서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 국 11개 지역의 17개 초등학 교 학생 4,298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폭력의 한 유형인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최근 심각한 상태에 있어 그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수 이루어졌다. 1991년 연진영에 의하여 실시된 서울의 초등학생 97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1996년 사단법인 「한국이웃사랑회」의 이호균 등에 의

해 이루어진 전국의 17개 초등학교 학생 4,2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후자의 연구는 조사규모와 조사내용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우리 나라의 아동학대 실태를 보다 면밀히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문이나 TV 등에서 보도되는 노부모 유기, 병든 노인의 방치, 존속상해 및 살인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 사회에도 노인학대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의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와 최선화 등(1998)이 수행한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김한곤(1998)의 「노인학대의 인지도와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의한 범죄와 노인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일부로서 추진된 것으로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및 폭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선화 등에 의한 연구는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65세이상 여성노인 50명에 대한 事例調査이며, 김한곤의 연구는 20세이 상성인에 대한 노인학대 및 폭력의 인지도와 65세이상 노인 2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이다. 이는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노인학대 및 폭력」의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인학대 및 폭력」은 가정내에 은폐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첫째, 부인 및 아동학대가 보다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노인학대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성인자녀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의 악화와 보복을 염려하고있어 이를 문제제기하는 경향이 약한데도 그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처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받게 되는 죄의식과 사회적 비난, 그리고 손자녀에게 끼치는영향 등으로 피해자인 노인들 자신도 학대 및 폭력의 노출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Kosberg, 1988; Penhale, 1993).

마지막으로 주요 선행연구에 나타난 부부폭력의 수준에 대한 연구의 특징 및 결과를 검토하여 보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2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가정폭력을 "傷害意圖나 結果, 社會的 容認程度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모든행위"라고 정의하고 傷害可能性에 따라 暴力等級을 Straus(1979)가 개발한 夫婦暴力尺度인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 실시전 1년(1990년7월~1991년 6월) 동안에 가정폭력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家庭暴力의 範圍를 Straus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경한 폭력과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경한 폭력은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행 위', 그리고 '뺨을 때리는 행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심한 폭력은 '발이나 주먹으로 한두 대 때리는 행위',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리 려 하거나 한두 대 때리는 행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는 행위', '칼 같은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칼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행 위 등으로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폭력이 발생한 가구는 전체 1,171가구 중 44.0%였으며, 경한 폭력은 28.7%, 심

한 폭력은 15.3%였다. 부부폭력의 방향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조사대상가구의 28.4%였다. 이 중 경한 폭력만 발생한 가구는 17.8%, 심한 폭력이 발생한 가구는 10.6%였다.11) 또한 지난 1년 동안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전체 가구의 15.6%였다. 이 중 경한 폭력이 발생한 가구는 10.9%, 심한폭력은 4.7% 발생하였다.12)

비록 가구방문에 의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전국 규모의 가정폭력실 태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김재엽 교수의 1997년 조사에서는 이성적 및 언어적 공격과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경우를 제외한 7가지 항목을 Straus & Gelles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경미한 폭력은 '상대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세계 밀치는 행위',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이며, 심각한 폭력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그리고 '칼, 가위, 총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부부폭력정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1,523가구 중 31.4%가 夫婦暴力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경미한 폭력은 31.0%, 심각한 폭력 9.1%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방향에 의해 구분하여 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27.9%였으며, 이는 경미한 폭력 27.5%, 심각한 폭력 7.9%였다. 그리고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은 15.8%로 나타났고, 경미한 폭력이 15.5%, 심각한 폭력은 2.8%였다.

<sup>11)</sup> 심한 폭력이 1~2회 발생한 가구는 6.5%, 심한 폭력이 3회 이상 발생한 가구는 4.1%였음.

<sup>12)</sup> 심한 폭력이 1~2회 발생한 가구는 2.6%, 3회 이상 발행한 가구는 2.1%였음.

〈表 3-2〉 主要 先行研究의 夫婦暴力發生率

(단위: %)

			· · · · · · · · · · · · · · · · · · ·	
어그기(기괴) 미 토서	부부	부부폭력		
연구자(기관) 및 특성	남편→부인	부인→남편	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28.4	15.6	44.0	
경한 폭력	17.8	10.9	28.7	
심한 폭력	10.6	4.7	15.3	
김재엽(1997)	27.9 <sup>1)</sup>	15.8 <sup>1)</sup>	31.4	
경미한 폭력	$27.5^{2)}$	$15.5^{2)}$	31.0	
심각한 폭력	$7.9^{3)}$	$2.8^{3)}$	9.1	
미국(1985)				
경미한 폭력	10.24)	11.9 <sup>4)</sup>	16.1	
심각한 폭력	3.4 <sup>5)</sup>	4.8 <sup>5)</sup>	6.3	
홍콩(1994)	-	-	14.2	

- 註: 1) 상호폭력 12.3%가 중복 계산됨.
  - 2) 상호폭력 12.0%가 중복 계산됨.
  - 3) 상호폭력 1.6%가 중복 계산됨.
  - 4) 상호폭력 6.0%가 중복 계산됨.
  - 5) 상호폭력 1.9%가 중복 계산됨.

資料: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사회복지학회,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Straus, M. A. and R. J. Gelle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1990.

Tang, So-kum, "Prevalence of Spouse Aggression in Hong Ko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9, No.4, 1994.

이와 같은 한국의 주요 선행연구는 미국(1985년)과 홍콩(1994년)의 부부폭력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미국의 부부폭력 발생 비율은 16.1%였으며, 홍콩의 경우는 14.2%에 불과하여, 선행연구에 나 타난 우리 나라 부부폭력 수준은 이들 국가의 약 2~3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과연 우리 나라 가구의 약 31~44%가 가정폭력범죄가 자행되 고 犯罪家族인가? 우리 사회에서의 폭력발생정도가 정말 이렇게 심각 한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특히 이들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가정폭력의 실태파악을 위한 폭력유형은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 法』에 명시된 가정폭력의 유형보다는 매우 협소한 단지 身體的 暴力 에 국한하였고, 그 이외의 학대 및 폭력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정 서적 학대, 방임 및 유기, 권리행사방해 등을 가정폭력의 개념으로 포 함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暴力家族이 존재함을 예측케 한다. 즉, 본 연구에서 보여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그 범위를 정신적 학대, 방임 및 유기 등에 까지 확대 한다면 가정폭력 수준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 第4章 韓國 家庭暴力의 概念定立

최근에 家庭暴力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家庭暴力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家庭暴力에 대한 定義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의되어 있지 않다. 즉, 家庭暴力의 概念을 어떻게 定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통일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아 한 사회의 가정폭력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큰 제약점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어느 만큼이나 심각한 행위를 폭력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논의의 초점이 되어있는데, 부부간의 말다툼이나 사소한 신체적폭력, 子女訓育過程에서 이루어지는 訓育次元의 體罰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등 무수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이 家庭暴力의 概念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虐待 및 暴力의 被害對象者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研究者에 따라 相異한 概念에서 사 용되어 왔으며, 時代的 背景, 社會文化的 背景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하 여 그 基準과 範圍를 달리하고 또한 變化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의 법적인 개념과 실태조사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정서에 기초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本 研究에서 家庭暴力의 概念을 정립하기 위하여 특히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家庭暴力의 對象이다. 이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家族關係가 어느 範疇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 을 고려할 수 있다. 同居家族員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非同居 家 族員까지 가정폭력의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또한 法的으로 認定된 家族關係에 한정할 것인가? 事實婚의 關係를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法的으로 家族關係를 終了한 과거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경우와 그 부모까지로 擴大할 것인가?

둘째, 家庭暴力의 範圍이다. 가정폭력을 身體的 危害行爲에 국한할 것인가? 신체적 폭력일지라도 直接的으로 危害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 니라 間接的인 行爲까지를 포함할 것인지도 概念定立을 위해 고려되 었다. 아울러 作爲에 의한 폭력 및 학대뿐만 아니라 不作爲에 의한 학대 및 폭력, 예를 들면 遺棄 및 放任에 의한 행위까지 포함할 것인 가의 문제이다. 精神的 및 性的 虐待 및 暴力 등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논의의 초점이다.

셋째, 家庭暴力의 頻度의 問題이다. 단 한번의 폭력이라도 가정폭력 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反復的이고 常習的인 폭력만이 가정폭력 으로 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반복적이고 상습적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가정폭력의 범위에 의해 분류된 가정폭력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第1節 家庭暴力의 定義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전에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용어가 잘못 인식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가정폭력이란 단어를 주로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인 『아내구타 또는 학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다른 가정 폭력의 한 유형인 아동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폭력 및 학대는 『아동학 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인학대를 定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학자나 실무자들 간 에 유사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虐待의 程度나 範圍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학자에 따라 다른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용어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변화순, 1993). 즉, 많은 문헌에서는 婦人虐待(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ult), 家庭暴力(domestic or family violence), 配偶者 虐待(spouse-abuse), 夫婦暴力(conjugal-violence) 등의 명칭을 널리 사용한다(박미은, 1991). 외국에서는 중립적인 概念인 "家庭暴力(domestic or family violence)" 혹은 "配偶者 虐待(spouse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婦人虐待나 아내구타는 女權主義 視覺에서 사용되고, 家庭暴力 혹은 배우자 폭력은 일탈및 범법 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虐待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변화순, 1993; Ferraro, 1981).

물론 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두 유형의 가정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성계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sup>13)</sup> 가정폭력의 용어가 아내에 대한 폭력의 대명사로서 사용되어 온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아내구타 또는 학대」를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家庭暴力은 이를 포함하여 가족원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함한 包括的인 概念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제 이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個人的, 社會心理的, 그리고 社會文化的 要因 등에 의하여 複合的으로 발생되므로 가정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의 예방과 치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에 제한된 용어의 사용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

<sup>13)</sup> 여권단체의 노력은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이는 정부 및 입법기관에 큰 영향을 주어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케 하는 등 가정폭력의 사회문제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대상에 따라 남편에 의 한 「부인학대 및 폭력」,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 형제자매와 동거친척 등 기타 가족원에 의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인 「기 타 가족원 학대 및 폭력」, 모든 가족원이 18세 이하 아동에게 가하는 「아동학대 및 폭력」, 그리고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 및 폭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 용어로서 『가정폭 력』을 사용하였다.

## 第2節 家庭暴力의 法的 概念

## 1. 家庭暴力의 對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① 현재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이거나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 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嫡母庶子의 관 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이다(동법 제2조 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행위 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의미하며, 「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를 말한다.

#### 2. 家庭暴力의 範圍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身體的, 精神的 또는 財産上 被害를 隨伴하는 行爲"라고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包括的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에 있어서 가정폭력의 법률상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폭력 대상인 가족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그리고 제261조(특수폭행)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이다.
- ② 가정폭력의 대상인 가족원 중에서 노후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恥辱을 隱蔽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參酌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유기와 학대의 죄 중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 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그리고 제274조(아동혹사)에 규정되어 있다.

- ③ 가정폭력의 대상인 가족원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경우로서, 未 遂犯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의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9조(중체포, 중감금, 존 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76조와 277조에 한함) 등에 명시되어 있다.
- ④ 가정폭력의 대상인 가족원에 대하여 脅迫하는 경우로서 未遂에 그친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형법의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 협박) 제1항 및 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등에 해당하는 죄이다.
- ⑤ 가정폭력의 대상인 가족원에 대하여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名 譽를 毁損하는 경우로서 死者에 대한 행위도 포함하며, 또한 가족원 을 誹謗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名譽를 毁損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공연히 가족원을 侮 辱한 자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 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제311조(모욕)에 명시되어 있다.
- ⑥ 가정폭력 대상인 가족원의 身體,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自動車,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傍室을 搜索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범죄로 인정된다. 이는 형법의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수 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⑦ 暴行 또는 脅迫에 의하여 가정폭력 대상인 가족원의 權利行使를 妨害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와 未遂에 그친 경우에 가 정폭력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형법의 권리행사방해죄중 제324조(강 요)에 해당하는 죄이다.

- ⑧ 가정폭력 대상인 가족원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는 경우와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행위가 未遂에 그친 경우에도 家庭暴力犯罪에 해당된다. 이는 형법의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에 명시되어 있다.
- ⑨ 가정폭력 대상인 가족원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 등 特殊媒體記錄을 毀損 또는 隱匿 등 기타 방법으로 그 效用을 害한 경우이다. 이는 형법의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에 해당한다.
- ⑩ 가정폭력 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아동에게 求乞을 시키거나 이들을 利用하여 求乞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상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정폭력의 대상과 범위를 살펴보았다. 이는 가정폭력에 관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가정폭력 관련 학문적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第3節 家庭暴力 關聯 實態調査 및 被害者調査에 基礎한 家庭暴力의 概念

Straus & Gelles(1990)에 의하면 家庭暴力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며, 이때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행위로 개념화한다. 따라서 家庭暴力을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葛藤의 한 양상으로 간주하며, 가족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한다.

Straus(1979)는 폭력의 의도나 동기에 관련없이 상해가능성에 따라 폭력을 8등급으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폭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 ①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 ② 상대방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행위
- ③ 뺨을 때리는 행위
- ④ 발이나 주먹으로 한두 대 때리는 행위
- ⑤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리려 하거나 한두 대 때리는 행위
- ⑥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는 행위
- ⑦ 칼 같은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⑧ 칼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

그러나 이 定義는 身體的 暴力에 한하고 情緒的, 性的, 言語的 暴力 등은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우리 나라에서의 體 系的인 調査로서는 효시라 할 수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 사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이외에도 많은 연 구는 Straus가 제시한 8등급의 신체적 폭력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에 규정된 가정폭력의 개념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 준다.

물론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많은 제약점 때문에 이와 같은 신체적 폭력만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 및 연령에 따라서 精神的 및 言語的 虐待, 遺棄 및 放任에 의한 暴力이 身體的 暴力보다 빈번히 사용되기도 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충격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가정폭력을 논의함에 있어서 신체적 폭력만을 다룬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가정폭력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에 명시된 다양한 가정폭력 유형에 의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家庭暴力實態調査」와「家庭暴力被害者調査」에서 이용하였다.

## 1. 家庭暴力의 槪念定立을 위한 一般的 槪念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家庭暴力實態調査」는 전국을 단위로한 1,000명의 일반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것이다. 전화조사의 한계상 「家庭暴力被害者調査」와는 달리 많은 질문항목을 사용할 수 없어 남성, 여성, 노인, 아동 등의 피해대상 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의 가정폭력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는 Straus가 제시한 것과는 달리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언어폭력, 심리적 학대 등의 精神的 虐待 및 暴力을 포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 ① 물건을 던지는 행위
- ②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 ③ 몽둥이・칼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④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 ⑤ 욕설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表 4-1>과 <表 4-2>는 우리 나라 국민의 이와 같은 다섯가지 유형의 행동에 대하여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몽둥이 ·칼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應

答者의 人口社會的 特性에 따른 큰 차이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정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직접 때리는 행위는 99% 이상의 높은 暴力認定率을 보였으며, 신체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그보다는 다소 낮은 94.1%가 폭력으로 보고 있는 등 다소 차이를 보 여주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폭력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와 '욕설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은 각각 77.9%, 80.8%가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앞에서 보여준 세 가지 유형의 폭력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이는 女性 보다는 男性이, 그리고 20대의 젊은 연령층의 大學 以上의 學歷水準 을 가진 계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 2. 被害對象에 따른 家庭暴力의 特徵的 槪念

家庭暴力은 피해대상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共通的인 類型이 있 으며, 이와는 달리 남편, 부인, 아동, 노인, 기타 가족원 등의 被害對 象에 따라 特徵的인 暴力類型이 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年齡,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독특한 家族關係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 유형의 폭력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대상에 따른 가정폭력의 特徵的 概念을 定立하기 위하여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 부모 등 성인이 자녀 및 아동에 대해 행하는 「兒童虐待 및 暴力」, 그리고 자녀의 「老父母에 대한 虐待 및 暴力」 등에서 독특한 개념적 정의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 예를 들면, 형제·자매간의 폭력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의 일반적 개념과 피 해대상에 따른 특징적 개념을 연령, 남녀에 의하여 원용하여도 무방 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表 4-1〉 應答者 特性別 特定行爲에 대한 家庭暴力 認定比率(1)

(단위: %)

			(인귀: %)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몽둥이·칼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전체	(997)	99.6	99.4
연령			
20~29세	(279)	99.6	99.3
30~39세	(281)	99.6	99.3
40~49세	(177)	100.0	100.0
50~59세	(128)	99.2	99.2
60세 이상	(132)	99.2	99.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9.2	99.2
고등학교	(402)	100.0	100.0
대학 이상	(327)	99.4	98.8
 남성	(494)	99.4	99.6
연령			
20~29세	(145)	99.3	99.3
30~39세	(140)	99.3	99.3
40~49세	(87)	100.0	100.0
50~59세	(60)	98.3	100.0
60세 이상	(62)	100.0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8.9	100.0
고등학교	(206)	100.0	100.0
대학 이상	(193)	99.0	99.0
여성	(503)	99.8	99.2
연령			
20~29세	(134)	100.0	99.3
30~39세	(141)	100.0	99.3
40~49세	(90)	100.0	100.0
50~59세	(68)	100.0	98.5
60세 이상	(70)	100.0	98.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9.4	98.8
고등학교	(196)	100.0	100.0
대학 이상	(134)	100.0	98.5
	· · · ·	기가 기교사 이런 보셔!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表 4-2〉 應答者 特性別 特定行爲에 대한 家庭暴力 認定比率(2)

(단위·%)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물건을 고접거나 함취 발모 또는 행동 전체 (997) 94.1 77.9 80.8 연령 20~29세 (279) 94.6 64.2 77.4 30~39세 (281) 94.3 78.3 82.2 40~49세 (177) 95.5 89.3 86.4 50~59세 (128) 89.1 84.4 77.3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0) 8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57.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대학 이상 (134) 95.5 78.3 86.6					(단위: %)
전체 (997) 94.1 77.9 80.8 연령  20~29세 (279) 94.6 64.2 77.4 30~39세 (281) 94.3 78.3 82.2 40~49세 (177) 95.5 89.3 86.4 50~59세 (128) 89.1 84.4 77.3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0) 88.3 91.1 87.8 50~59세 (60) 93.3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O Fl 의 돈 시	(이미키스)	물건을	꼬집거나	욕설·모욕적인
연령 20~29세 (279) 94.6 64.2 77.4 30~39세 (281) 94.3 78.3 82.2 40~49세 (177) 95.5 89.3 86.4 50~59세 (128) 89.1 84.4 77.3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충답사 극성	(중납사구)	던지는 행위	할퀴는 행위	말 또는 행동
20~29세 (279) 94.6 64.2 77.4 30~39세 (281) 94.3 78.3 82.2 40~49세 (177) 95.5 89.3 86.4 50~59세 (128) 89.1 84.4 77.3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교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전체	(997)	94.1	77.9	80.8
30~39세 (281) 94.3 78.3 82.2 40~49세 (177) 95.5 89.3 86.4 50~59세 (128) 89.1 84.4 77.3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60세 이상 (503) 94.4 80.3 83.3 60.3 94.4 80.3 83.3 60.3 94.4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연령				
40~49세 (177) 95.5 89.3 86.4 50~59세 (128) 89.1 84.4 77.3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60세 이상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20~29세	(279)	94.6	64.2	77.4
50~59세 (128) 89.1 84.4 77.3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30~39세	(281)	94.3	78.3	82.2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40~49세	(177)	95.5	89.3	86.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이하 (165) 94.9 81.1 86.7	50~59세	(128)	89.1	84.4	77.3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2.5 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60세 이상	(132)	95.5	84.8	81.1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이하 (165) 94.9 81.1 86.7	교육수준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중학교 이하	(253)	93.7	84.6	79.5
남성 (494) 93.7 75.5 77.5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고등학교	(402)	93.8	78.6	80.9
연령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대학 이상	(327)	95.1	72.8	82.6
20~29세 (145) 93.8 61,4 72.4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영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남성	(494)	93.7	75.5	77.5
30~39세 (140) 92.9 71.4 76.4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연령				
40~49세 (87) 97.7 87.4 85.1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20~29세	(145)	93.8	61,4	72.4
50~59세 (60) 88.3 86.7 7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30~39세	(140)	92.9	71.4	76.4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40~49세	(87)	97.7	87.4	8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50~59세	(60)	88.3	86.7	76.7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60세 이상	(62)	95.2	90.3	82.3
고등학교 (206) 92.7 76.2 75.2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교육수준				
대학 이상 (193) 94.8 68.9 79.8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중학교 이하	(88)	94.3	87.5	77.3
여성 (503) 94.4 80.3 83.3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206)	92.7	76.2	75.2
연령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193)	94.8	68.9	79.8
20~29세 (134) 95.5 67.2 82.9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 0	(503)	94.4	80.3	83.3
30~39세 (141) 95.7 85.1 87.9 40~49세 (90) 93.3 91.1 87.8 50~59세 (68) 89.7 82.4 77.9 60세 이상 (70) 95.7 80.0 8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연령				
40~49세(90)93.391.187.850~59세(68)89.782.477.960세 이상(70)95.780.080.0교육수준중학교 이하(165)93.383.080.6고등학교(196)94.981.186.7		(134)	95.5	67.2	82.9
50~59세(68)89.782.477.960세 이상(70)95.780.080.0교육수준중학교 이하(165)93.383.080.6고등학교(196)94.981.186.7		(141)	95.7	85.1	87.9
60세 이상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70)95.780.080.03080.080.0808080.0808080.0808080.0808080.080808080808080<		, ,	93.3		87.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 ·	, ,			
중학교 이하 (165) 93.3 83.0 80.6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70)	95.7	80.0	80.0
고등학교 (196) 94.9 81.1 86.7					
대학 이상 (134) 95.5 78.3 86.6		, ,			
	대학 이상	(134)	95.5	78.3	86.6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가. 夫婦間 家庭暴力의 特徵的 槪念

#### 1) 男便의 婦人에 대한 家庭暴力의 特徵的 槪念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概念을 定立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중 成人을 대상으로 네 종류의 특정행위(4)에 대한 가정폭력 인정여부를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表 4-3>이 보여준다. 남편의 부인에 대한 특징적 학대 및 폭력유형 모두에 대하여 여성의 약 90~98%가 폭력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앞에서 부인을 무식하다고 暴言하는 경우와 친정 및 친정식구를 無視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정폭력임을 매우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言語暴力에 대한 抵抗感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生活費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의 행위에 대하여 남성은 37.9%만이 가정폭력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여성은 90.0%나 인정하고 있어 매우 큰 의견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다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족 내에서 男便이 主扶養者(main breadwinn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남편은 家族員을 扶養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인은 가사일과 가정의 經濟的 管理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故意로 生活費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는 가족원에 대한 扶養忌

<sup>14) 「</sup>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행위를 4가지 특정행위로만 한정한 것은 모든학대 및 폭력유형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행위는 "一般的 暴力類型"으로 분류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임. 또한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행위 중에서 신체적학대에 관해서는 先行研究가 많이 이루어졌고 많은 행위가 「학대 및 폭력」으로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4가지 특정유형은 「부인학대 및 폭력」행위로서 발생빈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타 연구에서는 조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념정립을 위하여 사용하였음.

避이며, 부인에 대한 暴力行爲로 볼 수 있다.

〈表 4-3〉 家庭暴力被害者의「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단위: %)

	(응답자수) -	가정폭력	부피해자
'구인에 대한 역대 옷 즉력』의 규정	(궁답사구) -	남성	여성
부부공동 재산을 부인허락 없이 임의로	(188)	96.4	90.0
처분하는 남편행위			
자녀앞에서 부인이 무식하다는 등의 폭언을	(189)	93.1	98.1
하는 남편행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행위	(189)	37.9	90.0
부인의 친정이나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남편	(190)	86.7	95.6
행위			

資料: 본 연구의「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그러나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를 가정폭력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행위가 부인에 대한 남편의 '의도적' 행위인지의 여부이다. 즉, 남편의 경제적 수입이 가족원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에 있을 때에만 가정폭력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며, 대량실 업사태가 지속되고 소득격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남 편의 실직으로 본인의 의도한 바와는 상반되게 어쩔 수 없이 생활비 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때에는 폭력행위로서 볼 수 없을 것이다.

#### 2) 婦人의 男便에 대한 家庭暴力의 特徵的 槪念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 은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용어이 다. 이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지만 부인이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감히 생각을 하 지 못하는 가부장제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권단체에서 주로 하였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인학대가 가정폭력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불황과 대량실업사태, 그리고 여성의 經濟的 基盤의 强化와 性開放 風潮가 만연되면서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남편, 이기주의적인 여성, 여성의 개인적 품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남편에 대한 「부인의 학대 및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한 국내문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외국문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즉, 신체적 폭력은 당연히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외에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특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유형의 폭력유형을 제시하고 성인 남성 및 여성에게 질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表 4-4>에서 볼 수 있다. 조사결과 이들 모든 유형에 대하여 남성은 약 93~98%가 폭력행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정폭력으로인정하였는데, 특히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가장 낮은 75.6%만이 남편학대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남편은 무려 96.6%나 높은 폭력인정률을 보였다.

<表 4-3>과 <表 4-4>의 배우자의 식구를 무시하는 언행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본인의 본가식구를 무시하는 행위는 남성이 96.6%, 여성은 95.6%가 폭력행위임을 인정하였으나, 처가 및 시집식구를 무시하는 행위는 남성 86.7%, 여성 85.0%가 폭력행위로 보고 있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적극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表 4-4〉 家庭暴力被害者의「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단위: %)

			( 11. 70)
 「남편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의 유형		가정폭력	격피해자
급원에 대한 막대 옷 딱닥1러 ㅠ엉	(중합시구)	남성	여성
시집식구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하는 부인 행위	(189)	96.6	85.0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인행위	(189)	96.6	93.8
남편수입이 자기수입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 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부인행위	(189)	96.6	86.3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하는 부인행위	(189)	93.1	93.8
실직남편에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부인 행위	(189)	96.6	89.4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부인행위	(189)	96.6	75.6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나. 兒童에 대한 家庭暴力의 特徵的 概念

아동폭력이나 虐待는 아동의 訓育을 위해 살짝 때리는 것부터 의도 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 광범위하고 사회마다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概念은 다양하기 때문에「아동학대 및 폭력」의 개념을 정 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극에 달한 사회에 서는 자녀에 대한 훈육차원의 가벼운 체벌까지 아동학대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논의의 초점이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시대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리한다.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이때 아 동학대의 개념은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용이하고 과학적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보호의 부작위로 인한 방임과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sup>1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및 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성적 학대로 구분하였으며, 학대유형에 따라 신체적 폭력 12개 항목, 정서적 학대 9개 항목, 방임 10개 항목, 그리고 성적 학대 7개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16)

#### 1) 身體的 暴力

신체적 폭력은 12개 항목으로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

<sup>15)</sup>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광의적 의미는 서구에서는 Fontans(1971), Kadushin (1974), Gil(1979) 등이, 우리 나라에서는 신영화(1986), 이소희(1990), 고성혜(1992) 등이 제시하고 있음. Fontans(1971)는 부당한 아동취급이라는 개념에 정서적 박탈, 태만, 영양부족 등을 포함시켰으며, Kadushin(1974)은 신체적 학대, 영양불량, 필 수적인 의료보호의 거부, 학교를 규칙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 착취, 과로, 불건 전하고 퇴폐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 등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보 았음. Gil(1979)은 아동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도적· 비우연적 힘의 사용을 아동학대로 정의하였으며, 1981년에는 아동의 평등한 권리 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의 조건 및 개 인, 제도, 사회의 그러한 행위나 태만을 아동학대의 개념으로 정의함. 신영화 (1986)의 경우는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성인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 는 적극적 행위로 보았으며, 이소희(1990)는 생태학적 접근에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주변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였음. 또한 고성혜(1992)는 교사와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 로 합의된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행위자의 의도나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될 수 없어도 주양육자의 행동결과 아동이 분명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와 아동이 받는 상처가 명시되지 않아도 아동에게 신체 적·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모의 행동과 폭언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고 하여 비교적 광법위하게 규정하는 것임(연진영, 1992; 한국이웃사랑회, 1998에서 재인용).

<sup>16)</sup> 본 조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항은 한국이웃사랑회(1998) 및 연진영(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참고한 것임.

덩이 등을 때리는 가벼운 구타에서부터 흉기로 위협하거나 뾰족한 도 구로 찌르는 등의 심각한 폭력까지 취급하였다. 이들 모든 학대유형 에 대하여 폭력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성인이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 다. 즉,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인이 가정폭력으로 인정하 였으며, 단지 '손 또는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만은 성인의 59.0%만이 폭력으로 보고 있었다.

〈表 4-5〉 家庭暴力被害者의 身體的「兒童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단위: %)

		가정폭력피해자		
신체적「아동학대 및 폭력」의 유형	(응답자수) -	성인	아동	
손 또는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231)	59.0	47.1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	, ,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위	(231)	96.3	71.4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231)	87.6	42.9	
발로 차거나 깨무는 행위	(231)	96.9	70.0	
빗자루나 굵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231)	98.8	78.6	
혁대로 때리는 행위	(231)	96.9	75.7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	(231)	98.8	62.9	
몸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231)	98.1	65.7	
팔이나 다리를 묶는 행위	(231)	96.3	78.6	
다락방, 목욕탕, 장롱속에 가두는 행위	(231)	96.3	64.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231)	98.8	81.4	
핀,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는 행위	(231)	96.3	81.4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그러나 아동은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와 '핀,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는 행위'는 비교적 높은 폭력인정률(81.4%)을 보였으나, 그 이외에는 80% 이하에서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꼬집거 나 할퀴는 행위'는 단지 42.9%만이 폭력이라고 하여 가장 낮은 폭력 인정률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들은 비교적 낮은 폭력인정률을 나타내

는 가벼운 신체적 폭력을 부모의 훈육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情緒的 虐待17)

정서적 학대는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행동이나 언어사용으로 인해 아동이 분명한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 또는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행동과 폭언으로써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행위이다(고성혜, 1992). 본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측면의 가정폭력을 설정하기 위해 <表 4-6>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9개 항목에 대하여 가정폭력 회해자인 성인 및 아동에게 질문을 하였다.

9개 항목 모두 성인이 아동보다 높은 폭력인정률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신체적 폭력의 경우와 유사한 추세이다. 그런데, 성인의 입장에서는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는 77.5%가 폭력으로 인정하여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하라'고 하는 표현도 82.5%의 폭력인정률을 보였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가장 낮은 폭력인정률(48.6%)을 보였으며,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도 비 교적 낮은 인정률(52.9%)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부모가 아동에 대하여 의도 적으로 행하는 것인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반 복적인지 아니면 아동이 말썽을 피울 때 훈육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발 생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up>17)</sup> 연구자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언어적 학대로 분류하기도 함(연진영, 1992).

〈表 4-6〉 家庭暴力被害者의 情緒的「兒童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단위: %)

		,	( = 11. /3)
 정서적「아동학대 및 폭력」의 유형	(응답자수)	가정폭력	벽피해자
경시적 아동막대 못 녹락 의 ㅠ영	(공립사구)	성인	아동
꼴도 보기 싫다거나, 병신, 이 원수야 등의	(230)	92.5	62.9
욕설을 하는 행위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하라고 하는 행위	(230)	82.5	58.6
우리 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는 행위	(230)	92.5	62.9
나가 죽어라 또는 갖다 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230)	96.9	74.3
말을 하는 행위			
좋아하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230)	88.8	48.6
걸려온 친구전화에 대해 욕을 하며 끊는 행위	(230)	90.0	57.1
집에서 쫒아 내는 행위	(230)	91.9	71.4
울지 못하게 벼게로 누르는 행위	(230)	93.1	74.3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	(230)	77.5	52.9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3) 放任

放任은 身體的 放任、醫療的 放任、教育的 放任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8). 우선 身體的 放任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 는 것, 더러운 옷이나 추운 방에서 지내도록 방치하는 것, 늦은 귀가 에도 신경쓰지 않는 것 등이며, 醫療的 放任은 몸이 아프다해도 그대 로 방치하는 것 등이다. 또한 敎育的 放任은 학교준비물을 챙겨주지 않거나 학교 숙제를 해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 것,

<sup>18)</sup> 허남순은 방임이란 아동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하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방임과 일반적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심각한 방임은 아동을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고의로 방치하여 음식, 의복, 거주지, 의료적 보호 등을 주지 않는 것이며, 일반적 방임이란 고의적은 아니나 적절한 지도 감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허남순, 1993).

〈表 4-7〉 子女에 대한 特徵的 行爲의 家庭暴力 認定比率

(단위: %)

			(인귀: //)
Orl-기 E 서	/ O rl-il 人\	자녀의 상습적인	자녀의 상습적인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나쁜 행위 방관	학교결석 방관
 전체	(997)	48.7	47.2
연령			
20~29세	(279)	50.2	50.9
30~39세	(281)	54.4	52.0
40~49세	(177)	46.9	46.9
50~59세	(128)	36.7	35.2
60세 이상	(132)	47.0	41.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43.9	41.9
고등학교	(402)	51.5	51.2
대학 이상	(327)	49.5	47.4
남성	(494)	43.1	42.9
연령			
20~29세	(145)	47.6	48.3
30~39세	(140)	46.4	45.7
40~49세	(87)	39.1	42.5
50~59세	(60)	30.0	30.0
60세 이상	(62)	43.5	3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37.5	37.5
고등학교	(206)	44.2	45.6
대학 이상	(193)	45.6	43.5
여성	(503)	54.1	51.5
연령			
20~29세	(134)	53.0	53.7
30~39세	(141)	62.4	58.2
40~49세	(90)	54.4	51.1
50~59세	(68)	42.7	39.7
60세 이상	(70)	50.0	45.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47.3	44.2
고등학교	(196)	59.2	57.1
대학 이상	(134)	55.2	53.0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이유없는 학교결석에도 무관심 한 것,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 가도 모른체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한국이웃사랑회, 1998).

서구사회와는 달리 저연령의 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우 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방임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주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실태 조사」(전화조사』와 「가정폭력피해자조사」(직접면접조사)에서 모두 방 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보았다.

먼저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자녀의 상습적인 나쁜 행위 방관'과 '자녀의 상습적인 학교결석 방관'을 질문한 결과, 각각 48.7%와 47.2% 의 낮은 폭력인정률을 나타내었다. 가정폭력으로 보는 견해는 남성보 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 타나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가정폭력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 으로 추정된다.

〈表 4-8〉 家庭暴力被害者의 放任에 의한 「兒童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단위: %)

 아동에 대한「방임」의 유형	(응답자수) -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에 대한 경급]의 ㅠㅎ	(중합시구) -	성인	아동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음	(230)	78.8	55.7	
늦은 귀가에도 신경쓰지 않음	(230)	73.1	47.1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봄	(230)	71.9	44.3	
더러운 옷, 추운 방에서 지냄	(230)	81.9	64.3	
몸이 아프다 해도 그냥 둠	(231)	87.6	74.3	
학교준비물 챙겨주지 않음	(230)	75.6	58.6	
숙제해가는지 여부 관심없음	(230)	68.8	45.7	
이유없는 학교결석에도 무관심	(231)	80.7	64.3	
어떤 친구사귀는지 관심없음	(231)	78.9	51.4	
몰래 남의 물건, 돈을 가져가도 모른체 함	(228)	86.9	66.2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서는 10개 항목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유형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성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유형의 학대 및 폭력(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폭력인정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아동은 다른 유형의 학대 및 폭력과 유사한 수준에서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부모의 자신에 대한 무관심 등이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폭력에 못지 않는 폭력유형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表 4-8 참조).

#### 4) 性的 虐待

성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추행이다(이용교, 1993). 이는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와 아동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성적 폭행, 그리고 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갖게하는 환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는 성적 노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허남순, 1993).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적학대에 대한 개념을 판단하기 위하여 7 개 항목에 대한 폭력인정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결과는 <表 4-9>와 같다.

아동의 성적 학대 유형 7가지에 대해 대부분의 성인(약 93~96%)은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아동은 성인보다는 낮은 수준(약 6 3~77%)에서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 및 유기 등에 관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성적 학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적극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表 4-9〉 家庭暴力被害者의 性的 兒童虐待別 家庭暴力 認定比率 (단위: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유형	(0.다기스)	가정폭력피해자		
प्राची पार अन्य भ्रमा <b>न</b> मह	(응답자수) -	성인	아동	
어른들이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함	(231)	93.2	62.9	
어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231)	95.0	62.9	
책을 보여 주는 행위				
옷을 억지로 벗기고 몸을 보려는 행위	(231)	95.7	77.1	
몸을 만지는 행위	(231)	96.3	75.7	
어른이 아동에게 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231)	95.0	71.4	
요구함				
어른이 아동의 생식기를 만지는 행위	(231)	94.4	68.6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춤	(231)	95.0	68.6	

資料: 본 연구의「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다. 老人에 대한 家庭暴力의 特徵的 槪念

가정폭력의 개념이 그러하듯이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도 社會·文化 的 特性과 學者의 見解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노인 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주된 문제는 학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Block & Sinnott(1979)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물질적 학 대, 의료적 학대로 분류하였고, Douglas 등(1980)은 수동적 방치, 능동 적 방치, 언어적·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분류하였다. Phillips (1983)와 Tartara(1990)는 개인의 의학적 건강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신 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행위와 자기결정에 따른 개인권 침해, 자기 재 산 또는 소득에 대한 침해, 주위환경과의 안전과 청결을 제대로 해주 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김태현 외, 1997).

또한 King(1986)은 老人虐待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경 제적 착취 등으로 분류하여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폭력이나 육체적 해를 가하는 행위이고,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는 정

신적 고통, 공포 혹은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 폭언, 모욕 등을 말하며, 방임(negligence)은 노인에게 해를 가져오는 義務의 不履行, 無關心, 權利侵害, 經濟的 搾取(financial exploitation)는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횡령하는 것으로 때로는 협박, 폭력, 거짓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일본의 萩原淸子(1994)에 의해 1993년 실시된 전국실태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심리적 장해를 주는 학대, 경제적 학대, 개호 등 일상생활에서의 放置, 拒否, 怠慢을 포함한 방임으로 정의하였다(이해영, 1996).

이러한 老人虐待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身體的 暴力, 情緒的 虐待, 經濟的 搾取, 그리고 放任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扶養拒否와 老人遺棄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해영, 1996). 그러나 간혹 노인에 대한 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도 하지만 강한 家族主義와 孝 思想에 기초한 우리 나라 가족의 삶의 형태상 이는 극소수의 일탈자녀에 의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그 개념 또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家庭暴力實態調査」를 통하여 '노부모·자녀 등 의존적 가족원에 대한 적절한 식사 및 의복 등을 제공 않는 행위'의 폭력인정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表 4-10>에서 잘 나타난다. 즉, 일반국민의 64.2%만이 가정폭력행위로 보고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家庭暴力被害者調査」에서는 21개 항목에 대하여 폭력으로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약 90% 이상의 높은 가정폭력인정률을 보였으며, '노인의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와 '노인에게서 빌린노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만 폭력인정률이 각각79.3%, 83.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었다.

〈表 4-10〉 老人 및 子女에 대한 特徵的 行爲의 家庭暴力 認定比率 (단위: %)

		(2 / 10 / 10)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노부모·자녀 등 의존적 가족원에 대한
중립시 국 %	(중립시구)	적절한 식사 및 의복 등을 제공않는 행위
전체	(997)	64.2
연령		
20~29세	(279)	64.5
30~39세	(281)	68.3
40~49세	(177)	65.0
50~59세	(128)	54.7
60세 이상	(132)	6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3)	56.9
고등학교	(402)	65.4
대학 이상	(327)	69.7
남성	(494)	62.0
연령		
20~29세	(145)	63.4
30~39세	(140)	66.4
40~49세	(87)	59.8
50~59세	(60)	50.0
60세 이상	(62)	6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54.5
고등학교	(206)	60.2
대학 이상	(193)	68.9
여성	(503)	66.4
연령		
20~29세	(134)	65.7
30~39세	(141)	70.2
40~49세	(90)	70.0
50~59세	(68)	58.8
60세 이상	(70)	6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58.2
고등학교	(196)	70.9
대학 이상	(134)	70.9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表 4-11〉 家庭暴力被害者調査에 基礎한「老人虐待 및 暴力」의 類型別 家庭暴力 認定比率<sup>1)</sup>

(단위: %)

			=======================================
		가정폭력	피해자
「노인학대 및 폭력」의 유형	(응답자수)		노인
		(성인)	———
(신체적 학대)			
노인을 강제적으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두는 행위	(161)	95.9	100.0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두는 행위	(161)	96.6	100.0
노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161)	96.6	100.0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161)	97.2	100.0
 (정서적 학대)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방치하는 행위	(161)	95.2	100.0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 으로 표현하는 행위	(161)	92.4	93.8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	(161)	79.3	100.0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161)	93.8	100.0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161)	97.2	100.0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161)	97.2	100.0
노인이 보는 앞에서 뮬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는 행위	(161)	96.6	100.0
노인을 향해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의 거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61)	92.4	100.0
 (경제적 착취)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161)	92.4	100.0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채는 행위	(161)	94.5	100.0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161)	91.0	100.0
노인에게서 빌린 노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161)	83.4	100.0

〈表 4-11〉 계속

	:			
		가정폭력피해자		
「노인학대 및 폭력」의 유형	(응답자수)	비노인	노인	
		(성인)	그긴	
(방임)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161)	91.7	100.0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 하게 대하는 행위	(161)	91.0	93.8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 행위	(161)	91.7	100.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161)	95.2	100.0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161)	93.8	100.0	

註: 1) 가정폭력 아동피해자는 제외하였음.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第4節 韓國 家庭暴力의 概念定立이 주는 示唆點

우리 사회에서 家庭暴力에 대한 觀心은 西歐社會에서와 같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구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 결과 가정폭력은 女性問題로서 여성의 視覺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을 身體的 暴力에 국한한 연구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특성상 加害者는 주로 남성인 남편이며, 被害者는 주로 부인이 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精神的 虐待, 放任 및 遺棄, 財産權 侵害 등으로 넓히면 加害者는 반드시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반드시 역성이 되지는 않는다. 性과 年齡의 구

별없이 전체 가족구성원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다양한 피해대상에 따른 가정폭력의 概念을 定立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이용된 대부분의 폭력유형은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子女의 放任에 의한 虐待類型은 가정폭력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보호하는 社會的 體系의 未備, 자녀에 대한 社會的 危險 要素가 西歐 社會만큼 많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를 가정폭력으로 간주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적극 강구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몽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유형의 '아동학대 및 폭력 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튼 法律上 그리고 國民情緒上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의 對象과 範圍는 매우 광범위하게 認定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국민은 이를 제대로 認識하지 못하고 있어이에 대한 弘報 및 啓蒙이 적극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럼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家庭暴力이라고 느낄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違法行爲로 처벌받기 때문에 최대한 自制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상당히 豫防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第5章 韓國家庭暴力의實態

家庭暴力은 加害者와 被害者에 따라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식이 (노)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친척간의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러나 第3 章(한국에서의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 악한 조사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本 章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반적인 家庭暴力의 實態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정폭력, 즉 가장 전형적인 「남편에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 「아동학대 및 폭력」, 그리고 「자녀의 노인에대한 학대 및 폭력」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第1節 全般的 家庭暴力實態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시점(199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행위를 경험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연구에서 이루어진 Straus에 의해 제시된 신체적 폭력에 의한 측정이 아니라 第4章에서 정립된 가정폭력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 및 폭력, 방임 및 유기 등을 포함한 暴力概念이다.

- ①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 ② 몽둥이·칼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③ 물건을 던지는 행위
- ④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 ⑤ 욕설·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 ⑥ 자녀의 상습적인 나쁜 행위를 방관하는 행위
- ⑦ 자녀의 상습적인 학교결석을 방관하는 행위
- ⑧ 노부모·자녀 등 의존적 가족원에게 적절한 식사나 의복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본 연구결과 우리 나라 전체 가정의 8.7%가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5.6%,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0.6%를 보여 부부폭력을 경험한 가구는 6.2%였다. 부부폭력시 발생하는 중복폭력을 감안하면, 부부폭력은 6.7%로 증가하며, 이는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이 0.6%에서 1.1%로 상승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第3章(한국에서의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夫婦暴力만을 측정한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 구에 비하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第2章(가정폭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것이 지만,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기존의 연구결과는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은 어느 사회에서 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이률 높을까? 다른 사회에 서 보다 한국 가족이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으며, 갈등을 다양 하게 겪고 있기 때문일까? 더군다나 우리의 가족구성원들이 보다 家 父長的이고, 난폭하며, 그리고 자제를 못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 점은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약 1,300만 전체가구 중 8.7%인 113만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重複暴力을 감안한다면 가구수는 동일할 지라도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18.4% 증가191될 것으로 사료된다.

〈表 5-1〉 本 調査結果에 의한 韓國의 家庭暴力發生率

(단위: %)

_						\ _	
_			부부폭력		 - 기타		
	가정폭력발생률	소계	남편 → 부인	남편  부인	가족원간의 폭력	아동 학대	계
	가정폭력발생률 <sup>1)</sup>	6.2	5.6	1.1 <sup>2)</sup>	$1.0^{3)}$	2.64)	8.7

- 註: 1) 전체가구에 대한 가정폭력발생가구의 비율임.
  - 2) 동일한 가구내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발생하는 0.5%가 포함됨.
  - 3) 동일한 가구내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발생하는 0.2%가 포함됨.
- 4) 동일한 가구내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발생하는 0.9%가 포함됨.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第2節 夫婦虐待 및 暴力

우리 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 과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을 비교해 보면, 남편에 의해 발 생되는 가정폭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심각성이 대단한

<sup>19)</sup> 이는 가정폭력경험률 8.7%가 폭력경험가구에서 발생하는 다른 가족원끼리의 폭력을 감안한 중복발생경험률은 10.3%로 증가한 결과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에서 무관심하여 온 「부인의 남편에 대한 학대 및 폭력」도 나타나고 있어 이의 정확한 실태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家口의 家庭暴力實態는 外國의 先行研究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5.6%,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1.1%였으며, 중복하여 발생되는 폭력을 감안하면 부부폭력을 경험한 가구는 6.2%였다. 즉,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이 0.6%에서 1.1%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表 5-1 參照).

## 1.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

Schechter(1988)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家父長制的 文化의 지배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학대라고 하였다. 실제로 많은 국내·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 중에서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5.6%,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1.1%였으며, 중복하여 발생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전체가구의 6.2%에서 부부폭력이 발생되고 있었다(表 5-1 참조). 부부폭력의 대부분은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남편에 의한 부인 학대 및 폭력」은 약 72만 8천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폭력의 유형, 폭력발생이유, 폭력의 빈도, 폭력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자료 중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 

「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서 나타난「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부인의 특성은 <表 5-2>가 잘 보여준다. 모든 연령층에서 그리고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부인학대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우리 가정에 폭력이 보편화되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계층에 따라서 폭력발생이 많이 나타나는 측면을 보였다. 즉, 30~40대 연령층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학 력수준을 가진 계층에서 부인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表 5-2〉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特性: 年齡, 敎育水準

(단위: %)

 특성	가해자(남편)	피해자(부인)	전체
연령			
29세 이하	4.5	15.4	9.9
30~39세	38.5	46.1	42.3
40~49세	37.8	24.4	31.1
50~59세	7.0	4.5	5.8
60세 이상	12.2	9.6	10.9
계(수)	100.0(156)	100.0(156)	100.0(31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9	32.5	31.2
고등학교	51.9	49.3	50.6
대학 이상	18.2	18.2	18.2
계(수)	100.0(154)	100.0(154)	100.0(308)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우리 사회에서 敎育水準은 社會經濟的 地位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指標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부인의 교육수준을 交叉 分析하여 보면, 資源理論에서 주장되는 "남편이 부인보다 社會經濟的 地位가 낮고 資源을 적게 가진 경우 가정폭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견해가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의 피해자는 동일한 학력수준인 부부가 66.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해자인 남편보다 피해자인 부인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는 15.0%, 반대로 낮은 경우는 18.8%로 나타나 학력격차가 있는 부부간의 가정폭력피해자가 33.8%나되었다(表 5-3 參照). 우리 나라에서 남녀결혼은 대부분 동질혼(homogeneous marriage)의 성격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김승권, 1997)를 감안하면 본 조사에서 나타난 학력격차가 있는 부부간의 폭력수준은 대단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현실적으로 부인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가 매우 적기때문에 이들 부부폭력 중에서 「高學力의 婦人-低學力의 男便」간의 폭력이 15.0%나 된다는 것은 資源理論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다시 말해 經濟的 및 社會的 資源을 적게 가진 사람이 不足한 資源의 補充을 위해 또는 資源의 한 手段으로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表 5-3〉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教育水準

(단위: %)

 가해자(남편)	피해자(부인)				
/[에/[급원]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u>21.4</u>	6.5	2.0		
고등학교	10.4	<u>35.1</u>	6.5		
대학 이상	0.6	7.8	<u>9.7</u>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나.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는 어떤 형태의 폭력에 의하여 주로 발생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부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피해자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부부폭력의 구체적 폭력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第4章에서 활용된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表 5-4>에서 나타난다.

〈表 5-4〉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分布

비율 폭력유형 (신체적 폭력) (62.1)물건을 던지는 행위 18.5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2.8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20.6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13.6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6.6 (정서적 학대) (35.3)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24.0 자녀 앞에서 부인이 무식하다는 등의 폭언을 하는 남편행위 2.4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행위 3.9 부인의 친정이나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남편행위 5.0 (기타 폭력) (2.6)

부부공동 재산을 부인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남편행위0.5기타 폭력행위2.1계(수)100.0(617)피해부인 1인이 경험하는 평균 폭력유형수3.7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家庭暴力被害婦人은 본 연구에서 概念化한 暴力類型을 평균 3.7종 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을 당할 경우 여러 가 지 유형의 폭력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다 양한 폭력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피해부인이 겪은 폭력유형 중 身體的 暴力은 62.1%나 되었으며, 情緒的 虐待는 35.3%, 재산과 관련된 폭력 등 기타 폭력은 2.6%로 나타났다. Straus에 의한 가벼운 신체적 폭력은 21.3%였으며,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40.8%를 보여 폭력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폭력 중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에 의한 정서적 학대는 24.0%로 전체 폭력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이 이외에도 '친정이나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행위'(5.0%),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3.9%), 그리고 '자녀앞에서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2.4%) 등의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 다.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여기서는 이와 같은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이 얼마나 자주 발생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頻度의 분포를 파악하기위해 6가지로 세분화하였다. 거의 매일 발생되는 경우, 每 週·月·分期·年 약 2~3회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이들 보다 적게 발생되는 경우등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가 월 2~3회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27.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24.8%나 되었으며, 주 2~3회 발생도 13.9%였다. 따라서 거의 매월 남편에 의하여 학대를 받는 부인은 66.6%나 되었으며, 이에 분기 2~3회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11.5%)를 일부 포함할 경우 피해여성의 약 70% 이상이 每月 학대받는 것으로 추정된다(表 5-5 참조).

〈表 5-5〉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빈도	거의 매일	주 2~3회	월 2~3회	분기 2~3회	연 2~3회	기타	계(수)
비율	24.8	13.9	27.9	11.5	20.6	1.2	100.0(165)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라.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

가정폭력에 관한 제 이론을 검토하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背景을 살펴보았다(第2章 참조). 그러나 發生原因을 特定理論에 의하여 糾明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이론에 의한 複合的 要因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社會環境的 및 時代的 與件에 따라 변화됨을 이미밝혔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남편이 부인을 虐待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특별한 이유없이 남편이 학대 및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4.2%였으며, 95.8%는 남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남편은 평균 2.1종류의 폭력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부인학대가 複合的 原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편에 의해 학대받은 부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술버릇'이 29.0%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문제'(16.5%), '남편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12.0%), 그리고 '부부간 성격차이'(10.8%) 등도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 및 폭력이유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남편의 오해, 의처증, 사소한 말다툼에 의한 확대, 시댁문제, 남편의이성문제에 의한 다툼의 확대, 상호이해부족 등도 있었으며, 특별한이유없이 학대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表 5-6 참조).

〈表 5-6〉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理由

	( = 11 /-)
 폭력이유 유무 및 유형	비율
폭력이유 유무	
이유없음	4.2
이유있음	95.8
계(수)	100.0(168)
폭력이유 유형 <sup>1)</sup>	
가해자의 오해	4.8
피해자의 잘못	0.6
성격차이	10.8
술버릇	29.0
경제적 문제	16.5
가해자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12.0
사소한 말다툼	4.2
의처증	4.8
가해자의 이성문제	3.6
시댁문제	4.2
상호이해부족	3.0
기타 <sup>2)</sup>	6.6
계(수)	100.0(334)
가해남편 1인당 평균 폭력이유수	2.1

註: 1) 폭력이유 있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이러한 결과는 精神病理學的 理論에서 설명되듯이 가해자인 남편의 개인적 이유에 의한 부인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부족한 자원에 의한 폭력도 제법 나타나 자원이론에 근거한 가정폭력발생도 강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政策이 필요함을 示唆하는 것이다.

<sup>2)</sup> 기타는 다른 가족의 잘못, 사회적 이유, 시댁문제, 자녀문제, 스트레스 등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마.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 發生時 被害者의 對應

남편의 학대 및 폭력이 발생할 당시에 많은 부인은 끝까지 참고 일 방적으로 당하거나(63.0%) 무조건 비는 경우(0.5%)도 있어 많은 부인이 폭력에 매우 受動的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안·밖으로 무조건 피하는 다소 能動的인 경우(22.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6.8%)하는 매우 能動的인 행동을 보이는 피해부인도 제법 있었다. 또한 폭력을 가하는 남편에게 함께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우 (7.3%)도 있었다(表 5-7 참조).

〈表 5-7〉 男便에 의해 虐待받는 婦人의 對應方法

(단위: %)

대응방법	끝까지 참음	무조건 빔	무조건 피함	주위의 도움요청	함께 폭력행사	계(수)
비율	63.0	0.5	22.4	6.8	7.3	100.0(168)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많은 부인이 남편의 학대 및 폭력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러면 이들 부인은 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참는다고 한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이 '무서워서' 19.9%,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9.9%로 폭력에 굴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때문'(12.1%),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해서'(11.3%) 등도 다소 있었다(表 5-8 참조).

많은 부인은 남편이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할 경우 다른 장소로 피한 다고 응답하였는데, 피하는 장소는 <表 5-9>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表 5-8〉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 當時 婦人이 참는 理由<sup>1)</sup> (단위: %)

							( - 11 / / /
	무서 워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자녀 때문	창피해서/ 자존심상해서	기타	계(수)
비율	19.9	43.3	9.9	12.1	11.3	3.5	100.0(141)

註: 1) 폭력발생시 끝까지 참는다고 응답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이들이 피하는 장소는 일정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갈곳없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9.5%나 되어 창피해서 친구 및 친척에게 갈 수 없거나 도움을 요청할 적당한 기관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안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경우도 14.0%나 되어 매우 수동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나 되었다.

〈表 5-9〉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當時 避하는 場所<sup>1)</sup> (단위·%)

							( = 11. 70)	,
피하는 장소	갈곳 없어 배회	집안에서 피함	이웃 및 친구	친정 식구	시집 식구	기타	계(수)	
비율	39.5	14.0	25.6	4.7	9.3	6.9	100.0(43)	

註: 1) 폭력발생시 무조건 피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이웃 및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25.6%로 높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친정식구의 집으로 피하는 경우(4.7%)가 시집식구의 집으로 피하는 경우(9.3%)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친정식구에게 본인의 초라한 모습 을 보이고 싶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판단된다.

## 바.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으로 인한 被害者의 症狀

남편에 의해 身體的 暴力 및 精神的 虐待 등을 받은 부인은 다양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苦痛을 크게 身體的 症狀과 精神的 症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구체적인症狀은 <表 5-10>과 <表 5-11>에서 잘 나타난다.

〈表 5-10〉「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身體的 症狀

(단위: %)

	( = 11. 70)
신체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비율
신체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10.1
증상있음	89.9
계(수)	100.0(168)
신체적 증상 유형 <sup>1)</sup>	
두통	15.0
가벼운 상처, 타박상	42.7
속병, 위장병, 울화병	2.6
머리, 눈, 입 등이 찢어짐	1.5
골절상	17.2
고막이상, 치아손상	7.9
실명 등 중상	6.4
실어증	0.7
허리디스크	0.7
기타	5.2
계(수)	100.0(267)
피해부인 1인당 평균 신체적 증상수	1.8

註: 1) 신체적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폭력을 당한 부인이 어떠한 신체적 증상도 갖지 않는 경우는 10.1%에 불과하였으며, 1명의 피해부인이 경험한 신체적 증상은 평균 1.8종류였다. 가장 많은 신체적 증상은 '가벼운 상처 및 타박상'으로 42.7%

였다. 그런데 폭력의 결과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골절상(17.2%), 고막 이상 및 치아손상(7.9%), 실명(6.4%), 실어증(0.7%), 그리고 허리디스크 (0.7%) 등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피해부인은 신체적 고통 못지 않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 었다. 피해부인은 평균 2.8종류의 精神的 症狀을 보였다. 가장 많은 증상은 23.0%를 차지한 '남편과의 離婚'을 원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어서 가정폭력이 家族解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특히 폭력의 결과 남편을 죽이고 싶거나(15.1%) 본인이 죽고 싶은 경우(6.8%)도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表 5-11 참조).

〈表 5-11〉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精神的 症狀

(단위: %)

 정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비율
	비 필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5.5
증상있음	94.5
계(수)	100.0(165)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무력감, 자아상실, 의욕상실	15.1
불안 및 우울증	16.9
대인기피증	8.6
이혼을 원함	23.0
남편을 죽이고 싶은 생각	15.1
죽고 싶은 생각	6.8
기타	14.5
계(수)	100.0(443)
피해부인 1인당 평균 정신적 증상수	2.8

註: 1) 정신적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 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2.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

부부폭력은 부인에 대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부인에 의해 남편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부인이 맞대응하기도 하는 폭력도 있었다.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전체 가구 중「부인의 남편학대 및 폭력」의 발생은 1.1%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인학대 및 폭력」등 다른 유형의 폭력에 대한부인의 맞대응은 0.5%였다(表 5-1 참조). 이는 우리 나라 전체가구의약 14만 3천가구에서「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폭력유형, 폭력발생이유, 폭력의 빈도, 폭력발생시 피해자의 대 응,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자료 중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남편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 가.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人口· 社會的 特性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가해자인 부인과 피해자인 남편의 특성은 <表 5-12>에서 잘 나타난다. 모든 연령층에서 그리고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남편학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남편에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40대 연령층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계층의 부인들이 남편에 대한학대 및 폭력을 비교적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表 5-12〉「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特性: 年齡, 敎育水準

			( = 1,1 1 )
<del></del> 특성	가해자(부인)	피해자(남편)	전체
연령			
29세 이하	10.5	5.3	7.9
30~39세	36.8	28.9	32.9
40~49세	47.4	50.0	48.7
50~59세	5.3	15.8	10.5
60세 이상	-	-	-
계(수)	100.0(38)	100.0(38)	100.0(7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2	10.8	13.5
고등학교	64.9	54.1	59.5
대학 이상	18.9	35.1	27.0
계(수)	100.0(37)	100.0(37)	100.0(74)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유사한 학력수준에 있는 남녀에 의한 결혼이 많은 관계로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동일한 학력수준인 부부가 70.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해자인 부인보다 피해자인 남편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는 27.0%, 반대로 낮은 경우는 5.4%로 나타나 학력격차가 있는 부부간의 가정폭력피해자가 32.4%나 되었다(表 5-13 참조).

특히 「低學力의 婦人-高學力의 男便」간의 폭력이 27.0%나 되었다는 것은 資源理論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낮은 社會·經濟的地位를 가진 부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表 5-3>의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폭력」의 경우 피해자인 부인보다 낮은 학력수준에 있는 가해자인 남편이 15.0%였던 점을 보면, 부부간의 폭력발생은 남편의 학력이 부인

보다 낮은 경우보다 부인의 학력이 남편보다 낮은 경우에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表 5-13〉「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教育水準

(단위: %)

 가해자(부인)	-	피해자(남편)	
/[에사(十七)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u>8.1</u>	8.1	-
고등학교	2.7	<u>43.3</u>	18.9
대학 이상	-	2.7	<u>16.2</u>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나.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類型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어떤 유형의 학대 및 폭력을 당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 폭력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第4章에서 활용된 개념을 사용하였다. 부인에 의해 경험하는 家庭暴力被害男便은 본 연구에서 暴力模型으로 概念化한 類型을 평균 3.3종류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 및 폭력의 유형을 身體的 暴力과 情緒的 虐待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52.8%, 정서적 학대는 47.3%로 나타났다. 이를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 의 유형(신체적 폭력 62.1%, 정서적학대 35.3%)과 비교하면, 신체적 폭력이 9.3' 퍼센트, 포인트 낮았으며, 반대로 정서적학대는 12.0' 퍼센트, 포인트 높았다. 따라서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 은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 의 경우보다정서적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腕力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인이 남편에게 '物理的暴力」

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5-14〉「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分布

	(단위: %)
 폭력유형	비율
 (신체적 폭력)	(52.8)
물건을 던지는 행위	18.9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18.9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하는 부인행위	4.7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5.5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3.2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1.6
 (정서적 학대)	(47.3)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23.6
시집식구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하는 부인행위	2.4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인행위	3.2
남편수입이 자기수입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부인행위	0.8
실직남편에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부인행위	4.7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부인행위	12.6
계(수)	100.0(127)
피해남편 1인이 경험하는 평균 폭력유형수	3.3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전체 피해남편이 겪은 폭력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23.6%)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18.9%),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18.9%), 그리고 '부인의 무관심으로 남편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 행위'(12.6%)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남편도 10.3%나 있었다.

이 외에도 '시집식구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하는 행위', '음주, 외

박, 가출 등으로 남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남편수입이 자기수입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그리고 '실직남편에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행위' 등도 다소 발생하였다.

## 다.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부인은 남편에게 얼마나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家庭暴力被害者調査」資料에 기초한 被害男便의 주장에 의하면, 월 2~3회 학대 및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25.7%나 되었으며, 주 2~3회 발생은 5.7%였다. 따라서 거의 매월 부인에 의하여 학대 및 폭력을 받는 남편은 62.8%나 되었으며, 이에 분기 2~3회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14.3%)를 일부 포함할 경우 피해남편의 약 70%가 每月 부인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表 5-15 참조). 이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발생빈도와 유사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表 5-15〉「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단위: %)

빈도	거의 매일	주 2~3회	월 2~3회	분기 2~3회	연 2~3회	기타	계(수)
비율	25.7	5.7	31.4	14.3	22.9	-	100.0(35)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라.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

이러한 유형의 학대 및 폭력이 특별한 이유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하였으며, 평균 약 1.2종류의 폭력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학대 및 폭력이유는 부인에 대한 남편의 학대 및 폭력이유(2.1종류)보다 단순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다(表 5-6 참조).

부인에 의해 학대받은 피해남편에 의하면, 부인이 학대 및 폭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의 성격차이'(25.6%)였으며, '경제적 문제' (20.9%)와 '가해자인 부인의 이성문제'(14.0%)도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부인의 남편에 대한 오해', '부인의 술버릇', '부인자신의 잘못',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부인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등도 부인이 남편에게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였다(表 5-16 참조).

특히 '加害者인 婦人의 異性問題'가 폭력이유로 나타난 것은 부인이 남자문제로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하는 경우로 이해된다.<sup>20)</sup> 그런데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의 발생이유에서는 남편의 이성문제로 인한 폭력은 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기혼여성의 이성문제는 여성 스스로 가족해체를 원하게 하는 한 요인임을 짐작케 한다.

부인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유로는 '술버릇'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29.0%), 남편에 대한 부인의 폭력이유가 '술버릇'인 경우는 9.3%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개인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비록 그 정도는 약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女性飲酒가 가족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측면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sup>20)</sup>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많은 남성이 부인 의 외도로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문제와 자녀양육문제로 부인의 외도를 용서하고 가족생활을 계속하고 싶지만 부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남편 과 자녀를 전혀 보살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였음. 심지어는 남편의 폭력을 유도하여 법적 처벌과 이혼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경우도 제법 있었음.

〈表 5-16〉「婦人에 의한 男便虐待」의 理由

	(11.70)
폭력이유 유무 및 유형	비율
폭력이유 유무	
이유없음	2.8
이유있음	97.2
계(수)	100.0(36)
폭력이유 유형 <sup>1)</sup>	
가해자의 오해	9.3
성격차이	25.6
피해자 잘못	4.7
술버릇	9.3
경제적 문제	20.9
가해자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2.3
사소한 말다툼	4.7
가해자의 이성문제	14.0
기타 <sup>2)</sup>	9.3
계(수)	100.0(43)
가해부인 1인당 평균 폭력이유수	1.2

註: 1) 폭력이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마.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 發生時 被害者의 對應

「부인에 의한 학대 및 폭력」이 발생할 당시에 많은 남편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응은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경우(63.0%)에 비하여는 낮은 것이었다. 그리고 무조건 피하는 경우는 25.5%(「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경우에는 부인의 22.4%가 무조건 피함), 부인에게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22.7%(「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경우에는 부인의 7.3%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함)였다. 또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6.4%)도 다소 있었으나 무조건 부인에게 비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表 5-17 참조).

<sup>2)</sup> 기타는 시댁문제, 자녀문제 등임.

〈表 5-17〉 婦人에 의해 虐待받는 男便의 對應方法

대응방법	함께 폭력행사	무조건 피함	주위의 도움요청	끝까지 참음	무조건 빔	계(명)
비율	22.7	25.5	6.4	40.4	-	100.0(38)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많은 남편이 「부인의 학대 및 폭력」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참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들 남편은 왜 일방적으로 부인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남편의 40.0%가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참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녀때문에'가 25.0%,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해서' 15.0%, '무서워서' 10.0%와 '그 순간만 피하면 되므로'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表 5-18 참조).

이와 같이 「부인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남편의 대응은 「남편의 학대 및 폭력」에 대응하는 부인의 태도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인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해 남편은 '무서워서' 참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자녀 때문에' 또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는 높았다.

〈表 5-18〉 婦人에 의해 虐待받는 男便이 참는 理由1)

(단위: %)

						( = 11. 70)
작는 이유	무서 워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자녀 때문에	창피해서/ 자존심상해서	계(명)
비율	10.0	40.0	10.0	25.0	15.0	100.0(20)

註: 1) 폭력발생시 끝까지 참는다고 응답한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결과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부인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당한 남편의 25.0%는 무조건 피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특별히 갈 곳없이 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을 무조건 피하는 남편의 91.7%가 거리를 배회하였으며, 본인의 집이나 친척집으로 가는 경우는 불과 8.3%에 불과하였다(表 5-19 참조).

그런데 「남편에 의한 부인의 학대 및 폭력」의 경우에 피해여성의 39.5%만이 갈곳없어 배회하고 있었으며, 집안에서 피하거나 이웃 및 친구집에 또는 시집식구에게 가는 경우 등이 48.9%나 되었다. 이를 피해 남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부인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당한 많은 남성은 폭력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남성이 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타인에게 창피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表 5-19》 婦人에 의해 虐待받는 男便이 暴力當時 避하는 場所<sup>1)</sup> (단위: %)

피하는 장소	갈곳 없어 배회	본가	계(명)
비율	91.7	8.3	100.0(12)

註: 1) 폭력발생시 무조건 피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바.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 被害者의 症狀

부인으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당한 남편의 신체적 피해증상은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인에 비하여는 그 증상수가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에 의해 虐待 및 暴力을 당한 남편도 많은 신체적및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남성은 80.0%였으며, 이들은 평균 약 1.0종류의 증상을 나타냈다.

신체적 증상을 보인 피해남성은 가벼운 상처나 타박상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71.4%였으며, 두통을 느끼는 경우는 14.2%였다. 이 외에

도 골절상, 고막이상 및 치아손상, 실명 등의 중상, 머리, 눈, 입 등이 찢어지는 경우도 약간 있었다.

〈表 5-20〉「婦人에 의한 男便虐待」의 身體的 症狀

(단위: %)

	( = 11: 70)
신체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비율
신체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20.0
- 증상있음	80.0
	100.0(35)
신체적 증상 유형 <sup>1)</sup>	
 두통	14.2
가벼운 상처, 타박상	71.4
골절상	3.6
고막이상, 치아손상	3.6
실명 등 중상	3.6
머리, 눈, 입 등이 찢어짐	3.6
계(수)	100.0(28)
피해남편 1인당 평균 신체적 증상수	1.0

註: 1) 신체적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부인에게 당한 학대 및 폭력으로 피해남편의 16.7%는 정신적 증상을 느끼지 않았으며, 83.3%는 다양한 증상이 있었다. 그리고 증상을 느끼는 남성은 평균 1.1종류의 정신적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이는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의 평균 정신적 증상종류(2.8종류)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피해남성의 36.4%가 무력감, 자아상실, 의욕상실 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39.4%나 되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죽고 싶거나, 부인을 죽이고 싶거나, 불안 및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 등도 적으나마 나타났다(表 5-21 참조).

〈表 5-21〉「婦人에 의한 男便虐待」의 精神的 症狀

	( - , )
전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비율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16.7
증상있음	83.3
계(수)	100.0(36)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무력감, 자아상실, 의욕상실	36.4
불안 및 우울증	3.0
대인기피증	3.0
죽을 것 같은 생각	6.1
이혼을 원함	39.4
부인을 죽이고 싶은 생각	3.0
죽고 싶은 생각	9.1
계(수)	100.0(33)
피해남편 1인당 평균 신체적 증상수	1.1

註: 1) 정신적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第3節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

家族關係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갈등의 가능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부부간 그리고 부모-자녀간 외에 다른 가족원간에도 폭력이 발생한다. <表 5-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전체 가구 중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만이 발생하는 가구는 1.0%였으며, 이중에서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등과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는 0.2%가 있었다. 따라서 형제·자매간, 친인·척간 등의 폭력이약 13만 가구에서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에서 폭력의 유형, 폭력발생이유, 폭력의 빈도, 그리고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 가.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類型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의 피해자는 평균 11.9종류의 매우다양한 학대 및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은 69.4%로 매우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는 24.7%였다. 그리고 적으나마성적학대와 재산과 관련된 폭력도 다소 있었다.

〈表 5-22〉 其他 家族員間의 暴力類型 分布

(단위: %)

	(단기: 70)
 폭력유형	비율
 (신체적 폭력)	(69.4)
물건을 던지는 행위	12.5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3.1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위	11.5
발로 차거나 깨무는 행위	5.3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20.1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7.0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1.9
기타 신체적 폭력	8.0
 (정서적 학대)	(24.7)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위	24.1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0.6
 (성적학대)	(1.6)
성적 학대와 유사한 행위	1.6
(기타 폭력)	(4.3)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	0.2
기타	4.1
—————————————————————————————————————	100.0(416)
피해자 1인이 경험하는 평균 폭력유형수	11.9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전체 피해자가 겪은 폭력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위'가 2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얼굴, 머리 뺨등을 때리는 행위' 등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폭력유형이었다. 이 외에도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발로차거나 깨무는 행위',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성적학대',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 나.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은 얼마나 자주 발생되는가를 「家庭暴力被害者調査」資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연 2~3회 학대 및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월 2~3회가 22.9%, 그리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는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表 5-23 참조).

〈表 5-23〉「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단위: %)

빈도	거의 매일	주 2~3회	월 2~3회	분기 2~3회	연 2~3회	기타	계(수)
비율	17.1	8.6	22.9	2.9	28.6	20.0	100.0(35)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다.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

부부 또는 부모·자녀관계가 아닌 형제·자매 등 기타 가족원간에는 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특별한 이유없이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18.9%였으며, 나머지 81.1%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유가 있는 경우의 가해자의 평균 이유수는 8.1종류였다.

가해자가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술버릇'이 가장 높은 36.0%였고, '가해자의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도 11.8%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경제적 문제', '가해자의 오해', '상호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 '성격차이', '학업성적 저하', '가해자의 이성문제' 등 다양하였다(表 5-24 참조).

〈表 5-24〉 其他 家族員間의 暴力理由

(단위: %)

	(211.79)
폭력이유 유무 및 유형	비율
폭력이유 유무	
이유없음	18.9
이유있음	81.1
계(수)	100.0(35)
폭력이유 유형 <sup>1)</sup>	
가해자의 오해	9.2
성격차이	3.1
술버릇	36.0
경제적 문제	9.6
가해자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11.8
상호이해부족	5.3
사소한 말다툼	5.3
학업성적 저하	3.1
가해자의 이성문제	1.3
기타 <sup>2)</sup>	15.4
	100.0(228)
가해자 1인당 평균 폭력이유수	8.1

註: 1) 폭력이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라.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被害者 症狀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sup>2)</sup> 기타에는 다른 가족의 잘못, 사회적 이유, 시댁문제, 자녀문제, 스트레스 등이 있음.

피해자는 68.0%로 다른 학대 및 폭력보다는 낮은 편이었으며,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는 1인당 평균 7.0종류의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었다. 가장 많은 신체적 증상은 '가벼운 상처 및 타박상'(60.9%)이었으며, '두통'(11.8%), '골절상'(11.8%), '실명 등의 중상'(5.9%)도 자주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이었다. 이 외에도 '고막이상 및 치아손상', '심장병', '위장병', 그리고 '머리, 눈, 입 등이 찢어짐'도 적으나마 학대 및 폭력의 결과로 인한 신체적 증상으로 밝혀졌다(表 5-25 참조).

〈表 5-25〉「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에 의한 身體的 症狀

(단위: %)

(인기: //)
비율
32.0
68.0
100.0(35)
11.8
60.9
11.8
1.8
5.9
1.8
1.8
1.8
2.4
100.0(169)
7.0

註: 1) 신체적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81.4%가 정신 적 증상을 느끼고 있었으며, 정신적 증상을 느낀 피해자는 평균 8.1 종류의 증상을 보였다.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불안 및 우울증'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무력감, 자아상실, 의욕상실'(19.5%),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12.1%), '본인이 죽고싶은 생각'(10.0%), 그리고 '대인기피증'(7.4%)도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놀람 및 수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表 5-26 참조).

〈表 5-26〉「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에 의한 精神的 症狀 (단위: %)

	( = 11. 70)
정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비율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18.6
증상있음	81.4
	100.0(35)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무력감, 자아상실, 의욕상실	19.5
죽을 것 같은 생각	3.5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	12.1
죽고 싶다는 생각	10.0
대인기피증	7.4
불안 및 우울증	40.7
	4.3
기타	2.5
계(수)	100.0(231)
피해자 1인당 평균 정신적 증상수	8.1

註: 1) 정신적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第4節 兒童虐待 및 暴力

「兒童虐待 및 暴力」은 1962년 『매맞는 아이 증세』라는 의학박사 캠 프(Kempe)의 보고로 시작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정신의학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홍강의, 1987; 김광일·고복자, 1987). 특히 이는 가부장제가 강한 나라에서 팽배하며, 자녀가 부모의소유물로 여겨지고 아버지가 권위와 힘을 행사함으로써 많이 야기되는 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핵가족화 함에 따라 어린이 양육에 관한 한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기관의 개입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면도 「아동학대 및 폭력」을 조장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및 폭력」은 또한 어린이를 訓育하는데서 비롯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훈육의 한 방편으로 體罰을 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이고 필요하며 장래에 아동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조병은, 1993).

第2章의 가정폭력에 관한 제 이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에게 虐待 및 暴力을 가할 가능성은 家族葛藤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실직, 알콜, 마약 등의 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라고 한다(Straus & Gelles, 1979). 또한 '아동학대 및 폭력」은 아동이 조산이나 미숙아인 경우, 엄마와 아기의 애착형성이 부족한 경우, 신체불구아, 정신지체아, 발달지체아 또는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어딘가 다르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위험이 크다고 하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이들을 虐待하는 경향이 있고 남아보다 여아가 희생당할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traus & Gelles, 1979).

우리 나라 전체가구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만이 발생하는 비율은 2.6%였으며, 이중에는 부부폭력과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 등과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0.9%가 있었다. 따라서 약 33만 8천가구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表 5-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38종류의 학대유형에 기초하여 조사하였 다.<sup>21)</sup> 특히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 그리고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해자의 특성, 폭력유형, 폭력발생이유, 발생빈도, 피해아동의대응, 피해증상, 그리고 가해자인 부모의 성장과정에서의 폭력행위 목격 및 경험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폭력유형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아동학대 및 폭력」의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전체 폭력유형에 의한분포비율을 측정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이 외에도 학대유형을 개별적으로 질문하여 지난 1년 동안 이들 학대 및 폭력유형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는지를 '전혀 발생않음', '거의 발생않음', '가끔 발생함', 그리고 '자주 발생함' 등에 의해 알아보고 가끔 발생한 경우와 자주발생한 경우에 의하여 경험률을 측정하였다.

### 가. 兒童虐待 및 暴力 加害者의 特性

본 조사에서의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의 비율이 94.1%였으며, 이 중 아버지의 비율이 77.5%였다.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비율이 어머니 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타 조사의 경우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폭력경험을 조사한 것이나 본 조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며, 특히어머니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조사에 포함되어 있어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가해자의 특성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80.7%, 여성은 19.3%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 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47.9%, 40대는 41.3%로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이 30~40대의 부모였다.

<sup>21)</sup> 본 조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항은 한국이웃사랑회(1998) 및 연진영(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한 것이다.

〈表 5-27〉 兒童虐待의 加害者別 分布

구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sup>1)</sup>	계
비율	77.5	16.6	5.9	100.0
(수)	(131)	(28)	(10)	(169)

註: 1) 기타에는 조부모, 삼촌, 형제·자매 등이 포함됨.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表 5-28〉「兒童虐待 및 暴力」加害者의 特性

(단위: %)

				(211.70)
<del></del> 특성	아버지	어머니	기타 가족원	<u>전체</u>
연령				
29세 이하	2.3	15.4	22.2	5.4
30∼39세	47.7	61.5	11.1	47.9
40~49세	47.7	23.1	-	41.3
50세 이상	2.3	-	66.7	6.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5	26.3	100.0	33.3
고등학교	54.2	63.2	-	52.8
대학이상	15.3	10.5	-	13.9
결혼상태				
유배우	82.7	67.9	37.5	78.1
무배우	17.3	32.1	62.5	21.9
종교				
없음	69.0	58.3	50.0	66.3
있음	31.0	41.7	50.0	33.7
취업여부				
취업	62.8	46.4	12.5	57.6
비취업	37.2	53.6	87.5	42.4
계(수)	100.0(133)	100.0(28)	100.0(10)	100.0(171)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아버지는 30대와 40대가 각각 47.7%인데 비해 어머니는 30대의 비율이 61.5%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가 52.8%이며, 중학교 이하가 33.3%, 대학이상은 13.9%이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이상이 69.5%이고, 어머니는 73.7%로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 보다 더 높다. 결혼상태는 아버지는 유배우인 경우가 82.7%이고, 어머니는 67.9%로 아버지 보다 무배우율이 더 높은 편이다. 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는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률은 아버지는 62.8%, 어머니는 46.4%이었다.

## 나. 兒童虐待 類型

## 1) 身體的 虐待 및 暴力 經驗率

신체적 학대는 가벼운 구타에서 부터 심한 학대까지 12항목에 의하여 아동이 각 유형에 대해 피해를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손·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피해아동 중 92.6%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를 경험하였으며, 이 중자주 경험한다는 아동도 20.6%나 되었다. 다음은 빗자루나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 80.0%,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우 72.5%, 던진 물건으로 맞은 경우 51.4% 등으로 나타났으며, 팔·다리가 묶인 경험(21.4%)과 다락방이나 장롱 등에 갇히거나(24.3%), 칼이나 흉기로 위협 당한 경우(27.5%)와 같이 심한 신체적 학대는 가벼운 신체적 학대보다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실제로 아동에게 가해진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엿볼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의 경험률을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는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등을 맞은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써 97.0%나 되며, 그 다음은 빗자루나 몽둥이로 맞은 경우 78.8%,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우 71.9%, 던진 물건으로 맞은 경우 57.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다리가 묶이거나 다락방·목욕탕·장롱 등에 갇힌 경험은 각각 24.2%이었고,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한 경우 21.2%, 그리고 뾰족한 도구로 찔린 경우 15.6% 이었다.

여아의 경우도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등을 맞은 경우가 88.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남아보다는 낮은 편이며, 빗자루나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 81.1%로 이는 남아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다음은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우로 73.0%가 경험하였으며, 꼬집히거나 할퀴인 경우와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경험은 각각 48.6%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表 5-29〉 被害兒童의「身體的 虐待 및 暴力」經驗率

(단위: %)

			( = 11 1 )
'신체적 학대 및 폭력 의 유형	남아	여아	전체
손·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97.0	88.6	92.6
엉덩이 등을 맞음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음	71.9	73.0	72.5
꼬집히거나 할퀴임	37.5	48.6	43.5
발로 차이거나 깨물림	50.0	48.6	49.3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음	78.8	81.1	80.0
혁대로 맞음	33.3	37.8	35.7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힘	48.5	48.6	48.6
던진 물건으로 맞음	57.6	45.9	51.4
팔, 다리가 묶임	24.2	18.9	21.4
다락방, 목욕탕, 장롱속에 갇힘	24.2	24.3	24.3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함	21.2	33.3	27.5
핀,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림	15.6	25.0	20.6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2) 情緒的 虐待 및 暴力 經驗率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 또는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행동과 폭언으로써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총 9개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중 조사대상 아동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꼴도 보기 싫다, 병신, 이 원수야' 등의 욕설을 들어 본 것으로 전체의 72.9%나 되었다. 다음으로 경험률이 높은 것은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 라'는 것으로 전체 아동의 53.7%가 경험하였고, '집에서 쫒겨 난 경 험'이 있는 경우도 51.4%나 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47.8%), '나가 죽어라 또는 갖다 버리겠다'(44.9%) 등의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울지못하게 벼게로 누르는 행위'나 '힘든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 등의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각각 24.2%와 29.9%이었다.

정서적 학대에 관한 성별 경험률을 보면 '꼴도 보기싫다, 병신, 이원수야' 등의 욕설을 들은 경우는 남아보다 여아의 경험률이 높았으며(남아: 69.7%, 여아: 75.7%),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의 경우도 남아보다는 여아의 경험률이 높았다(남아: 48.4%, 여아: 58.3%). 또한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는 남아가 37.5%였던데 비해 여아는 51.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중 3개의 항목만이 남아의 경험률이 높고 나머지 6개 항목은 여아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나타나 정서적 학대의 경우 남아보다는 여아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表 5-30〉 被害兒童의「情緒的 虐待 및 暴力」經驗率

			( = 11 /-)
· 정서적 학대 및 폭력 의 유형	남아	여아	<u>전체</u>
꼴도 보기 싫다, 병신, 이 원수야 등의	69.7	75.7	72.9
욕을 함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48.4	58.3	53.7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	48.4	47.2	47.8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37.5	51.4	44.9
좋아하는 물건을 망가뜨림	38.7	35.3	36.9
걸려온 전화를 욕을 하며 끊음	23.3	42.9	33.8
집에서 쫒겨 남	54.5	48.6	51.4
울지 못하게 벼게로 누름	21.9	26.5	24.2
집안 일 강제로 시킴	18.7	40.0	29.9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3) 放任에 의한 虐待 및 暴力

본 조사결과 가정폭력 중「방임」에 속하는 폭력유형 중 아동이 '숙제를 해가는지 관심이 없음'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 경우'는 62.3%, 그리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지 않음'도 6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늦은 귀가에도 신경을 쓰지않는 경우', '몸이 아파도 그냥 둠', '더러운 옷을 입거나 추운 방에서지냄',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음', 그리고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관심없음'도 비교적 높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신체적 방임외에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 다양한 종류의 방임이 나타나고 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및 방관이 매우 높음을알 수 있다.

(表 5-31) 調査對象 兒童의 「放任에 의한 虐待 및 暴力」經驗率 (단위: %)

'방임에 의한 학대 및 폭력 의 유형	남아	여아	<u>전체</u>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음	50.0	47.2	48.5
늦은 귀가에도 신경쓰지 않음	54.5	56.8	55.7
어두워질때까지 혼자 집을 봄	65.6	59.5	62.3
더러운 옷, 추운 방에서 지냄	48.5	52.8	50.7
몸이 아프다 해도 그냥 둠	46.9	55.6	51.5
학교준비물 챙겨주지 않음	62.5	61.1	61.8
숙제해가는지 여부 관심없음	65.6	61.1	63.2
이유없는 학교결석에도 무관심	40.6	25.7	32.8
어떤 친구사귀는지 관심없음	43.3	52.9	47.4
몰래 남의 물건, 돈을 가져가도 모른체 함	41.9	23.5	32.3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성별로는 신체적 방임중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거나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한 경우 등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높았고, 늦은 귀가나 의복 등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는 남아 보다 여아에게서 높았다. 의료적 방임에 있어서도 여아가 높은 경험 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선호도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교육적 방임에 있어서는 친구 를 사귀는 것 외에는 모두 남아가 높은 경험을 하였다.

### 4)被害兒童의「性的 虐待 및 暴力」經驗率

여기서는 아동이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7개 항목에 의하여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보다는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어른들이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14.5%였으며, '어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경우'와 '옷을 억지로 벗기고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경우' 등은 각각 14.1%이었다. 또한 '아동의 몸을 만지려고 한 경우'는 14.3%, '어른이 몸을 만져달라고 한 경우'와 '어른이 억지로 아동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 경우'는 각각 9.2%와 6.2%였다.

성별로는 '어른들이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아의 경험률이 높았고(남아 10.3%, 여아 18.2%), '어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경우'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10.3' 펴센트, 포인트 높았다. '옷을 억지로 벗기고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도 여아의 경험률이 더 높아 남아는 12.9%인데 비해 여아는 15.2%였다. 그 외에도 '몸을 만지려고 한경우', '어른이 몸을 만져달라고 한 경우', '어른이 억지로 아동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경우', 그리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경우' 등은 모두 여아보다 남아가 높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5-32〉 調査對象 兒童의「性的 虐待 및 暴力」經驗率

(단위: %)

		`	. ,
 '성적 학대 및 폭력 의 유형	남아	여아	 전체
어른들이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10.3	18.2	14.5
본적 있음			
어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보여	19.4	9.1	14.1
준적 있음	19.4	9.1	14.1
옷을 억지로 벗기고 몸을 보려고 함	12.9	15.2	14.1
몸을 만지려고 함	20.0	9.1	14.3
어른이 몸을 만져달라고 함	12.9	5.9	9.2
어른이 나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음	6.5	6.1	6.2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함	16.1	12.1	14.1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表 5-33〉「兒童 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別 暴力類型 分布

			(1	- 11. 70)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아동학대 및 폭력」의 유형	부→아돗	모→아동	기타가족→	전체	
			्र क		
(신체적 폭력)	(59.7)	, ,	(48.3)	(56.5)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12.5	14.6	14.5	13.3	
등을 맞음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음	10.2	10.1	6.5	9.1	
꼬집히거나 할퀴임	4.3	5.7	4.8	4.8	
발로 차이거나 깨물림	4.6	4.4	3.2	4.4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음	10.6	9.5	11.3	10.3	
혁대로 맞음	2.0	1.9	1.6	1.7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힘	5.9	3.8	3.2	5.0	
던진 물건으로 맞음	5.9	3.8	3.2	4.8	
팔, 다리가 묶임	0.7	-	-	0.4	
다락방, 목욕탕, 장롱 속에 갇힘	1.0	0.6	-	0.8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함	1.3	2.5	-	1.5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림	0.7	-	-	0.4	
(정서적 학대)	(17.0)	(19.7)	(22.6)	(20.0)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이 원	6.6	7.0	11.3	7.6	
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함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4.0	3.2	-	3.6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	0.7	1.9	6.5	1.9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0.7	1.9	4.8	1.7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0.7	1.3	-	0.8	
걸려온 전화를 욕을 하며 끊음	0.7	1.9	-	1.1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쫒겨남	3.3	1.9	-	2.9	
울지못하게 베게 등으로 누름	0.3	-	-	0.2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킴	-	0.6	-	0.2	
(방임)	(19.8)	(22.1)	(27.3)	(21.0)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 않음	1.7	1.9	4.8	2.1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음	2.3	1.9	1.6	2.1	
어두워질 까지 혼자 집을 봄	3.6	5.7	1.6	3.8	

〈表 5-33〉 계속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아동학대 및 폭력」의 유형	ᆸᇲ	· 모→아동	기타가족→	전체
	7-013	도→아궁	아동	
더러운 옷 추운 방에서 지냄	1.7	1.3	3.2	1.7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둠	1.7	0.6	1.6	1.3
학교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음	2.6	3.8	8.1	3.6
숙제를 해가는지 여부 관심없음	3.6	4.4	3.2	3.8
이유없는 학교결석에도 무관심	0.3	-	1.6	0.4
어떤 친구를 사귀든지 관심없음	1.0	1.9	-	1.1
몰래 남의 물건, 돈을 가져가도	1.3	0.6	1.6	1.1
모른체 함				
 (성적 학대)	(3.6)	(1.2)	(1.6)	(2.6)
어른들이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0.7	0.6	1.6	0.8
하는 것을 본 적 있음				
어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0.3	0.6	-	0.2
책을 보여 준적 있음				
옷을 억지로 벗기고 내 몸을 보려고 함	1.0	-	-	0.6
어른이 몸을 만지려고 함	0.3	-	-	0.2
어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져	-	-	-	-
달라고 함				
어른이 나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음	0.3	-	-	0.2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함	1.0	-	-	0.6
계	100.0	100.0	100.0	100.0
(수)	(303)	(158)	(62)	(525)
피해아동 1인이 경험하는 평균 폭력	2.3	5.6	6.2	3.1
유형수	2.3	3.0	0.2	3.1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서「아동학대 및 폭력」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表 5-33>에서 잘 나타난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보면, 신체적폭력이 56.5%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아동에 대한 방임 및 유기는 21.0%, 정서적 학대는 20.0%였으며, 그리고 성적 학대도 2.6%로나타났다. 아버지가 아동에 대한 학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

대가 59.7%, 성적 학대도 3.6%로 모든 가해자 중에서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학대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56.9%, 방임이 22.1%로 나타났으며, 기타 가족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 48.3%, 방임 27.3%, 그리고 정서적 학대 22.6%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중에서는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경우'와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중에서는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이 원수야등과 같은 욕을 들은 경우'와 '학교 그만 두고 집안 일이나 하라는 말을 들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방임의 경우에는 '어두워질 까지 혼자 집을 보는 경우', '숙제를 해가는지 안해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 '학교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적 학대는 많지는 않으나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와 '싫은데도 내 옷을 억지로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었다.

## 다. 兒童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학대 및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11.4%였으며, 나머지 88.6%는 많은 이유에 의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유가 있는 가해자는 평균 4.0종류의 폭력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가해자의 '술버릇'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문제'는 14.5%, '가해자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11.2%, '가해자의 오해' 6.8% 등이었다. 이 외에도 '사소한 말다툼', '상호 이해부족', '피해아동의 잘못' 등도 폭력이유로 제시되었다(表 5-34 참조).

〈表 5-34〉「兒童虐待 및 暴力」의 理由

폭력이유 유무 및 유형	비율
폭력이유 유무	
이유없음	11.4
이유있음	88.6
계(수)	100.0(171)
폭력이유 유형 <sup>I)</sup>	
가해자 오해	6.8
피해자 잘못	3.3
가해자 술버릇	30.1
경제적 문제	14.5
가해자 자격지심, 열등감	11.2
상호이해부족	3.8
사소한 말다툼	4.6
학업성적 저하	1.2
기타 <sup>2)</sup>	24.5
계(수)	100.0(607)
가해자 1인당 평균 폭력이유수	4.0

註: 1) 폭력이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 라. 兒童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아동학대 및 폭력」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월 2~3회가 29.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거의 매일 24.8%, 연 2~3회 18.6%, 주 2~3회가 13.8% 등의 순이었다. 특히「아버지에 의한 학대 및 폭력」은 거의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26.4%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와「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 및 폭력」은 월 2~3회가 높게 나타났다.

<sup>2)</sup> 기타는 다른가족 잘못, 성격차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 등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表 5-35〉「兒童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폭력	격빈도			
가해자 '	거의 매일	주 2~3회	월 2~3회	분기 2~3회	연 2~3회	기타	- 계(수)
부에 의한 학대	26.4	20.0	25.7	11.4	12.9	3.6	100.0(133)
모에 의한 학대	6.3	-	50.0	6.2	31.3	6.2	100.0(28)
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	25.1	11.1	29.6	10.3	21.0	2.9	100.0( 10)
전체	24.8	13.8	29.1	10.5	18.6	3.3	100.0(171)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마. 家庭暴力에 대한 對應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아동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보면, 58.7%가 '끝까지 맞으면서 참는다'고 하였으며,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도 29.7%나 되었다. 그리고 '무조건 빈다'는 경우는 1.3%로 나타나 피해아동의 89.7%가 가족원의 폭력에 消極的으로 對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8.4%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1.3%가 있어 폭력의 심 각성을 엿볼 수 있다.

성별로는 무조건 피하는 경우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비율이었으며, 끝까지 맞으면서 참는 경우는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비율이었다.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의 피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한 결과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특별히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로 42.2%이었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수준이었다(남아: 42.3%, 여아: 42.1%).

〈表 5-36〉「兒童虐待 및 暴力」發生時 被害兒童의 對應方法

성	함께 폭력행사	무조건 피함	주위도움 요청	끝까지 참음	무조건 빈다	기타	계(명)
 남아	1.2	31.3	10.8	54.1	1.2	1.2	100.0(83)
여아	1.4	27.7	5.6	63.9	1.4	-	100.0(72)
전체	1.3	29.7	8.4	58.7	1.3	0.6	100.0(155)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가정폭력 발생시 끝까지 맞으면서 참는 경우 그 이유로는 69.2%가 '무서워서이고', 그 외 대응하면 오히려 '폭력이 심해지므로' 17.6%, '피해자가 잘못하였기 때문' 8.8%, 그리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4.4%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무서워서'는 여아(76.1%)가 남아(62.1%)보다 그 비율이 높고, 피해아동이 잘못해서 참는 경우는 여아(4.3%)보다는 남아(13.3%)가 많았다(表 5-37 참조).

〈表 5-37〉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 發生時 참는 理由<sup>1)</sup>

(단위: %)

참는 이유	남아	여아	전체
무서워서	62.1	76.1	69.2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17.8	17.4	17.6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13.3	4.3	8.8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6.7	2.2	4.4
계(수)	100.0(45)	100.0(46)	100.0(91)

註: 1) 폭력발생시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다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함.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피해아동의 29.7%는 폭력발생시 피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피하는 장소는 '갈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으 며, 이는 남·여아를 불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웃 및 친구집으 로 피하는 경우는 24.4%, 그리고 집안에서 피하는 경우는 22.2%였다. 특히 피해여아의 경우는 교회 및 성당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15.8%였으나 피해남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表 5-38 참조).

〈表 5-38〉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 發生時 피하는 곳1)

(단위: %)

			( - ' ' ' )
피하는 곳	남아	여아	<u>전체</u>
이웃·친구	26.9	21.1	24.4
교회·성당	-	15.8	6.7
갈곳이 없어서 배회함	42.3	42.1	42.2
집안	26.9	15.8	22.2
기타	3.8	5.3	4.4
	100.0(26)	100.0(19)	100.0(45)

註: 1) 폭력발생시 무조건 피한다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함.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전체 피해아동 중 17.2%가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험이 있었으며, 남아보다는 여아가 신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5-39 참조).

〈表 5-39〉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 發生時 申告經驗率<sup>1)</sup>

(단위: %)

성	신고 경험률
남아	10.0
여아	23.5
전체	17.2

註: 1)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함.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바. 兒童虐待 및 暴力의 症狀

「兒童虐待 및 暴力」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신체적 증상은 21.9%가

별 증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78.1%는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였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평균 4.1종류의 증상을 나타내었는데, 가벼운 상처·타박상이 51.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두통 22.5%, 골절상·고막이상·실명 등의 심한 증상은 16.7%로 나타났다. 비록 심한 증상은 그 비율이 낮은 편이나 연약한 아동에게 있어서 신체적 손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表 5-40 참조).

〈表 5-40〉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으로 인한 身體的 症狀

(단위: %)

	( = /// /-)
신체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비율
신체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21.9
증상있음	78.1
계(수)	100.0(171)
신체적 증상 유형 <sup>1)</sup>	
두통으로 머리가 띵함	22.5
가벼운 상처·타박상	51.5
골절상	5.2
고막 및 치아 이상	5.4
실명 등 중상	6.1
기타	9.3
계(수)	100.0(551)
피해아동 1인당 평균 신체적 증상수	4.1

註: 1) 신체적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87.0%로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평균 증상을 보이는 종류도 4.7가지였다. 따라서 피해아동은 신체적 증상보다 정신적 증상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중 '불안·우울·신경쇠약 증세'가 24.1%로 가장 높았고, '자아상실·무력감·삶의 의

욕상실'은 17.4%,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 13.8%, '자살시도, 죽을 생각'은 12.2%로 비교적 많은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말수가 적어지거나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증세',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자주 놀라거나 공포심' 등의 정신적 증세도 있었다(表 5-41 참조).

(表 5-41) 被害兒童의 性別 家庭暴力으로 인한 精神的 症狀 (단위: %)

	(11.70)
정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비율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13.0
증상있음	87.0
계(수)	100.0(171)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자아상실, 무력감, 의욕상실	17.4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5.4
가해자 죽이고 싶음	13.8
불안, 우울, 신경쇠약	24.1
자살시도, 죽을 생각	12.2
말수 적어짐, 사람기피	8.7
자주 놀람, 공포심	1.7
기타 <sup>2)</sup>	16.7
계(수)	100.0(705)
피해아동 1인당 평균 정신적 증상수	4.7

註: 1) 정신적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의료처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18.5%에 이르며, 성별로는 남아(17.6%)보다는 여아 (19.5%)의 경우 의료처치를 받은 비율이 높아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表 5-42 참조).

<sup>2)</sup> 기타에는 불면증, 성격이상, 기억력 감퇴 등이 있음.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表 5-42〉 兒童虐待 및 暴力 發生時 醫療處置 經驗率

성	의료처치 경험률 <sup>1)</sup>
남아	17.6
여아	19.5
전체	18.5

註: 1) 가정폭력 발생건수에 대한 비율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사. 兒童虐待 및 暴力 加害者의 成長時 暴力目擊 및 經驗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부모가 된 후에 자신의 아동을 학대한 다는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이론이 개념화되어 아동학대의 원인과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및 학대부모의 예방을 위한 이론의 배경으로서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동학대는 아동시절의 학대경험 보다는 현재의 고위험요인 즉, 부모의 낮은 자존심, 신경병리, 많은 가족수, 가부장적 권위주의, 아동의 학대유발 성격, 부부갈등, 빈곤, 무직, 알콜중독, 부모교육의 미비, 사회적 소외, 폭력지향적 가치체계 등의 다양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으로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승이 이루어진다고도 한다(김기환, 1995).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에서 가해자의 폭력 목격 및 경험여부를 알아본 결과, 폭력을 목격한 경우가 7.9%, 경험한 경우 1.6%, 목격과 경험을 모두 한 경우는 6.3%로 약 7.9%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성장한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는 18.2%가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10.5%가 폭력을 목격하고 실제경험하였다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表 5-43 참조)

〈表 5-43〉 兒童虐待 加害者의 性別 家庭暴力 目擊 및 經驗與否 (단위: %)

성	목격	경험	목격·경험	모름	계(수)
남자	6.8	2.3	9.1	81.8	100.0(44)
여자	10.5	-	-	89.5	100.0(19)
전체	7.9	1.6	6.3	84.1	100.0(63)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第5節 老人虐待 및 暴力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신체적인건강이나 부양과 관련하여 가족갈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중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48.6%로 노인의 약 1/2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상태이다. 이들 노인들의 특성은 만성유병률이 높고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노후대책의 미비 등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녀나 기타 가족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또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자녀(가족)들의 경우에는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부양을 책임지던 여성가구원의 취업 및 사회활동으로 인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노인들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및 과도한 수발부담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노인학대를 하게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정경희 외, 199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자료를 통해 노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22).

<sup>22)</sup> 본 고에서는 노인학대를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 외에 자녀 및 자녀의 배우 자로 부터의 폭력이나 학대로 정의하였으나 실제 조사결과 자녀 및 자녀의 배우 자로 부터의 학대는 그 수가 극히 적어 노인학대의 실태를 밝히는데는 미흡한 것

### 1. 老人虐待의 實態

우리 나라의 경우 1998년 7월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기는 하였 으나 주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아동학대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으며, 노인학대에 관하여는 아직 사회문제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가 아내폭력이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보다 미진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 외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로 부터의 폭력이나 학대로 정의하였으나 실제 조사결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로부터의 학대는 그 수가 극히 적어 노인학대의 실태를 밝히는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주요한 부문인 「노인학대 및 폭력」을 결코 설명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이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노인학대 및 폭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의 60세 이상 노인 593명을 대상<sup>23)</sup> 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언급코자 한다. 동 조사는 형법상 의 유기죄 및 학대죄의 구성요건을 토대로 하여 8개의 항목을 구성한 후 각 항목에 대하여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구체 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 번 옮기는 행위

으로 나타남.

<sup>23)</sup> 이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중 남자 39.3%, 여자 60.7%였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하가 35.1%, 66~70세 30.4%, 71세 이상이 34.5%이었음. 그리고 교육수준은 68.9%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었고, 중학교 14.7%, 고등학교 이상 16.4%이었음(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②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③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잠자리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거나 분위기를 해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 ④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돈벌이를 강요하는 행위
- ⑤ 2~3일 이상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두는 행위
- ⑥ 집에서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⑦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폭언 및 모욕을 주는 행위
- ⑧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전체 8가지 문항중 가장 경험률이 높은 것은 노인의 부양자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경우로 17.3%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양자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경험으로 17.0%,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 두어진 적이 있는 경우도 14.8%나 되었다.

〈表 5-44〉 老人虐待 類型別 經驗率

(단위: %)

	,
노인학대 유형	<u></u> 경험률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14.6
여러 번 옮기는 행위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17.3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잠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12.6
주지 않거나 분위기를 해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돈벌이를 강요하는 행위	9.9
2~3일 이상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두는 행위	14.8
집에서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9.9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폭언 및 모욕을 주는 행위	17.0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행위	7.5

資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1995.에 의해 재구성하였음.

또한 부양자가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 번 옮긴 적이 있는 노인 도 14.6%였으며, 잠자리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거나 분위기를 해쳐 잠을 자지 못한 적이 있다 12.6%, 돈벌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와 집에서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가 각각 9.9%, 그리고 부양자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가 7.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기 보다는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인 학대 및 방임 등의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나. 老人虐待 및 暴力 發生時 被害老人의 對應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경우 63.7%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그냥 참았으며, 나머지 36.3% 중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22.8%,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화를 낸 경우 12.6%,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0.8%)도 있었다. 신고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신고 이유를 들어본 결과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생각해서'가 39.2%, '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4.4%로 73.6%가 학대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학대의 원인으로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가 53,8%, '상대방의 부도덕'함 20.8%, '전반적인 사회적 풍조 19.2%, '기타' 6.2%로대부분 학대자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피해노인 자신의 문제로 보는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피해자들의 특성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유배우인 경우에, 그리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학대비율이 낮으며, 부양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자립적인 노인들보다 학대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있는 노인들의 경우 다른 가족이나 친척등과 함께 있는 노인들보다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第6節 韓國 家庭暴力實態의 示唆點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가구 중 약 113만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한 가정내에서 중복하여 발생되는 폭력을 감안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가족관계에 의한 폭력유형을 보면,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약 72만 8 천가구에서,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약 14만 3천가구에서, 형제·자매간, 친인·척간 등「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은 약 13만 가구에서, 그리고「아동학대 및 폭력」은 약 33만 8천가구에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약 20만 9천가구에서는 부부, 자녀 등의 가족원에 대한 폭력이 중복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노인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감안한다면 가정폭력의 규모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대 및 폭력의 일반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유기도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도 적으나마 나타났다. 이와 같은다양한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실정에 있었는데, 가장 흔한 신체적 증상은 피해대상에 관계없이 '가벼운 상처 및 타박상'이었다. 그러나 비록 비율은 높지 않으나 실명, 실어증, 고막 및 치아손상 등의 중상을 당한 경우도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가 심각함을 엿보게 한다. 특히 신체적 증상보다 더 관심을 두어야할 것은 정신적 증상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이혼을 원할 뿐만아니라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거나 본인이 죽고 싶은 경우 등 극단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극히 염려된다.

더군다나 부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아이들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는 성차별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심할 것이다. 아동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 부모의 훈육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며, 피해아동은 생계 및 교육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집을 떠나면 수용시설로 가야하는 절박함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로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다른 폭력유형 만큼 많지는 않았으나 피해남성은 다른 피해자에게 못지 않는 심각한면을 보였다. 더군다나 이들 남성을 보호하는 시설이 전무한 우리 나라에서 부인이 가출하거나 가사일을 돌보지 않을 경우 많은 남성은자녀부양문제로 인하여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최근에 정부차 원의 대책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 다. 따라서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전국규모의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인인구의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특성상 신체적, 경제적인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노인학대의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노인학대 및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第6章 家庭暴力 關聯 法制度의 認知 및 態度

# 第1節 家庭暴力關聯 法·制度의 認知

우리 나라에서는 各界各層, 특히 女性界의 각고의 努力에 힘입어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을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그리고 가족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신문이나 TV 등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게 이 법에 의한처벌이 가해졌음을 보도한 적이 있어 국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提高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1.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 認知與否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동 법에 대한 인지율은 78.4%로 나타났으며, 30~40대의 고학력층에서 많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 남성은 30대와 50대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20~40대의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를 보였다.

이러한 인지율은 가정폭력피해대상자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남성피해자는 96.8%로 인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피해자는 이보다 낮은 88.1%를 나타냈다.

〈表 6-1〉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施行의 認知率

		(단위: %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인지율
 전체	(997)	78.4
연령		
20~29세	(279)	78.1
30∼39⅓	(282)	86.5
40~49세	(176)	80.7
50~59세	(128)	78.1
60세 이상	(132)	59.1
교육수준	` '	
중학교 이하	(253)	64.8
고등학교	(402)	82.1
대학 이상	(327)	84.7
남성	(492)	78.5
연령	,	
20~29세	(145)	74.5
30~39세	(140)	83.6
40~49세	(86)	77.9
50~59세	(60)	83.3
60세 이상	(61)	72.1
교육수준	` '	
중학교 이하	(87)	69.0
고등학교	(205)	80.0
대학 이상	(193)	81.9
여성	(504)	78.4
연령	,	
20~29세	(134)	82.1
30~39세	(142)	89.4
40~49세	(90)	83.3
50~59세	(68)	73.5
60세 이상	(71)	47.9
교육수준	` '	
중학교 이하	(166)	62.7
고등학교	(197)	84.3
대학 이상	(134)	88.8
내딱 이ớ	(134)	88.8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피해자조사」가 여성의 경우는 家庭暴力被害者를 위한 保護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에 한하여 조사되었으나 남성피해자는 民間相談機關을 통한 연구진의 피해자에 대한 個別接觸에의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받고 있는 여성피해자의 법 인지율이 낮은 것은 이들 보호시설 관계자의 홍보교육이 미흡하였음을 영보게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남성피해자가 동 법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24 그러나 아동피해자는 불과 39.6%의 인지율을 보여 아동에 대한 홍보 계몽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表 6-2〉 家庭暴力 被害者의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施行 認知率

(단위: %)

인지율 88.1
88.1
96.8
39.6
79.4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2.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 認知經路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알게 된 경로 즉, 누구를 통해서, 또는 무

<sup>24)</sup> 남성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정, 남편 및 자녀부 양기피, 남편재산의 낭비 등 부인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남편은 자녀부양과 직장 등 가족의 삶이 걱정되어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부인은 이혼과 보다 많은 위자료를 위해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많은 남성피해자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소상히 알고 있었음.

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8%가 TV나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알게 된 경우가 4.8%이었고, 이웃·친구 등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는 4.2%의 순이었다.25)

응답자별로는 노인과 남성은 TV와 신문에 의해 동 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비율이 아동이나 여성보다는 높았으며, 아동과 여성은 TV나 신문 외에 보호시설 등에서 인지한 비율이 다른 응답자보다 높았다. 이는 본 조사대상중 아동과 여성의 경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6-3〉 家庭暴力被害 對象者別「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施行 認知經路<sup>1)</sup>

(단위: %)

응답자	이웃·친구	TV·신문	시설	기타	계 (수)
여성피해자	4.5	68.4	23.3	3.8	100.0 (133)
남성피해자	6.6	93.3	-	-	100.0 (30)
아동피해자	5.3	78.9	5.3	10.5	100.0 ( 19)
노인피해자	-	100.0	-	-	100.0 (34)
 전체	4.2	77.8	14.8	3.2	100.0 (216)

註: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관련법 시행여부를 모른다는 89명과 무응답 22명 제외하였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피해무경험자를 포함함.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第2節 家庭暴力 申告에 대한 態度

1998. 7. 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가정폭력에

<sup>25)</sup>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는 방송이 76.9%, 신문·잡지 15.6%, 가족·동료·친구가 5.8%, 그리고 기타 1.7%임. 따라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한 정보입수율은 92.5%나 됨(통계청, 1998).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본인가정과 이웃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살펴보았다.

## 1. 本人家庭의 家庭暴力에 대한 申告與否

「가정폭력실태조사」 응답자의 54.8%는 본인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폭력의 정도가심하고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원하고 비밀보장이 될 경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경우는 8.5%로 63.3%가 본인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경우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경우 (32.3%)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신고의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는 무조건 신고 46.5%, 조건부 신고 7.7%로 전체 54.2%가 신고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은 무조건 신고 63.0%, 조건부 신고 9.2%로 신고의사가 72.2%에 달하였다. 신고할 의사를 가진 계층은 남 녀에 따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연령층 과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경우가 높았으나, 여성은 저연령 층의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인지여부에 따른 신고여부를 보면, 동 법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신고 56.2%, 조건부 신고 8.5%로 64.7% 가 신고의향이 있었다. 또한 동 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무조건 신고 49.5%, 조건부 신고 8.5%로 신고의향이 58.0%를 나타내었다(表 6-5 참조). 따라서 동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계몽은 가정폭력의 신고율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판단된다.

〈表 6-4〉 本人家庭의 暴力發生時 申告與否

							(단위: %)
-	로 무조건 조건부 신고						
응답자 특성		심하		기타 <sup>1)</sup>	신고 않음	모르 겠음	계(수)
	신고	폭력만	상습적 폭력만	조건	ਪਰ ¤	XX 12	
전체	54.8	7.1	0.2	1.2	32.3	4.4	100.0(992)
연령							
20~29세	55.4	7.6	0.7	0.7	30.9	4.7	100.0(278)
30~39세	55.8	5.0	-	1.4	32.0	5.8	100.0(278)
40~49세	48.6	10.2	-	1.7	35.0	4.5	100.0(177)
50~59세	55.5	6.3	-	0.8	33.6	3.9	100.0(128)
60세 이상	59.6	6.9	-	1.5	30.5	1.5	100.0(13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0	7.5	-	2.4	30.6	3.6	100.0(252)
고등학교	54.0	6.7	0.3	0.8	33.8	4.5	100.0(402)
대학 이상	55.6	7.4	0.3	0.9	30.6	5.3	100.0(324)
남성	46.5	6.1	0.4	1.2	41.5	4.3	100.0(492)
연령							
20~29세	40.7	8.3	1.4	1.4	41.4	6.9	100.0(145)
30~39세	46.4	2.9	-	1.5	44.9	4.3	100.0(138)
40~49세	37.9	11.5	-	1.2	44.8	4.6	100.0(87)
50~59세	58.3	-	-	1.7	38.3	1.7	100.0(60)
60세 이상	61.3	6.5	-	-	32.3	-	100.0(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8	5.7	-	1.1	35.2	1.1	100.0(88)
고등학교	42.7	7.3	0.5	1.0	44.7	3.9	100.0(206)
대학 이상	46.1	5.2	0.5	1.6	40.3	6.3	100.0(191)
여성	63.0	8.0	-	1.2	23.2	4.6	100.0(500)
연령							
20~29세	71.4	6.8	_	_	19.6	2.3	100.0(133)
30~39세	65.0	7.1	_	1.4	19.3	7.1	100.0(140)
40~49세	58.9	8.9	_	2.2	25.6	4.4	100.0(90)
50~59세	52.9	11.8	_	_	29.4	5.9	100.0(68)
60세 이상	53.0	7.2	-	2.9	29.0	2.9	100.0(6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5.5	8.5	-	3.1	28.1	4.9	100.0(164)
고등학교	65.8	6.1	-	0.5	22.5	5.1	100.0(196)
대학 이상	69.2	10.5	-	-	16.5	3.8	100.0(133)

註: 1) 기타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表 6-5〉 家庭暴力 關聯法의 認知與否別 本人家庭 暴力의 申告與否 (단위: %)

 가정폭력	무조건	조	건부 신고	-	시고	모르	
관련법의 인지여부	신고함	심한 폭력만	상습적 폭력만	기타 <sup>1)</sup> 조건	신고 않음	고드 겠음	계(수)
인지	56.2	7.1	0.1	1.3	30.8	4.5	100.0(777)
미인지	49.5	7.1	0.5	0.9	37.7	4.3	100.0(212)

註: 1) 기타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임.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본인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되더라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38.3% (남성 41.5%, 여성 23.2%)였다. 그럼 이들은 왜 신고를 꺼리는 것인가? 그 이유를 밝혀 제거하면 신고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본인가정의 폭력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가족내부 문제이기 때문'이 46.4%로 가장 높았다. 그 이외에도 '가족이므로' 7.7%, '대화로 해결하기 원해서' 5.9%, '창피해서' 4.5%가 있었다. 그러나 신고불원의 한 이유로 생각하였던 '경찰의 비협조'는 1.4%에 불과하여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족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남성이 53.6%, 여성 33.8%로 매우 큰격차를 나타내어 남성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2. 이웃家庭의 家庭暴力에 대한 申告與否

「가정폭력실태조사」 응답자의 53.3%는 이웃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원하고 비밀보장이 될 경우에 신고하겠다고 한경우는 12.3%로 65.6%가 이웃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30.4%였다.

〈表 6-6〉 本人家庭의 暴力을 申告하지 않겠다는 理由

							(단위: %)
응답자 특성	가족 이므로	창피 해서	대화해결 을 원함	가족내부 문제임	경찰의 비협조	기타 이유	계(수)
 전체	7.7	4.5	5.9	46.4	1.4	34.1	100.0(220)
연령							
20~29세	11.7	3.3	3.3	45.0	1.7	35.0	100.0(60)
30~39세	4.8	1.6	4.8	46.8	-	41.9	100.0(62)
40~49세	7.0	9.3	9.3	34.9	4.7	34.9	100.0(43)
50~59세	-	6.9	6.9	58.6	-	27.6	100.0(29)
60세 이상	15.4	3.9	7.7	53.9	-	19.2	100.0(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3	5.5	7.3	43.6	-	36.4	100.0(55)
고등학교	9.1	3.4	4.6	47.7	1.1	34.1	100.0(88)
대학 이상	6.7	5.3	6.7	48.0	2.7	30.7	100.0(75)
 남성	7.1	3.6	5.7	53.6	1.4	28.6	100.0(140)
연령							
_ 20~29세	11.6	2.3	4.7	53.5	2.3	25.6	100.0(43)
30~39세	4.8	2.4	2.4	50.0	_	40.5	100.0(42)
40~49세	7.4	11.1	7.4	44.4	3.7	25.9	100.0(27)
50~59세	_	_	6.7	73.3	_	20.0	100.0(15)
60세 이상	7.7	_	15.4	61.5	_	15.4	100.0(13)
교육수준							, ,
중학교 이하	4.4	4.4	8.7	56.5	-	26.1	100.0(23)
고등학교	10.5	3.5	3.5	54.4	1.8	26.3	100.0(57)
대학 이상	5.1	3.4	6.8	52.5	1.7	30.5	100.0(59)
 여성	8.8	6.3	6.3	33.8	1.3	43.8	100.0(80)
연령							
_ 20~29세	11.8	5.9	_	23.5	_	58.8	100.0(17)
30~39세	5.0	_	10.0	40.0	_	45.0	100.0(20)
40~49세	6.3	6.3	12.5	18.8	6.3	50.0	100.0(16)
50~59세	_	14.3	7.1	42.9	_	35.7	100.0(14)
60세 이상	23.1	7.7	_	46.2	_	23.1	100.0(13)
교육수준							` /
중학교 이하	9.4	6.2	6.3	34.4	_	43.7	100.0(32)
고등학교	6.5	3.2	6.5	35.5	_	48.4	100.0(31)
대학 이상	12.5	12.5	6.3	31.3	6.3	31.3	100.0( 16)
	12.5	12.0			0.5	01.0	()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表 6-7〉 이웃家庭의 暴力發生時 申告與否

							(단위: %)
		조건	건부 신고		2]		
응답자 특성	신고함	심한	상습적	기타	신고	모르	계(수)
		폭력만	폭력만	조건	않음	겠음	
 전체	53.3	10.1	0.3	1.9	30.4	4.0	100.0(993)
- · 연령							` ,
20~29세	53.2	8.6	0.7	1.1	30.9	5.4	100.0(278)
30~39세	57.0	8.6	0.4	2.5	28.0	3.6	100.0(279)
40~49세	45.5	11.9	-	2.3	35.2	5.1	100.0(176)
50~59세	57.0	11.7	-	2.3	26.6	2.3	100.0(128)
60세 이상	52.3	12.1	-	1.5	31.8	2.3	100.0(13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5.3	13.0	-	1.6	27.3	2.8	100.0(253)
고등학교	52.1	9.3	0.5	2.8	30.3	5.0	100.0(399)
대학 이상	53.8	9.2	0.3	1.2	31.5	4.0	100.0(327)
 남성	50.5	8.9	0.4	1.6	35,1	3.5	100.0(493)
연령							, ,
20~29세	49.7	9.7	1.4	1.4	34.5	3.5	100.0(145)
30~39세	53.2	5.8	-	0.7	36.7	3.6	100.0(139)
40~49세	43.7	11.5	-	2.3	36.8	5.8	100.0(87)
50~59세	55.0	3.3	-	3.3	35.0	3.3	100.0(60)
60세 이상	51.6	16.1	-	1.6	30.7	-	100.0(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3.4	11.4	-	1.1	31.8	2.3	100.0(88)
고등학교	50.7	8.8	1.0	2.0	33.2	4.4	100.0(205)
대학 이상	49.7	8.3	-	1.6	37.3	3.1	100.0(193)
여성	56.0	11.2	0.2	2.2	25.8	4.6	100.0(500)
연령							, ,
20~29세	57.1	7.5	-	0.8	27.1	7.5	100.0(133)
30~39세	60.7	11.4	0.7	4.3	19.3	3.6	100.0(140)
40~49세	47.2	12.4	-	2.3	33.7	4.5	100.0(89)
50~59세	58.8	19.1	-	1.5	19.1	1.5	100.0(68)
60세 이상	52.9	8.6	-	1.4	32.9	4.3	100.0(70)
교육수준							. ,
중학교 이하	56.4	13.9	-	1.8	24.9	3.0	100.0(165)
고등학교	53.6	9.8	-	3.6	27.3	5.7	100.0(194)
대학 이상	59.7	10.5	0.8	0.8	23.1	5.2	100.0(134)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이와 같은 신고의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는 무조건 신고 50.5%, 조건부 신고 10.9%로 61.4%가 신 고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은 무조건 신고 56.0%, 조건부 신고 13.6%로 신고의사가 69.6%였다. 신고할 의사를 가진 계층을 보면, 남 성은 60대 연령층과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 나, 여성은 30대의 고학력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인지여부에 따른 신고여부를 보면, 동 법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신고 54.1%, 조건부 신고 12.4%로 66.5%가신고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동 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의 신고의향은 이보다 약간 낮았는데, 무조건 신고하겠다는 경우가 50.7%, 조건부신고는 12.2%로 신고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2.9%였다(表 6-8 참조).

〈表 6-8〉 家庭暴力 關聯法의 認知與否別 이웃家庭 暴力의 申告與否 (단위: %)

기정포러 괴러		조건	ປ부 신고		시크	חם	
가정폭력 관련 법의 인지여부	신고함	실한	상습적 폭력만	기타	신고 않음	모르 겠음	계(수)
		폭력만	폭력만	조건	-0 д	<i>77</i> 7 E	
인지	54.1	10.3	0.4	1.7	29.5	4.1	100.0(777)
미인지	50.7	9.4	-	2.8	33.3	3.8	100.0(213)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이웃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되더라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경우, 그이유는 무엇인가? '가족이므로'가 49.3%로 가장 높았으며, '창피해서'는 26.6%였다. 그러나 본인가정의 폭력과는 달리 '가족내부문제이기때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가족이므로'가 53.9%, '창피해서' 26.5%였으며, 여성은 '가족이므로'가 43.3%, '창피해서'는 24.4%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남녀모두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장 높았다.

〈表 6-9〉 이웃 家庭의 暴力을 申告하지 않겠다는 理由

						(단위: %)
응답자 특성	가족 이므로	창피 해서	대화로 해결	경찰의 비협조	기타	계(수)
 전체	49.3	25.6	1.9	0.5	22.7	100.0(207)
연령						, ,
20~29세	50.9	28.1	1.8	-	19.3	100.0(57)
30~39세	34.7	28.6	2.0	_	34.7	100.0(49)
40~49세	45.8	29.2	2.1	2.1	20.8	100.0(48)
50~59세	56.5	30.4	-	_	13.0	100.0(23)
60세 이상	70.0	6.7	3.3	-	20.0	100.0(3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0	26.0	2.0	-	16.0	100.0(50)
고등학교	50.0	25.0	1.2	- 1 F	23.8	100.0(84)
대학 이상	44.9	27.5	1.5	1.5	24.6	100.0(69)
 남성	53.9	26.5	0.9	0.9	18.0	100.0(117)
연령						, ,
20~29세	51.4	28.6	2.9	_	17.1	100.0(35)
30~39세	36.7	36.7	_	_	26.7	100.0(30)
40~49세	60.9	21.7	_	4.4	13.0	100.0(23)
50~59세	60.0	26.7	_	_	13.3	100.0(15)
60세 이상	78.6	7.1	_	_	14.3	100.0(14)
교육수준						` ,
중학교 이하	66.7	19.0	_	_	14.3	100.0(21)
고등학교	53.3	31.1	_	_	15.6	100.0(45)
대학 이상	50.0	27.1	2.1	2.1	18.7	100.0(48)
여성	43.3	24.4	3.3	_	28.9	100.0( 90)
연령						` ,
20~29세	50.0	27.3	_	_	22.7	100.0(22)
30~39세	31.6	15.8	5.3	_	47.4	100.0(19)
40~49세	32.0	36.0	4.0	_	28.0	100.0(25)
50~59세	50.0	37.5	_	_	12.5	100.0(8)
60세 이상	62.5	6.3	6.3	_	25.0	100.0(16)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48.3	31.0	3.5	-	17.2	100.0(29)
고등학교	46.2	17.9	2.6	-	33.3	100.0(39)
대학 이상	33.3	28.6	-	_	38.1	100.0(21)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

# 第3節 家庭暴力 關聯 法制度의 認知 및 態度의 示唆點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의 인지율은 대체로 30~40대의 고학력층에서 높았으며, 전반적인 인지율은 78.4%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되는 저학력층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第4章에서 논의된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와 함께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일반대중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을 통하여 아동에 대하여 가해지는 학대 및 폭력의 유형과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널리 홍보하여 아동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피해아동의 치유를 위한 가족구성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방안으로 TV 드라마,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사례 및 처벌 등에대한 소개가 있으면 보다 효과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인가정이나 이웃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의 신고여부를 보면, 무조건 신고하겠다는 경우도 많았으며, 폭력이 심하거나 상습적인경우 등의 조건부 신고도 다소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을심각한 범죄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가족내부 문제로 보고 신고하지않겠다는 경우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피해당사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충격을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에게 영향을 주고 이는 자녀에게도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수한 성격을 널리 알려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고취시켜야 겠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신 고한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가 있어야 겠 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가족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相談 및 矯正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해자가 가족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第7章 家庭暴力豫防 및 治療方案

# 第1節 家庭暴力의 豫防對策

# 1. 家庭暴力의 概念的 定意에 대한 弘報·啓蒙의 强化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되는가 하는 가정폭력의 범위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행위는 가정폭력임을 약하게 인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가정폭력여부를 판단하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며, 시대적 및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시대와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개념적 정의를 정립하여야겠다. 둘째, 이렇게 개발된 가정폭력의 개념을 적극 홍보·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이 가족문제, 사회문제로서 대단한 위해를 준다는 점을 적극 인식케 하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효과는 가벼운 학대 및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행위가 감소되고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暴力許容的 社會文化規範의 改善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적 환경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불식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관련 제 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폭력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정당화시켜

나간다. 이는 성인이 되어 자기 가족을 가정폭력의 '훈련장'으로 여겨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 가. 家父長的 思考觀念의 拂拭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家父長的 文化의 打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성우위의 사고방식, 여성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의식의 미성숙, 여성을 지배하려는 태도 등을 불식시켜 여성을 인격체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인식케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人間尊重의 價值規範 定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폭력이 추방되고,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의역할이 중요하다. 폭력문화와 성차별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화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이 쉽게 폭력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폭력에 둔감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폭력을 조장하고 인간존중의가치를 저하시키는 대중매체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법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3. 圓滿한 家族關係 維持를 위한 多樣한 技術普及

가정폭력은 家族關係 內에서 발생된다. 즉, 夫婦暴力은 부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兒童虐待 및 暴力은 보호자인 부모와 피보호자인 아동의 관계속에서 발생되며, 노인학대 및 폭력도 자녀와 노부모간의

상호관계에서 야기된다. 따라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원만히 수행나갈 수 있도록 각급 학교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를 상대로교육하는 사회프로그램이 절실하다.

## 가. 圓滿한 夫婦關係 維持를 위한 學校 및 社會敎育의 强化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하여 성숙하고 원만한 家族關係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의 대화기술이 미숙한 부부에게서 갈등 및 폭력이 많다고 하는데, 부부가서로 적응하고 조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사회화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 가족생활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나. 圓滿한 子女養育프로그램의 開發 및 普及

아버지가 가부장적 관념을 강하게 갖고 있거나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경우에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효과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방식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겠다. 이와 같은 자녀양육의 기본원칙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 4. 親族 및 地域社會 關係網의 强化

친족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빈약한 사회적 유대망도 가 정폭력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즉, 가족스트레스가 중 첩되고 스트레스에의 대응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가족이라도 친족이나 지역사회 및 기타 사회적 관계와의 유대가 긴밀한 가족은 家庭暴力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예를 들면, 家庭暴力이 발생하는 가족은 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은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Straus et al., 1980).

가족의 외부사회와의 유대가 家庭暴力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가족의 사회적 유대는 경제적 곤란이나 가족성원간의 불화 등의 스트레스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자원의 공급원이 됨으로써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외부사회와의 유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족은 家庭暴力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사회적 제재가 부재하여 家庭暴力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외부사회와의 유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족은 家庭暴力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사회적 제재가 부재하여 家庭暴力의 반생을 어제시키는 사회적 제재가 부재하여 家庭暴力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Cazenave and Straus, 1979). 그러므로 가족이 親族 및 地域社會와의 紐帶를 强化하여 가정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웃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반상회'의 활성화, '소지역 단위의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第2節 家庭暴力 被害者 保護 및 加害者 對處方案

#### 1. 社會福祉的 對策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회복지적 대책이 긴요하다. 이에는 많

은 방안이 있을 것이나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와 그 과정에서 살펴 본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긴요하다고 판 단된다.

#### 가. 應急保護서비스

가정폭력의 발생시 이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격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지역 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쉼터에는 아동이 함께 기 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쉼터에 있을 동안 원만한 직장생활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나. 醫療서비스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증상은 한 가지만 보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두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 일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부 가정폭력피해자는 심각한 신체 적 및 정신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하는 방 안이 효율적이다.

다. 家庭暴力의 被害者 및 加害者를 위한 효율적 相談서비스의 提供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는 크고 작은 정

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물론 현재 가정폭력상담기관은 제 법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 모든 상담기관이 전 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數的으로 충분하지 도 못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專門相談機關의 충분한 擴充과 專門人力의 養成, 그리고 상담기관의 財政支援이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공공상담기관과 민간상담기관의 업무연계가 긴요하며, 민간상담기관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도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담과정에 가해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가해자의 "相談參與"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이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는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적 증상치료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전문상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측면이 있다면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라. 家庭暴力被害者 家族員을 위한 在家福祉서비스 提供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원 중 보살핌을 원하는 아동, 청소년 등 취약 가족원에 대하여 재가복지서비스가 적극 제공되어야 하겠다.

#### 마. 利用 및 收容施設의 無料利用 提供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원에게 자녀 및 노인을 위한 부양, 탁아 및 육아시설, 노인시설 등 각종 이용시설 및 수용시설을 한시적으로 무 료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조 사에서 많은 남성피해자는 부인의 가출 및 자녀양육 기피로 매우 곤 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이 용이 가능하다면 家族體制를 維持하고 家族解體를 防止하는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 바. 職業敎育 및 就業斡旋 서비스

자원을 충분히 갖지 못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각종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第3節 家庭暴力 關聯 法・行政節次에 대한 擔當者 教育

#### 1. 家庭暴力 關聯 法執行 公務員에 대한 敎育强化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관, 그리고 법조인 등에 대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법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이해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그리고 법집행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실적위주의 가정폭력범죄 단속으로 가해자를 엄격히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상담체제를 이용한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면 반드시 법적 제재가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 라서 가정폭력을 적절히 다루는 技術教育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 2. 家庭暴力 關聯 公務員 및 社會福祉士에 대한 專門敎育 强化

가정폭력 관련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특 히 일선에서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교육이 실시되어야 겠다.

특히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가정폭력 관련 과목을 필수화시켜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社會福祉事業法」의 施行規則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 第8章 結論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주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에 그 초점이 모여져 왔다. 특히 여성계를 중심으로한 「남편의 부인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은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대두케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의 대명사로 취급하게 되었고, 그 유형도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남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부인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그리고 형제·자매와 친척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 국민은 가정폭력의 개념을 신체적인 측면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신적 측면, 방임 및 유기, 재산권행사 방해행위, 성적 학대 등으로 까지 확대하여「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여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실태와 폭력의 결과"에 중점을 둔 시각을 "폭력의 발생원인"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오히려 폭력의 결과보다는 그 발생원인에 보다 관심을 두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社會的 介入과 統制」가 확립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社會的

支援體系」도 확립되어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불식을 위한 "社會文化的 環境造成"이다.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부장적 문화의 타파, 여권신장, 사회적 재산으로서의 자녀관 정착, 노인봉양의 강조 등이 있다.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저소득층의 실직가정에서는 많은 가정폭력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즉, 저소득층의 「실직여성가구주 가족」은 6.6%의 가정폭력경험률을 보였으나,「실직남성가구주 가족」은 2배나 많은 약 13%의 가정폭력경험률을 나타냈다(김승권, 1998②). 이는 기혼남성이 가구 내에 있다는 것이 가정폭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편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인 여성가구주 가족」에서의 가정폭력 발생은 자녀 및 기타 가족원에 의한 폭력도 빈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남편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다른 가족원에 의해서도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동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은 暴力의 轉移에 있다. 즉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더 학대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동의 일탈행동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및 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문제는 현재의 가정폭력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다음 세대에서의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및 폭력에 보다 큰 관심이 요망된다.

아무튼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에 고무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치료 및 제재하며, 그 발생원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의문제제기,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많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단체에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가정으로부터 폭력을 추방하려는 전체 가족구성원의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강은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고신대학의학부 논문집』, 제7권 제1호, 고신대학교, 1991.
- 고성혜,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제3호, 대한가정학회, 1992.
-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1988.
- 김광일·고복자,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률- 국민학교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1987.
- 김기환,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을 단절시키는 생태학적 변인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2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
- 김문조, 「한국가정폭력의 사회문화적 배경」,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 포지움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 김승권, 「The Role of Working Women in Determining Family Class Position」, 『보건사회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_\_\_\_\_, 『한국에서의 가정폭력실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 업에 대한 교육』, 보건복지부·대한가족계획협회, 1998①.
- 김승권 외,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②.
-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35호, 사회복지학회, 1998.

- 김한곤,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1998년도 한국노년학회 춘계 학술대회, 1998.
- 김태헌·한은주,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제17권 제1호, 한국노년학회, 1997.
- 박미은, 「배우자 학대와 치료」, 『제12차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웤샵 보고서』, 1991.
- 변화순·원영애·최은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1993.
- 연진영,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이선이, 「가족의 위기」,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 이용교,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도울것인가?」,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1호, 1993.
- 이해영,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정 책연구』, 통권 제 3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 이호균, 「아동학대 발견 및 개입에 대한 접근모델」,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와 사회사업 개입』,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7.
- 전춘애,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제3호, 1989.
- 정경회 외, 199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8.
- 조병은, 「가족의 위기와 해체」, 『가족학』, 1993.
- 최선화, 「아내구타와 여성쉼터활동에 관한 일고」, 『부산여대 여성연구 논집』, 제5집, 1994.
- 최선화·공미혜·한동희,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한

국사회복지학』, 재34권,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사업연구』,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1995.

,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허남순,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1993.

홍강의, 「아동구타의 대책과 예방」,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김광 일 편저, 1987.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 萩原淸子,「わか國における 高齢者 虐待の發生と福祉援助の課題」,『月 刊地域福祉情報』,第12號,1994.
- Allen, C. M. and M. A. Straus, "Resources, Power and Husband-Wife Violence", in M. A. Straus and G. T. Hotaling (eds.), *The Social Causes of Husband-Wife Viol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9.
- Bach, G. R. and P. Wyden, The Intimate Enemy, New York: Avon, 1967.
- Bachman, J. G., *Youth in Transi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67.
- Bakan, D. Slaughter of the Innoc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1971.
- Bandura, A. *Aggression-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3.
- Bandura, A. and R. H. Walters,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3.
- Bandura, A, D. Ross, and S. A. Ross, "Trans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on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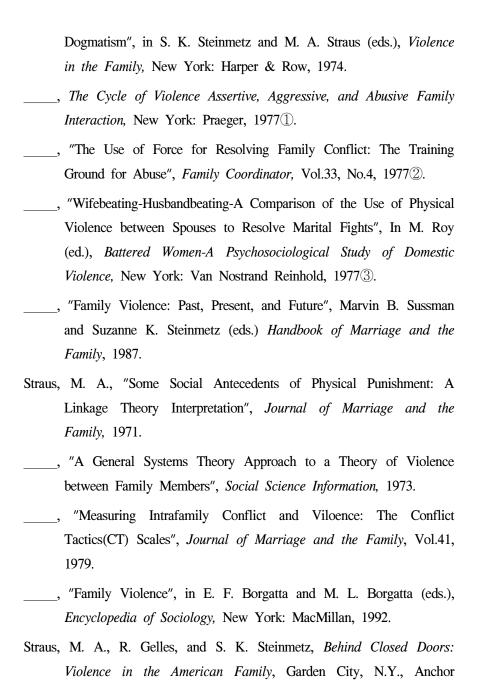
- Social Psychology, 1961.
- Block, M. and J. P. Sinnot (eds.), *The Battered Elder Syndrome: An Exploratory Study*, College Park: Center on Aging, University of Maryland, 1979.
- Brownmiller, S.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1975.
- Cazenave, N. A. and M. A. Straus, "Race, Class, Network Embeddedness and Family Violence: A Search for Potent Support System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10, No.3, 1979.
- Climent, C. F. and Ervin, F. R. "Historical Data in the Evaluation of Viiolent Subjec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27, 1972.
- Coser, L. A. Continuties in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s, 1967.
- Douglas, R, T. Hickey, and P. A. Noel, *A Study of Maltreatment of the Elderly and Other Vulnerable Adults*, Final Report to the U. S. Administration on Aging and the Michigan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nn Arbor, Michigan, 1980.
- Fagan, J. D., D. K. Stewart, and K. W. Stewart, In D. Finkelhor et al. (eds.), The Dark of Families: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Beverly Hills, Calif.: Sage, 1983.
- Ferraro, K. "Processing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Vol.2, No.4, 1981.
- Friedrich, W. N. and J. A. Borisking, "The Role of the Child in Abu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ry*,
  Vol.46, 1976.

- Garbarino, J. A., "A Preliminary Study of Some Ecological Correlates of Child Abuse: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ress on Mothers", *Child Development*, Vol.47, 1976.
- Gelles, R. J., "Child Abuse as Psychopathology: A Sociological Critique and Reform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73.
- \_\_\_\_\_, The Violent Home, Beverly Hills, Calif.: Sage, 1974.
- \_\_\_\_\_\_\_, "Abused Wives: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8, No.1, 1976.
- Gelles, R. J. and C. P. Cornell,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Beverly Hills, Calif.: Sage, 1985.
- Gelles, R. J. and M. A. Straus,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 Based Theories*, Vol.1,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 Goode, W. J.,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3, 1971.
- Homans, G. C.,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1961.
- Jaggers, A. M. and P. R. Struhl (eds.), Feminist Frameworks: Alternative Theo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New York: McGraw-Hill, 1978.
- Kalmuss, 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4.

- Kempe, C. H. et al.,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181, 1962.
- King, N. R., "Exploitation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 *Abuse of the Elderly*, 1986.
- Kolb, T. J. and M. A. Straus, "Marital Power and Marital Happiness in Relation to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6, 1974.
- Kosberg, J. I., "Preventing Elder Abuse: In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The Gerontologist*, Vol.28, No.1, 1988.
- Lester, D. Punishment, "Experiences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No.113, 1968.
- Niemi, R. G. *How Family Members Perceive Each Other*, New Haven, Conn.: Yale Univ. Press, 1974.
- O'Brien, R. G., "Violence in Divorce-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3, 1971.
- Owens, D. J. and M. A. Straus, "The Social Structure of Violence in Childhood and Approval of Violence as an Adult", *Aggressive Behavior*, Vol.1, No.2, 1975.
- Patterson, G. R., J. A. Cobb, and R. A. Ray, "A Social Engineering Technology for Retraining Families of Aggressive Boys", in H. E. Adams and I. P. Unikel (eds.), *Issues and Trends in Behavior Therapy*,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 1973.
- Penhale, B., "The Abuse of Elderly People: Considerations for Practi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23, No.2, 1993.

- Phillips, L. R. and Rempusheski, V. F., "Making Decisions about Elder Abuse", *Social Casework*, Vol.67, No.2, 1986.
- Radbill, S. X., A History of Child Abuse and Infanticide, in R. E. Helper and C. H. Kempe (eds.), *The Battered Chi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Schechter, 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Empowering Battered Women" in M. Strauss(ed.), *Abuse and Victimization Across the Life Span*, Baltimor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 Shultz, L. G., "The Wife Assaulter", Journal of Social Therapy, Vol.6, 1960.
- Singer, J., *The Control of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71.
- Snell J. R., R. Rosenwald, and A. Robey. "The Wifebeater's Wife: A Study of Family Interaction",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Vol.11, 1964.
- Sprey, J., "The Family as a System in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1, 1969.
- Steele, B. F., "The Child Abuser", in I. Kutash et al. (eds.), *Violence:*\*Perspectives on Murder and Aggress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78.
- Steele, B. F. and D. A. Pollock, A Psychiatric Study of Parents Who Abuse Infants and Small Children, in R. E. Helfer and C. H. Kempe (eds.), *The Battered Chil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8
- Steinmetz, S. K., "Occupation and Physical Punishment: A Response to Stra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3, 1971.
- \_\_\_\_\_, "Occupational Environment in Relation to Physical Punishment and



- Press, 1980.
- Straus, M. A. and R. Gelles,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8, 1986.
- Tang, So-kum, "Prevalence of Spouse Aggression in Hong Ko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9, No.4, 1994.
- Walby, S. "Violence", *Theorizing Patriarchy*, Cambridge, Basil Blackwell Ltd, 1990.
- Walker, L. E.,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 Row, 1979.
- Wasserman, S., "The Abused Parents of the Abused Child", *Children*, Vol.14, 1967.
- Weber, M.,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A. M. Henderson & T. Parsons, Trans.), New York: Free Press, 1947. (Reprinted, 1964).
- Wolfgang, M. E. and F. Ferracuti. *The Subculture of Violence: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Criminology*, London: Tavistock, 1967.
- Yilo, K. and M. Bagrod (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Sage, 1988.

# 附錄

附錄 1. 家庭暴力實態調查票

附錄 2. 家庭暴力被害者調查票

附錄 3. 家庭暴力의 類型

## 〈附錄 1〉

## 가정폭력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는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근 심각한 가정문제 및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정내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4~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응답은 무기명으로 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며 통계적으로만 활용됩니다.							
1. 성별: □①남성 □②여성							
2. 거주지역:시(도)구(시·군)							
3. 실례지만 연세가 만으로 어떻게 되시는지요?세							
4. 학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i>(※ 조사원: 재학, 중퇴는 졸업으로 간주함)</i> □①중학교 이하 □②고등학교 □③전문대학 □④대학이상 5.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 명)							
6. 누구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 조사원: 동거가족은 ㅇ으로 기재. 단 해당란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ㅇ( 명)							
(* 포시션· 당기가족은 이르모 기세. 한 배당한테 어디 자함에 있을 당부 (()) 으로 기제)							
관계     동거     동거     동거     동거     여부     연부     연부     연부     연부     연부     (명)     (명)     (명)							
응답자 이 부 배우자 부 형제							

### 各 그럼 이제부터 가정폭력에 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	지난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력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ㅎ	ㅏ여 ㅍ	[해자	를 노
	호하	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있습니	기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
	습니	까?											

배우자 모

배우자 조부

배우자 조모

기타 친척

자매

배우자 형제

배우자 자매

① 예	🗌 <b>②</b> 아니오

모

조부

조모

손자녀

배우자 자녀(남)

자녀(여)

자녀의 배우자

(※조사원	아니리  : <b>"맞다</b>	고 생각되 <b>"는 O, "</b>	는 것은 "( <b>아니다"는</b>	아니다" <b>x, "모</b>	라고 말씀 <i>르겠다":</i>	쓹해 주십시 <b>날 ? 로 표</b>	오. [시)	해 주시고							
③ 꼬집거	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 ②물건을 던지는 행위 () ③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 ④ 손·발,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 ⑤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			기합에는 중 덕을 방관하·		)										
•			기를 하는 기 위를 방관하		_										
•			거드 이트 적절한 식시			안하는 것									
9. 만약 선생; 습니까? □ <b>①</b> 예	_ , , ,	- " , -	폭력이 발생  유:		<sup>2</sup> 파출소 	나 경찰서(	에 신고할 <u>9</u>	의향이 있 _)							
10. 이웃 가정 □ <b>①</b> 예			발생할 경우 유:				할 의향이 있								
11. 귀댁에서	는 지난	1년 동안	위에서 말台	씀드린 (	8가지의	행위가 있었	었습니까?								
□@ଜା ⊏	<b>②</b> 아니.	오(조사종	료/※조사:	원:조사	에 응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	령 및 교육	수준 등 특	11-1. 가해자와 피해자의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 등 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계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등															
	-		,	.,	긔, 아들,	딸, 며느리	등								
성별	- 남,	녀	연령 - 1	만 연령	, , ,	,		학 이상							
성별 교육 폭력	년 - 남, 당수준 - 비종류 -	녀 <b>①</b> 취학전	<b>연령</b> - 년 • 무학, <b>②</b>	만 연령 초등학교	7, <b>3</b> 중학	교, ④고등	학교, 🖔대	학 이상							
성별 교육 폭력	<b>년</b> - 남, <b>당수준</b> - <b>년종류</b> - 욕설이나	년 ①취학전 모욕적인	<b>연령</b> - 년 • 무학, <b>②</b> 말 또는 행	만 연령 초등학교 !동 <b>②</b>	2, <b>③</b> 중학 물건을 E	·교, <b>④</b> 고등 <sup>년</sup> 지는 행위	· 학교, <b>⑤</b> 대·								
성별 교육 폭력 ① ③	<b>열</b> - 남, <b>당수준</b> - <b>영종류</b> - 욕설이나 꼬집거나	년 <b>①</b> 취학전 모욕적인 할퀴는 행	<b>연령</b> - 년 • 무학, <b>②</b>	만 연령 초등학교 !동 <b>②</b> <b>④</b>	2, <b>③</b> 중학 물건을 E	·교, <b>④</b> 고등 <sup>년</sup> 지는 행위	학교, 🖔대								
성발 교포 <sup>2</sup> ① ① ⑤ ⑤	남, <b>, 수준</b> - <b>, 등류</b> - 욕설이나 꼬집거나 몽둥이나 자녀의 성	년 <b>①</b> 취학전  모욕적인 할퀴는 행 칼 등 흉 당습적인 희	연령 - 년 • 무학, ② 말 또는 행 위 기로 위협하 교결석을 병	만 연령 초등학교 !동 ② (소) 는 행위 방관하는	7, <b>③</b> 중힉 물건을 E 손이나 빌 것	·교, <b>④</b> 고등 <sup>년</sup> 지는 행위	· 학교, <b>⑤</b> 대·								
성발등 로프로 ① ③ ⑤ ⑥ ⑦	《수준 - 《종류 - 욕설이나 꼬집거나 몽둥이나 자녀의 성	녀	<b>연령</b> - ₹ • 무학, ② 말 또는 행 위 기로 위협하	만 연령 초등학교  동 <b>②</b> 는 행위 방관하는 방관하는	고, ③중학 물건을 E 손이나 빌 것 들 것	교, <b>④</b> 고등 면지는 행위 함, 몽둥이 등	학교, <b>(5</b> 대학 등으로 때리된								
성발등 로프로 ① ③ ⑤ ⑥ ⑦	남, 우수준 - 시종류 - 욕설이나 꼬집거나 몽둥이나 자녀의 성 자녀의 성	녀	연령 - 당 • 무학, ② 말 또는 행 위 기로 위협하 교결석을 병 쁜 행위를	만 연령 초등학교  동 <b>②</b> 는 행위 방관하는 방관하는	2, <b>③</b> 중학 물건을 E 손이나 발 것 를 것 나 의복을	교, <b>④</b> 고등 면지는 행위 함, 몽둥이 등	학교, <b>(5</b> 대학 등으로 때리된								
성발등 로프로 ① ③ ⑤ ⑥ ⑦	실 - 남, 국수준 - 취종류 - 욕설이나 꼬집거나 몽둥이나 자녀의 상 자녀의 상	녀	연령 - 당 • 무학, ② 말 또는 행위 기로 위협하 교결석을 병	만 연령 초등학교  동 ② (소) 는 행위 방관하는 방관하는	고, <b>③</b> 중학 물건을 E 손이나 발 것 = 것 나 의복을	교, <b>②</b> 고등 <sup>년</sup> 지는 행위 <sup>†</sup> , 몽둥이 등 제공 안하 피해자	학교, <b>(5</b> 대학 등으로 때리된	= 행위 폭력의							
성 발음 교 폭 <sup>연</sup> ① ③ ⑤ ⑥ ⑦ ⑤	실 - 남, 국수준 - 취종류 - 욕설이나 꼬집거나 몽둥이나 자녀의 상 자녀의 상	녀	연령 - 무학, ②: 말 또는 행위기로 위협하고 결석을 받행위를 에게 적절함	만 연령 초등학교  동 ② (소) 는 행위 방관하는 방관하는	고, <b>③</b> 중학 물건을 E 손이나 발 것 = 것 나 의복을	교, <b>②</b> 고등 <sup>년</sup> 지는 행위 <sup>†</sup> , 몽둥이 등 제공 안하 피해자	학교, <b>(5</b> 대 등으로 때리는 는 것	= 행위 폭력의							
성 발음 로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실 - 남, 국수준 - 취종류 - 욕설이나 꼬집거나 몽둥이나 자녀의 상 자녀의 상	녀	연령 - 무학, ②: 말 또는 행위기로 위협하고 결석을 받행위를 에게 적절함	만 연령 초등학교  동 ② (소) 는 행위 방관하는 방관하는	고, <b>③</b> 중학 물건을 E 손이나 발 것 = 것 나 의복을	교, <b>②</b> 고등 <sup>년</sup> 지는 행위 <sup>†</sup> , 몽둥이 등 제공 안하 피해자	학교, <b>(5</b> 대 등으로 때리는 는 것	= 행위 폭력의							

11-2.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1주에 1번 이하 ③ 한 달에 1번 이하 ④ 2~3개월에 1번 이하 ⑤ 기타(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① 이유 없음 ② 가해자의 오해 ② 피해자의 잘못 ③ 피해자의 잘못 ④ 다른 가족의 잘못 ⑤ 사회적 이유	-4. 폭력의 결과 나타난 신체적 증상은? 별 증상 없음 두통으로 머리가 띵함 가벼운 상처, 멍 등의 타박상 뼈가 삐거나 부러지는 등 골절상 고막이 터지고 이빨이 부러짐 실명 등 중상 ⑦ 기타(구체적으로)				
11-5. 폭력의 결과 나타 ① 별 증상 없음 (질문 ② 자신에 대한 실망, ③ 본인이 죽을 것 같 ④ 가해자가 죽었으면 ⑤ 가해자에게 복수하 ⑥ 이혼하고 싶음 ③ 기타(구체적으로)	<b>군 11-7로)</b> 무력감, 자아상실 은 생각 하는 생각 고 싶음	11-6. 의료적 처치를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정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대응을 하셨습니까?	1-8.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 ①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② 경찰서에 신고함 ③ 이웃에 도움을 요청함 ④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함 ⑤ 다른 곳으로 피신함 ⑥ 기타(구체적으로)	을 받음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대체로 도움이 됨 ③ 그저 그렇다				
12. 근처의 복지관이나 상담기관에서 가정불화나 가정내 폭력 등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13.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생각나시는 대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 〈附錄 2〉

#### 가정폭력피해자조사

조사지역 번호		조사: 번.	기 관 호	조사표 번호		

#### 1998. 11.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내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가정내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가족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정 경 배

지 역	
기 관 명	
조사대상	□ 1. 아동 □ 2. 남성 □ 3. 여성 □ 4. 노인
방문일자	1998년 11월 일 (조사결과: □ 1. 완료 □ 2. 미완)
조사원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I. 가족원 사항

1.	현재(또는 보	L호소/시설에	입소하기	직전)	같이	살고	있는(있었던)	가족은	모두	몇	명
	입니까(이었	습니까?(응답기	사 포함)								

동거가족원수:	명(남성:	명, 여성:	명)
---------	-------	--------	----

#### 2. 동거가족원은 각각 누구인지(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0 -0 -0 -0 -0		0 -1 -1 -1 -1	
응답자와의 관계	동거여부(명)	응답자와의 관계	동거여부(명)
배우자	①동거 ②비동거	배우자의 부	①동거 ②비동거
자녀	①동거(명) ②비동거	배우자의 모	①동거 ②비동거
1) 아들	①동거(명) ②비동거	배우자의 조부	①동거 ②비동거
2) 딸	①동거(명) ②비동거	배우자의 조모	①동거 ②비동거
자녀의 배우자	①동거(명) ②비동거	남자형제	①동거 ②비동거
부	①동거 ②비동거	여자형제	①동거 ②비동거
모	①동거 ②비동거	배우자의 남자형제	①동거(명) ②비동거
조부	①동거 ②비동거	배우자의 여자형제	①동거(명) ②비동거
조모	①동거 ②비동거	기타 본인친척	①동거(명) ②비동거
손자녀	①동거(_명) ②비동거	기타 배우자친척	①동거(명) ②비동거

조사원: 동거가족원의 구성을 참조하여 다음 가족형태중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하시오.

3. 세대별 가족형태		4. 유형별 가족형태
①1세대	①부부	④확대가족(조부모+부모+손자녀 등)
②2세대	②부부+미혼자녀	⑤기타 확대가족(조부모+손자녀 등)
③3세대 이상	③편부모+미혼자녀	⑥미혼가족 ⑦기타

## II.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다음 말씀드리는 내용중 가정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①「예」,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②「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일반적인 폭력에 관한 인식

내 용	가정폭력 여부
A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A2.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A3.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A4. 손 발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A5.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A6.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 1) 신체적 학대

내 용	아동학대 여부
B1.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은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 꼬집히거나 할퀴인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4. 발로 차이거나 깨물렸던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5. 밧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6. 혁대로 맞은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7.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힌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8. 던진 물건으로 맞은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9. 팔, 다리가 묶였던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0. 다락방, 목욕탕, 장롱 속에 갇혔던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1.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한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2.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린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2) 정서적 학대

	내 용		아동학대 여부
B13.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들은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4.	학교 그만 두고 집안 일이나 하라는 말을 들을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5.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6.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7.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린 적이 있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8.	나에게 걸려온 전화를 욕을 하며 끊어버린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19.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쫒겨난 적이 있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0.	울지못하게 베게 등으로 눌러 덮어버린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1.	밥짓기, 청소 등의 집안일을 강제로 시킨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3) 방임

	내 용		아동학대 여부
B22.	위험한 것(칼, 쇠꼬챙이 등)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3.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u> </u>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5.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방에서 지낸 적이 있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6.	몸이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7.	학교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8.	숙제를 해가는지 안해가는지 잘 모른다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29.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0.	어떤 친구를 사귀든지 상관하지 않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1.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체 하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4) 성적 학대

	내 용	아동학대 여부
B32.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3.	어른들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보여 주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4.	싫은데도 내 옷을 억지로 벗게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5.	싫은데도 어른이 나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6.	어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져 달라고 한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7.	어른이 나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B38.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 1) 신체적 학대

내 용	노인학대 여부
C1. 노인을 강제적으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두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묵어두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3. 노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5.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2~3일이상 혼자 집에 방치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2) 심리적 학대

내 용	노인학대 여부
C6.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7.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8.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9.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10.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11.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12.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13. 노인을 항해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3) 경제적 착취

내 용	노인학대 여부
C14.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15.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천지가 가로채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16.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17.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18. 노인에게서 빌린 노인의 물건을 돌려주지않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4) 방임

내 용	노인학대 여부
C19.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20.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21.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22. 병원에서 치료를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C23.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라. 성인남성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인식

내 용	아동학대 여부
ਮ ਨ	야중학대 역구
D1. 시집식구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하는 부인의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2. 부인이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3. 남편수입이 아내수입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부인의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4.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하는 부인의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5. 실직남편에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부인의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6. 부부공동 재산을 부인허락없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7. 아내의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8. 자녀앞에서 부인이 무식하다는 등의 폭언을 하는 남편의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9.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않는 남편의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D10. 부인의 친정이나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남편의 행위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Ⅲ. 가정폭력 실태

□ 이제부터는 귀 댁에서 있었던 가정폭력 각각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 조사원: 보기에서 골라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시오.

(보기>
1. 관계: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전 배우자 ④ 아버지 ⑤ 계부 ⑥ 어머니 ⑦ 계모 ⑧ 아들 ⑨ 딸 ⑩ 머느리 ⑪ 사위 ② 할아버지 ③ 할머니 ⑭ 삼촌 ⑤ 조카 97 기타 가족 98 무응답
2. 성: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만연령으로 기재
4. 교육수준: ⑩ 무학·취학전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이상 ⑧ 무응답 ⑨ 비해당
5. 결혼상태: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⑧ 무응답 ⑨ 비해당
6. 종교: ① 없음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천주교 ⑤ 유교 ⑥ 기타 ⑧ 무응답
7. 취업여부: ① 취업중 ② 비취업 ⑧ 무응답 ⑨ 비해당
7-1. 종사상지위: ① 고용주 ② 상용고 ③ 임시고 ④ 일용고 ⑥ 가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⑧ 무응답 ⑨ 비해당
7-2. 직종: ① 고위 공무원・관리직 ② 전문직 ③ 준전문직 ④ 사무직 ⑥ 서비스・판매직 ⑥ 농·어·축산업 ⑦ 기능직 ⑧ 기계장치 조작원 ⑨ 단순노무직 ⑩ 기타 ⑨ 무급가족종사자 98 무응답 99 비해당
```

#### 1.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일반특성

	피 해 자 사 항								7 7 7 7	
번호	번호 관계 성 연령 교육 결혼 종교 취업 종사상 직종 수준 상태 종교 여부 지위							폭력종류 (복수응답)		
1										
2										
3										

	가 해 자 사 항									
번호	관계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종교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직종	
1										/
2										] /
3										/

번호	9. 이러한 폭력은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10. 폭력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1. 폭력의 결과 나타난 신체적 증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2. 폭력의 결과 나타난 정신적 증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1회이하 ③2주일에 1회 이하 ④1개월에 1회 이하 ⑤2~3개월에 1회 이하 ⑦기타( ⑧무응답 ⑨비해당	③피해자의 잘못	<ul><li>타박상</li><li>④팔, 다리</li><li>부러지는 등의</li><li>골절상</li></ul>	①별 증상 없음 ②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③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④가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⑤이혼하고 싶은 생각 ⑥죽고 싶다는 생각 ⑦사람만나는 것을 기피 ⑧매사에 불안, 우울함 ⑨기타()
2				
3				

번호	13. 폭력의 결과 나타난 (신체적 ·정신적)증상 때문에 의료적 처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4.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주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14-1.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피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14-2. (주위에 도움을 청한 경우)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까?
1	① 있음 ② 없음	①함께 폭력 행사 →(질문 15로) ②무조건 피함 →(질문 14-1로) ③주위의 도움요청 →(질문 14-2로) ④끝날 때 까지 맞으면서 참음 →(질문 14-3으로) ⑤기타(	① 친정부모 또는 친정식구 ②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③이웃이나 친구 ④교회, 성당 등 ⑤가정폭설 등 시설 ⑥경찰서 ⑦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배회 ⑧기타()	①친정부모 또는 친정식구 ②시부모 또는 시택식구 ③이웃이나 친구 ④목사나 신부 ⑤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등 시설 ⑥경찰서 ⑦상담소 ⑧기타()
2				
3				

번호	14-3. (참는다는 경우)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폭력행위 발생시 다른 가족중 폭력을 당한 가족이 있었습니까?	15-1. 가족은 누구였는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16. 가정내 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까?
1	①무서워서 ②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③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④자녀때문에 ⑤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⑥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⑦기타()	①있었다 →(질문15-1로) ②없었다	관계:	① 있다 ② 없다
2				
3				

3			
17. <u>피해자</u> 는 성장시 가족원간의 폭력	을 목격하거나 폭력	피해를 당한 경	험이 있었습니까?
① 폭력 목격 (□ 부모간 □ 부모-지	· 나식간 □ 형제-자매	간 🗌 기타(	))
② 폭력피해 경험 ③ 폭력 목격 :	및 폭력피해 경험	④ 잘 모르것	J다
18. <u>가해자</u> 는 성장시 가족원간의 폭력	을 목격하거나 폭력의	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폭력 목격 (□ 부모간 □ 부모-지	<b>ㅏ</b> 식간 □ 형제-자매	간 🗌 기타(	))
② 폭력피해 경험     ③ 폭력	목격 및 폭력피해	경험 ④	잘 모르겠다
19. 가해자가 가정내에서 폭력을 하는 기	<b>가</b> 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기	<b>∤하십니까?</b>
① 자신이 강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② 집안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부장적	혁인 의식때문에		
③ 원래 성격이 난폭해서	④ 술만 마시면 🤊	세 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서
	⑥ 알코홀 중독으		
⑦ 열등감 때문에	⑧ 스트레스 때문	에	
⑨ 자녀의 교육상/ 버릇고치기 위해	⑩ 피해자의 무능	때문에	
① 습관적으로	⑫ 기타(	)	
이토네사 서무			
아동대상 설문			

A. 아동에 대한 일반특성

1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2. 연령: 만세
3. 학교 및 학년: (□ ① 초등학교학년, □ ② 중학교학년, □ ③ 기타)
4. 부모님의 생존여부:  □ ① 아버지, 어머니 모두 생존 □ ② 아버지만 생존(□ ① 친아버지 □ ② 양아버지) □ ③ 어머니만 생존(□ ① 친어머니 □ ② 양어머니) □ ④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
5. 부모님의 결혼상태: □ ① 유배우 □ ② 사별 □ ③ 이혼 □ ④ 별거
6. 부모님의 연령: 아버지: 만세 어머니: 만세

구분	7. 교	육수준	8. 취업여부		9. 종교	
아버지	<ul><li>◎무학</li><li>①초등학교</li><li>②중학교</li></ul>	③고등학교 ④대학이상 ⑧무응답	①취업중(직업:) ②미취업 ⑧무응답 ⑨비해당	①없음 ②불교 ③기독교	④천주교 ⑤유교 ⑥기타	⑧무응답
어머니	<ul><li>◎무학</li><li>①초등학교</li><li>②중학교</li></ul>	③고등학교 ④대학이상 ⑧무응답	①취업중(직업:) ②비취업 ⑧무응답 ⑨비해당	①없음 ②불교 ③기독교	④천주교 ⑤유교 ⑥기타	⑧무응답

### B. 아동학대 실태

### 가. 신체적 학대

내 용	아동학대 경험빈도
1. 손, 회초리로 손바닥, 엉덩이 등을 맞은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2.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3. 꼬집히거나 할퀴인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4. 발로 차이거나 깨물렸던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5.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내 용	아동학대 경험빈도
6. 혁대로 맞은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7.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힌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8. 던진 물건으로 맞은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9. 팔, 다리가 묶였던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10. 다락방, 목욕탕, 장롱 속에 갇혔던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11.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한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12.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린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 나. 정서적 학대

내 용	아동학대 경험빈도
13.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들은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14. 학교 그만 두고 집안 일이나 하라는 말을 들은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15.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16.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17.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린 적이 있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18. 나에게 걸려온 전화를 욕을 하며 끊어버린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19.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쫒겨난 적이 있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20. 울지못하게 베게 등으로 눌러 덮어버린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21. 밥짓기, 청소 등의 집안일을 강제로 시킨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 다. 방임

	내 용	아동학대 경험빈도
22.	위험한 것(칼, 쇠꼬챙이 등)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23.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24.	어두워질 까지 혼자 집을 보는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25.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방에서 지낸 적이 있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26.	몸이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27.	학교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28.	숙제를 해가는지 안해가는지 잘 모른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29.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경우	<ul><li>□ ① 전혀 없다</li><li>□ ② 거의 없다</li><li>□ ③ 가끔 있다</li><li>□ ④ 자주 있다</li></ul>
30.	어떤 친구를 사귀든지 상관하지 않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31.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체 하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 라. 성적 학대

내 용	아동학대 경험빈도
32.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33. 어른들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보여 주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34. 싫은데도 내 옷을 억지로 벗게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35. 싫은데도 어른이 나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36. 어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져 달라고 한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37. 어른이 나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38.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 노인대상 설문

내 용

④ 진료비 보조

<ol> <li>나를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번 옮긴 적이 있다.</li> </ol>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ol> <li>나를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li> </ol>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3. 2~3일 이상 집에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4. 집에서 음식을 주지않아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5. 나를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6. 나를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다       □ ④ 자주 있다
IV. 피해자 보호소 이용관련	
1. 현재 이용중인 기관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신문, 라디오, TV 등 메스콤을 통해 ⑤	) 부녀상담소를 통해
② 친구 및 친지 등 아는 사람을 통해 ⑥	) 경찰서에서
③ 여성의 전화 등 민간상담기관을 통해 ⑦	) 기타( )
④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2. 지난 번에도 이러한 시설/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이번이 처음 이용 ② 과	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음(회)
그 뒤이 포러지 사이 시축 어디미에 지 키코에 스크	11 리셔스티퀘이
3. 처음 폭력이 있은 이후 얼마만에 이 기관에 오기	
평균 소요기간: 평균(□ 년 □	월)
4. 현재 보호받고 있는 이 기관을 찾아오게 된 결정	성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5. 이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중복용	응답 가능)
① 숙식제공 ⑤ 자녀	
② 취업알선	기시등 각종 정보제공
③ 집단상담 ⑦ 기티	-( )

노인학대 경험빈도

① 있다	
6-1. 가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 이유:	유는 무엇입니까? 
<ol> <li>현재 이 기관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주십시오.</li> </ol>	·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
① 경제적 문제:	② 심리적 문제:
③ 자녀교육 문제:	_ ④ 기타문제:
<ol> <li>이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기를 (중복응답)</li> </ol>	· 희망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① 의료서비스 제공 ② 재정	지원 ③ 임시주택 알선
④ 가해자(구타자) 치료 프로그램	⑤ 자녀대책
⑥ 의식고양 프로그램	⑦ 기타()
	력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히
1. 지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탄	력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히
<ol> <li>지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탄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계셨습니까?</li> <li>① 예 ② 아니오</li> <li>1-1.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맨</li> </ol>	격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히
<ol> <li>지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력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계셨습니까?</li></ol>	력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히 났습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 처음 알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ol> <li>지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력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계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li> <li>1-1.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맨① 이웃을 통해 ② 친구를 통해 ⑤ 시설에 들어와서 ⑥ 기타</li> </ol>	격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히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 처음 알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③ TV, 신문을 통해 ④ 친척을 통해 ⑧ 무응답 ⑨ 비해당
<ol> <li>지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탄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계셨습니까?</li></ol>	력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 처음 알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③ TV, 신문을 통해 ④ 친척을 통해 ⑧ 무응답 ⑨ 비해당 나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지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력 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계셨습니까?	력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 처음 알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③ TV, 신문을 통해 ④ 친척을 통해 ⑧ 무응답 ⑨ 비해당 나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지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력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계셨습니까?	력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 처음 알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③ TV, 신문을 통해 ④ 친척을 통해 ⑧ 무응답 ⑨ 비해당 -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지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내 폭력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계셨습니까?  □ ① 에 ② 아니오  1-1.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맨① 이웃을 통해 ② 친구를 통해 ⑤ 시설에 들어와서 ⑥ 기타  2. 만약 귀 댁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① 예 □ ② 아니오  2-1.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비신고 이유:  1. 만약 이웃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격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 처음 알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③ TV, 신문을 통해 ④ 친척을 통해 ⑧ 무응답 ⑨ 비해당 나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입니까?

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남성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Г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③ 잘 모르겠다 ↓
	6-1.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한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필요 서비스내용: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附錄 3〉

## 가정폭력의 유형

#### 가. 일반적인 폭력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A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A 4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A 2	물건을 던지는 행위	A 5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A 3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A 6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 나. 아동학대 및 폭력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В 1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은 경우	В 7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힌 경우
B 2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우	В 8	던진 물건으로 맞은 경우
В 3	꼬집히거나 할퀴인 경우	В 9	팔, 다리가 묶였던 경우
B 4	발로 차이거나 깨물렸던 경우	B10	다락방, 목욕탕, 장롱 속에 갇혔던 경우
В 5	<b>밧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b>	B11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한 경우
В 6	혁대로 맞은 경우	B12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린 경우

- B13 골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들은 경우
- B14 학교 그만 두고 집안 일이나 하라는 말을 들을 경우
- B15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 B16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 B17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린 적이 있는 경우
- B18 나에게 걸려온 전화를 욕을 하며 끊어버린 경우
- B19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쫒겨난 적이 있는 경우
- B20 울지못하게 베게 등으로 눌러 덮어버린 경우
- B21 밥짓기, 청소 등의 집안일을 강제로 시킨 경우

- B22 위험한 것(칼, 쇠꼬챙이 등)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경우
- B23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
- B24 어두워질 까지 혼자 집을 보는 경우
- B25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방에서 지낸 적이 있는 경우
- B26 몸이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 B27 학교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경우
- B28 숙제를 해가는지 안해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
- B29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경우
- B30 어떤 친구를 사귀든지 상관하지 않는 경우
- B31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체 하는 경우
- B32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
- B33 어른들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보여 주는 경우
- B34 싫은데도 내 옷을 억지로 벗게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 B35 싫은데도 어른이 나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 경우
- B36 어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져 달라고 한 경우
- B37 어른이 나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 경우
- B38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 다. 노인학대 및 폭력

- C 1 노인을 강제적으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두는 행위
- C 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묵어두는 행위
- C 3 노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 C 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 C 5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2~3일이상 혼자 집에 방치하는 행위
- C 6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 C 7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
- C 8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C 9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 C10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 C11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 C12 노인이 보는 앞에서 뮬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는 행위
- C13 노인을 향해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C14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C15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채는 행위
- C16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 C17 노인에게서 빌린 노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C18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 C19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 C20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 행위
- C2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 C22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 라. 성인남성 및 여성 학대 및 폭력

번호	내 용
D 1	시집식구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하는 부인의 행위
D 2	부인(남편)이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부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D 3	남편수입이 아내수입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부인의 행위
D 4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하는 부인의 행위
D 5	실직남편에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부인의 행위
D 6	부부공동 재산을 부인(남편)허락없이 남편(부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D 7	아내의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D 8	자녀앞에서 부인(남편)이 무식하다는 등의 폭언을 하는 남편(부인)의 행위
D 9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않는 남편의 행위
D10	부인의 친정이나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남편의 행위